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도화된 이래 지금까지 교육의 이상(理想)과 현실의 괴리는 수많은 실험적 교육정책들과 교육이론들이 있게 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20세기 중반까지 사회교육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에서 부분적으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정책은 교육정책의 한 부분이거나 교육정책과는 다른 정책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이해되거나 실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21세기로 들어선 오늘날까지도 일반적 상식과 견해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즈음하여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다르게 바뀌고 있다. 최근 교육과 학교교육의 정책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의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과거에는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지향했다면, 지금은 지식의 사회화를 통한 기술지상주의적 경제산업주의라는 도구적 가치를 공공연히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교육정책의 이념과 목표도 ‘인적 자원’의 개발로 정하였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우리의 현행 학교교육이 정부의 이러한 경제 지향적 교육정책만을 실현하기에도 미흡한 상황이란 것이다. 즉, 현 학교교육정책의 실천 현장은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의 입학만을 위한 시험위주의 내용 없는 교육으로 점차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특수한 교육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이 가지는 역할과 시대적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대의 변화는 복지의 개념을 과거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실천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well-being”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이 이제 청소년정책도 단순히 사회교육 차원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소수 소외되거나 문제가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전체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명시된 이념과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 준비체제로 전환되어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거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입시준비 위주의 사교육이 갈수록 팽창하여 공교육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고사하고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도 제대로 습득할 수 없는 교육체제가 우리 학교교육정책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교육적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은 이제 학교교육정책의 대안적 정책으로서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학교교육정책과 체제 안에서는 향후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절대로 양성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정책에서 이를 보완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학교교육현실과 청소년정책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다. 그 이유는 같은 대상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현행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이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양 정책의 다양한 연계·협력의 대상들 중에서 특별히 입시위주의 부조리한 교육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 밖의 생활과 자연 속에서 다양한 건전 활동을 통하여 전인적 성장을 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현행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의 접점을 찾아내 관련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었지만, 주로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거나(최충욱; 1996), 실태조사 중심이거나(한국청

소년학회; 1999),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학교 특별활동과 수련활동의 연계방안 연구(이광호 외; 1999)에 그쳤다.

위에서 언급한 이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불행하고 결핍된 성장과정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들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이 연구는 문화예술활동, 국제교류활동, 스포츠활동, 캠프활동, 취미 동아리활동, 레저활동 등 많은 다양한 활동들도 교육의 근본이념을 성취한 가치를 인증 받아 상급학교 진학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성공한 예가 있다면 바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선진 미국의 대학입학에서는 봉사활동과 함께 다양한 활동들의 교육적 의미를 인정해 주는 가점제도가 일찍부터 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대학입학 시험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거나 (school to activity: Morrissey/Werner-Wilson; 2003), 다양한 진로의 기회(school to work: Lindley; 1996)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교육으로부터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생활과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글로벌리더십을 함양하며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여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이 향후 21세기에 동북아와 지구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내용

1) 한국의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비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먼저 현행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일반적 비교와 고찰을 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한국의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일반적 내용과 특성 등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 한다.

- 다음으로 현행 학교교육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이에 대한 대안과 보완으로서의 청소년정책과의 관계를 논한다.
- 이론적 고찰의 말미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시대적 의의를 기초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2) 한국의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의 현황 평가

- 먼저 일반적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현행 추진 현황을 평가한다.
- 다음으로 한국의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비연계성에 대한 실증적 실태분석으로서 현행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및 이해도 중심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그리고 현행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을 정책평가 차원에서 시도한다.

3) 국내외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사례 분석

- 먼저 국내의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에 대한 발굴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사례는 문헌이나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며, 현행 제도 중 연계·협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청소년봉사활동 사례를 분석한다.

4)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정책의 개선방안 제안

-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위의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다.
- 마련된 방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청소년과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대안적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방안에 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한국의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국내외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

2) 실태조사

-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1단계 : 현행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실증적 조사 분석을 위한 도구마련과 pilot 조사
 - 2단계 : 현행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 3단계 :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비교 분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비연계성 귀납적 검증

3) 델파이조사

- 실증적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효율성 증대 가능성 도출을 목표로 정책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실시

4) 전문가 workshop 개최

- 위의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 외국에 대한 비교연구, 그리고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와 협력 방안 마련
- 마련된 방안에 대한 청소년과 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현행 한국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대안적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방안 제시

II.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 · 협력의 이론적 고찰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관계 고찰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 · 협력의 시대적 의미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 · 협력의 모형 고찰

II.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이론적 고찰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관계 고찰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역사의 개관(概觀)

(1) 청소년정책 역사의 개관¹⁾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것은 비단 청소년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부 수립 역사가 짧아서 학교교육정책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의 일환의 대상으로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시행되어온 정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정책 중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1964년 내무부 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국무총리소속의 「청소년위원회」로 새롭게 개편된 것 까지 무려 8차례나 정부의 청소년업무 조직이 개편되었다. 이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관성 있는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못해왔었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의 전제로서 언급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성과 전담성이 부족하여 그동안의 청소년정책은 뚜렷한 정책의 성과를 보일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²⁾ 다행스럽게도 1997년 이후부터 문화관광부

- 1) 청소년정책의 역사에 관한 글은 여러 책에 산재되어 서술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의 글로는 2005년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의 자료집에서 차정섭이 기존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서술한 내용이다. 아래의 글은 차정섭의 글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차정섭, 2005: 37-47).
- 2) 1998년 문화관광부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청소년관련 전문가, 교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2%가 청소년 정책 실패이유로 일관성 없는 청소년정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차정섭, 2005: 38).

〈표 II - 1〉 단계별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구분	미성숙단계 (‘48-‘87)	태동단계 (‘87.10-‘89)	확립단계 (‘90-‘93)	발전단계 (‘94-‘97)	육성·보호 이원화 단계 (‘97.7-‘04)		통합·도약단계 (‘05.4-현재)
전담 기구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청소년대책위원회	체 육 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 (64.9.11) : 문교부 직제 →행정조정실 직제 -청소년대책위원회규정 (77.8.27)	청소년육성법 (87.11) 체육부 직제	청소년기본법 (93.1) : 체육청 소년부 직제	청소년보호법(97.7) 문화체육부 직제 (93.3)	- 문화 관광 부 발족(법률제 5529호)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00.7)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조직	-국무총리소속으로 내무 부장관이 청소년대책위 원회 위원장(64.9.11) →간사업무 : 문교부 청소 년과, 국무총리실 제2행정 조정관내 청소년전담관	-청소년국 →정책과 →지도과 →교류과 →시설과	-청소년정책실 →2심의관 기획과, 지도과, 시설과, 수련과, 교류과, 홍보협력	-청소년정책실: 1심의관, 기획과, 지도과, 시설 수련과, 교류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사 무국, 보호기획과, 매체 물심과, 보호조사과	-청소년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참여과 →청소년문화과	-사무국 : 혁신기획과, 보호정책과, 보호기 준과, 협력지원과, 청소년성보호과, 중 앙점검단, 청소년보 호재활센터	-1관 4단 14팀 : 청책홍보관리관, 중앙점검단, 청소년정책단, 활동복지단, 청소년보호단
인원	-제5기획조정관(6명) -청소년정책심의관(8명)	42명	61명	-육성분야(48명) -보호분야(37명)	33명	69명	130명
주요 기능	-국가차원의 청소년행정 방향제시, 종합조정 -청소년대책관련업무의 기획, 조정, 통제 및 부처별 협조강화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 업무의 기획 조정 총괄	-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 청소년단체 및 지도자 육성기 금 조성 -수련시설및교류등	-각 부처 청소년육성 업무 기획총괄 추진 전담기구 역할 - 청소년 유해 환경 보호를 위한 보 호시책 추진	-청소년정책 중 합계획 수립 -연구 및 시설지원 -청소년기금 운영 -국제교류 추진 등	-청소년보호기본 계획 -유해매체물 유통규제 -신상공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등	-통합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연구 및 시설지원 -청소년기금 운영 -신상공개,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국제교류 추진 등

의 청소년정책국에서의 청소년육성정책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정책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이 2005년 4월 27일 마침내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됨으로서 적어도 외향적으로는 위의 <표Ⅱ-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통합발전 시대를 맞아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위의 표에 따른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단계별 발전상을³⁾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정책의 미성숙단계(1948-1987)

1948년 8월 정부수립이후 1987년 10월까지 근 40년간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근간이 되는 관련법을 가지지 못한 미성숙 단계로서 각 부처별로 산발적인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총괄하는 기능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부재한 시기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성년자보호법(1961), 아동복지법(1962)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의 내용은 미성년자와 요보호 아동,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적 테두리를 이탈하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교정과 처벌위주의 정책이 주된 기능을 차지하였다. 이후 1964년 9월 대통령령으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규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중앙위원회, 그 이후 지방조직으로 시·도 위원회 11개, 시·군·구 위원회 169개가 설치되어 청소년 선도에 관한 종합대책과 관계기관 협조·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1977년 8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여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내무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청소년정책 업무가 이관되어 조정·통제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되었다. ‘청소년대책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자문, 심의기구이던 대책위원회에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나타내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 밑에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부위원장을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 이 시스템은 1964년부터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종합조

3)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사적 분류에 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차정섭의 분류와 조영승의 분류(조영승, 1998: 75-99)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정기능이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는 내무부 치안국 산하 전국 일선 경찰서가 청소년보호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등 문제점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책이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청소년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을 종합하여 평가하자면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내무부에 소개하여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규제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1977년 8월 ‘청소년대책위원회’로 탈바꿈 하면서부터 청소년정책이 처음으로 국가정책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교정위주의 청소년정책에서 일반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한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② 청소년정책의 태동단계(1987.10-1989)

1987년 10월 29일 새롭게 개정된 새 헌법 제34조 4항에는 “국가는 (...)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같은 해 11월 28일 청소년정책과 직접 관련된 독립법인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일부 어려운 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혜적으로 실시되어온 그동안의 청소년정책은 이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정책도 다른 부처의 관련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이 시기는 독립된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태동단계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독립법의 탄생과 함께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청소년 담당 중앙부처에 청소년국이 신설되고, 각 시·도에 청소년과가 설치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해방이후 지속되어온 문제청소년에 대한 교정위주의 정책이 「청소년육성법」의 근거로 일반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청소년육성 기회의 제공으로 그 정책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

서인 체육부는 「청소년육성법」에 근거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업무를 기획·조정·통괄하는 부처가 되었고, 청소년육성종합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주요 추진정책을 평가해 보면 청소년관련 최초의 독립법인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요한 청소년정책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육성’이라는 패러다임 하에 교육정책과 차별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이외에도 국가 청소년정책의 실질적 주체들인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고,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의 연합회 성격을 가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1988년 사단법인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지금의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전신인 ‘한국청소년연구원’이 개원되어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는 등 청소년정책 전반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면서 시·도 단위로 청소년과가 신설되어 중앙과 지방간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갖추어 청소년 정책추진역량은 이전보다 강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겨우 청소년정책의 독자적인 정책노선이 마련된 태동기이기에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산의 부족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단체나 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천한 시기여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③ 청소년정책의 확립단계(1990-1993)

이 시기는 명실상부하게 청소년정책이 독자적인 내용과 틀을 가지고 확실히 정립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태동기에 제정되었던 「청소년육성법」이 많은 부분 내용이 재검토되고 발전되어서 마침내 1991년 12월 31일 「청소년기본법」으로 새롭게 제정됨으로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청소년정책이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성과는 이 밖에도 체육부가 1990년 12월 27일자로 체육청소년

년부로 직제가 개편되어 청소년국이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되었다. 즉, 정부 중앙 청소년행정체계가 1국 4과에서 1실 2관 6과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새롭게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의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이후의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제정 직전인 같은 해 6월 27일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인데, 결국 「청소년기본법」도 당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 청소년정책을 위하여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의 업적은 청소년육성기금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련활동’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중심개념으로 부각시키는 등 예산과 정책면에서 활발한 추진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④ 청소년정책의 발전단계(1994-1997)

이 시기는 1991년 새롭게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청소년정책이 안정적으로 발전을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2월 25일 문민정부 수립 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발족하면서 문화·체육·청소년 정책을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초 10개년 계획으로 구상되었던 중장기적 청소년육성계획을 5년으로 수정하여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기간 동안 추진되었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들은 가정과 학교의 역

4) 김민은 그의 글에서 ‘청소년육성’과 ‘수련활동’이란 개념자체가 학교와의 구별 짓기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활동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지만(김민, 2004: 76-83) 이러한 교육과의 차별적 개념 형성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교육상황을 볼 때 교육책임자 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당위성을 부여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청소년육성’이라는 개념은 교육의 또 다른 광의적 개념적용으로 볼 때에는 서양의 ‘학교 밖 교육(out of school education)’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문화, 지식화 시대로의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에서 다할 수 없는 교육의 중요한 부분들이 학교 밖에서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될 때에 그것을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개념설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할 증대, 청소년보호 및 선도,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교류 확대,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처의 관련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나 약물, 매체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19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탄생은 청소년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청소년위원회’가 법에 의해 설치됨으로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라는 이분법적 정책개념의 도입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문화체육부 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업무 행정체계로 이원화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정책적 접근과 폭이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정책의 제도입은 우리 시대가 정보화 사회와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맞아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각종 업소와 매체, 약물들이 양적으로 증가되고,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⑤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의 이원화 단계(1997.7-2004)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으로 이원화 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양 정책의 전문화와 청소년정책 영역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양 정책의 이원화로 인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영역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예산이 양 정책의 수행으로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워낙 부족한 청소년정책의 총 예산이 그나마 둘로 분리되어 양 정책 중 어느 하나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도 이원화에 대

한 부정적 평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국가경제가 IMF의 관리를 받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맞은 시기라 1998년 2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변경되면서, 청소년정책 실은 청소년국으로 직제가 축소·개편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게 되어 수행되어야 할 청소년정책 사업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정책의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청소년정책의 업적으로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함께 1998년 수립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은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의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과, ‘청소년인권’, ‘청소년의 자율·참여’가 이 새로운 계획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키워드(keyword)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2003년에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이 수립되어 청소년과 성인 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활동 인증제, 청소년위원회 확대 등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2차, 3차의 국가 청소년계획이 수립 시행된 것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업적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새로운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여 속칭 ‘원조교제’라는 일종의 청소년대상 성매매 행위를 없애는 등 청소년인권을 고양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범국민 의식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 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청소년정책의 통합·도약 단계(2005.4-현재)

2005년 4월 27일 그 동안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청소년육성정책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정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은 마침내 통합되었다. 통합되기 전까지 청소년정책 업무를 여성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에서 서로 담당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결국은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이 통합되어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 된 것이다. 위의 이원화 단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동안 청소년정책이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으로 나뉘어 수행되어 온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뒤로 하고 모든 청소년 관계자들의 바램이었던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동안 양 정책이 분리되어 있는 동안 각 정책은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정책을 수행하였고, 이제 통합되어서는 양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소년위원회로 양 정책이 새롭게 통합되기 전에 문화관광부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게 연구용역을 주어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를 개발하도록 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비슷한 작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이라는 정책비전을 브랜드화하고,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다양한 활동기회 보장’, ‘청소년 참여와 인권 증진’,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이라는 4대 정책목표를 가지고 통합된 청소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외형적으로는 문화부의 청소년국 업무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흡수·통합하는 모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청소년육성정책보다는 청소년보호정책에 더 무게가 실리는 정책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주류(main streaming)는 그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자율·참여’가 정책의 큰 패러다임이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성인의 눈높이에서 사용된 ‘육성’이나 ‘보호’의 개념은 새로운 개념에 그 자리를 내 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교육정책 역사의 개관

학교교육정책 역사에 대한 논의는 교육정책 역사에 대한 논의와는 다르다. 교육정책이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 등 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라면, 학교교육정책은 그 보다는 좁은 범위의 교육정책 즉,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정책은 따라서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초·중등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의 최종단계로서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말하는 고등교육 정책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결국, 학교교육정책이란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주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되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학교교육정책은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대학교 입학 전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1차에서 현행 7차에 걸친 학교교육 과정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고 특히, 현행 7차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①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우리나라의 제1차 교육과정 이전의 시기에는 해방 직후 교수용어로 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의 교수와 실습을 금지 하는 등 일제 식민주의 교육의 잔재를 씻어내는 과정이 있었고,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와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으로서의 ‘교수요목’ 과정의 시기가 있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마침내 최초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마련되었고,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 특별활동의 편제가 마련되었다. 다음 해 8월에는 문교부령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개정 공포되어 ‘교과중심 교육과정’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5)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란 문화유산의 전달과 교사중심의 교육과정이며 설명위주의 교수

이 시기에는 별도의 교육적 인간상이 제시되지는 않았고, 교육법 제2조의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에 따른 교육목적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한국전쟁 직후라 반공교육과 도의교육, 실업교육 등이 강조되었다.

②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한 마디로 ‘경험(생활)중심의 교육과정’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고 이 시기의 교육과정 정의는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였고, 이에 따라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이 강조되는 교육과정이었다. 이 시기에 연간 35주 기준으로 45분 수업을 단위로 주당 수업시간 량이 제시되었고, 편제는 교과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제시된 교육적 인간상은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겨레의 이상과 현실을 명철히 이해하는 인간’과 ‘국민 각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간’이었다. 이 시기에는 ‘한문’ 교과(‘72년)와 ‘교련’ 교과(‘69년)가 신설되었고, 국어과에 한글 전용이 도입된 시기였으며, 1968년 12월 5일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도 중요한 교과과정의 목표였었다.

③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이 시기에도 계속적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고 교육

법을 요구하고 한정된 교과영역 안에서만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6) ‘경험중심의 교육과정’은 미국의 1930년 전후에 나타난 경제 대공황과 J.Dewey를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進步主義) 교육사조의 영향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즉,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교과중심의 ‘교과요목(教科要目)’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개정’(curriculum revision)이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교과활동과 함께 과외(課外)활동을 중요시하고, 생활인의 육성을 목표로 하며, 아동중심의 교육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문제 해결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 전인(全人)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정의 특성은 ‘학문중심의 교육과정’⁷⁾이었다. 따라서 지식이 구조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시하게 되었다. 한편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을 위해서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교육의 쇄신을 통한 자아실현, 국가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등의 교육이념들이 교과활동과 특별 활동의 편제 속에 녹아있었다.

이 시기에는 도덕과 국사교과 그리고 일본어가 신설되었으며(‘73년), 문교부령으로 공포되는 교육과정을 문교부 고시 형태로 개선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부분 개선의 필요성에 대처하게 되었다.

④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기존의 단일 교육사조와 이론의 지배를 탈피하고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으로 적합성이 조화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전의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의 교육과정 사조(思潮)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으로 정의하고 교육과정의 방향을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知力)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의식의 고양’으로 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국민정신 교육을 강조했는데, 교육적 인간상으로는 민주,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7)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은 1960년대에 와서 과학과 기술을 무한경쟁 속의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보면서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먼저 교육과정에서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즉, 지식의 일반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그 내용의 깊이와 폭이 학년의 진전에 따라 점차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며 이 기본 원리를 교사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탐구하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이 교육적 인간상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학습량의 수준을 축소 조정하였고, 국민학교 1,2학년 교과가 통합운영 되었다.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방침은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교과와 특별활동의 구성 체제를 개선하는 등 교육과정의 체제와 구조를 개선하고,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 재량시간을 신설하는 등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강조되었다.

⑤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군인출신의 대통령이 통치한 마지막 시기였다. 이 시기는 1993년 새롭게 출발하는 문민정부로의 정권 이양의 과도기였기에 큰 변화가 없었고, 별 특징이 없었던 시기였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교육적 인간상으로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 특이한 사항으로는 과학고와 예술고가 특목고의 신설이 법으로 제정되었고, 국민학교가 통합교육과정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운영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정보산업 교육과정이 마련되었고, 경제교육이 강조되었으며, 1991년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성이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⑥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1993년 최초로 문민정부가 들어서 군인이 아닌 민간이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해를 맞은 시기이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선거공약은 공약(空約)에 그쳤고, 이 시기에도 학교교육 정책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교육적 인간상도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육성으로 평범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교육과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결정의 분권화, 구조의 다양화, 내용의 적정화, 운영의

효율화가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된 것이 발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의 역할분담이 교육과정에서 요구되었고, 국제화시대를 맞아 러시아어 등 외국어에 관한 전문교과가 신설되고 1997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 최초로 영어교과가 신설되어 연간 최소 68시간의 이수가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정보화시대와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컴퓨터, 환경, 진로·직업 교과 등이 선택으로 신설되었고, 국사가 사회교과로 통합되었다.

⑦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현재)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보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적 인간상 정립을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의 실천 세부목표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여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학교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세부 목표로 개선을 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족이후 7번째로 개편된 교육과정으로, 2000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01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02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2, 고1, 2003년 중3, 고2, 2004년 고3에 차례로 적용되었다. 7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준

별 수업의 도입과 학생 선택권 확대, 재량활동 시간의 도입이 골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10년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필수과목)으로 10개 과목을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르치되 학생별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2,3학년부터는 ‘선택중심교육과정’에 의해 79개 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만 듣도록 하고 있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된다. 즉,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재량활동은 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성되었고,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교과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이해와 능력에 따라 단계를 나눠 가르치는 ‘수준별 교육’이 핵심이다. 1-6단계에선 수학을, 7-10단계에선 수학과 영어를 재이수 가능 과목으로 정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전 단계를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 과학, 국어는 기본·심화·보충 과정으로 교과서를 세분화해 기본 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보충과 심화 과정을 나눠서 수업하도록 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3학년(11-1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6개 일반선택과목과 53개 심화선택과목 등 총 79개 과목이 포함돼 전체 수업의 20-50%까지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한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도 7차 교육과정의 실시에 따른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이 정착되도록 기본적으로 영역선택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관계 고찰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역사적 관계 고찰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인식하여야 할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양 정책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할 때 가장 먼저 인식되는 것이 놀랍게도 양 정책의 관계가 매우 멀리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즉,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주 서로 다른 영역인 것처럼 양 정책의 연계성과 협력 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된 양 정책의 역사 개관을 토대로 해방 이후의 양 정책을 비교해 보자. 먼저, 청소년정책의 미성숙 단계인 해방 이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만들어 지고 체육부 직제로 청소년국이 만들어진 1987년까지 청소년정책은 매우 한정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혜적 복지차원이나 청소년범죄나 비행을 규제하는 차원의 소극적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기간의 사이에 청소년정책 업무가 교육정책 업무 속에 편입된 적이 있었다.

1983년 4월 그 동안 국무총리가 비록 심의 자격을 가졌으나 자문기관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추진과 법적 체계형성의 효과를 위하여 아래의 <표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교부⁸⁾로 잠시 이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 11월 28일 「청소년육성법」이라는 이름의 단행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청소년정책은 체육부로 이관되어 청소년정책조정실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⁹⁾ 이 이후로는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그으며 제각기 정책을 수행해 왔고, 연계·협력에 대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정책적 관계 고찰

1987년 청소년정책이 문교부에서 다시 체육부로 이관되면서부터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이분법적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청소년정책의 핵심 개념은 ‘청소년육성’으로 ‘청소년교육’과 차별화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런 차별화 정책은 물론 교육 쪽에서 원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청소년정책 관계자

8) 문교부는 이후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서 교육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9) 이렇게 된 이면에는 1983년 4월 18일 대구의 디스코홀 화재와 1984년 2월 3일 서울 석관동 맥주홀 화재사건으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사망한데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수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2> 청소년정책기구 변천의 역사

<시 기>	<담 당 기 구>	<주 요 기 능>
1945-196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내무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산발적 규제 ○ 미성년자보호법(1961.12.30)의 금지행위 규정이 근거
1964-197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내무부장관 치안국 보안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교정'에 대한 대책강구, 문제 중심의 소극적 행정
1977-198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대책 시도, 문제 중심적 소극적 행정
1983-198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청소년대책위원회 (문교부 청소년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업무를 문교부 정책의 일부로 취급
1985-1987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청소년정책심의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 기획 시도, 문제 중심의 소극적 행정
1987-198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청소년육성위원회 (체육부 청소년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육성·선도·지원'에 관한 조정·총괄 시도, 여전히 문제 중심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함 ○ 청소년육성법(1987.11.28)의 선언적 규정이 근거
1990-199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청소년육성위원회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지도·보호·육성·교정·지원 등을 '청소년육성'으로 개념 및 내용 정립, 문제 청소년 중심에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선도적 행정으로 전환 ○ 조정기능(총리)과 총괄기능(장관)의 구분·명시 ○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0.6.27) 및 청소년기본법(1991.12.31)이 근거
1994-1998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청소년육성위원회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육성 중 청소년보호업무 별도설정, 청소년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1997.7.1)
1998-200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청소년육성위원회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업무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 ○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00.7) ○ 청소년기본법 개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04) ○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통합('05.4)

들은 이러한 차별화 정책을 통해서 정책영역의 확보와 확대를 꾀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는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차별화를 교육과의 연계·협력을 가로막고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지만¹⁰⁾, 이미 청소년정책 역사의 개관에서 본 것과 같이 청소년정책은 법무부, 내무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에서 주변부적 정책으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한 부처에서 확고한 이념과 법제도를 가지고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무엇보다 전체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옳은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교육정책의 입장에서 청소년정책과의 관계를 바라보자면 분명 같은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그 틀이나 내용에 있어서 교육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겠지만 교육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당면한 대학입시 위주의 과열된 교육을 개혁하는 것에 모든 역량이 총 집중되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청소년정책을 교육부의 교육정책 안에서 지금까지 주관해 왔다면 청소년정책이 지금까지의 쌓아온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 사실은 역시 교육정책 관계자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청소년활동 관계 고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정책의 핵심 개념은 ‘청소년육성’이다. 청소년교육과 차별화하여 이분법적으로 청소년육성을 개념화한 청소년정책은 그의 가장 중요한 실천목표로서의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이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두 큰 개념을 수립한 태두라 할 수 있는 조영승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서술하고 있다. :

“청소년육성은 광의의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청소년의 자율성을 기초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활동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10) 각주 4번 참조

청소년활동의 분석에 관한 원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청소년육성이 담당해야 할 영역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그 정체성(正體性)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나아가 다른 청소년교육기능(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등)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여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치밀하고 조화롭게 돕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정신과 내용은 청소년육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교육기능에 고려될 수 있는 근본규범이다.” (조영승, 1998: 192-193)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육성의 이념을 실천하는 키워드(keyword)인 셈이다. 청소년정책의 확립단계인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는 조영승이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설정하여 주로 학교·직장·근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와 같은 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사회봉사 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 그리고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 활동영역을 임의활동 영역으로 규정하였다.¹¹⁾

청소년정책에서 말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이란 학교교육정책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활동’과 아주 관계가 많고 제7차 교육과정의 자기 주도적 체험학습이라 할 수 있는 ‘재량활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활동이란 공통 단어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특히,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학교교육정책의 특별활동은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청

11) 2004년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3조 3호에는“‘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새롭게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2조 3호에는“‘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소년활동과 내용면에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관계 고찰에서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한 관계고찰은 앞으로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이루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시대적 의미

1) 현행 청소년정책에서의 시대의 변화¹²⁾

(1) 고령화·저 출산 경향으로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요구 증대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두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양 인구 증대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청소년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 출산과 노령화로 청소년에 대한 경제활동 부담이 증가하였지만, 학교-노동시장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이 장기화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및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Ⅱ-3>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 추이

년 도	1970	1980	1990	2000	2004
출산율	4.53	2.83	1.59	1.47	1.16

출처: 통계청자료(2004)

(2) 새로운 유희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문화 환경 주체로서 청소년의 등장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T839전략' 안에 들어있는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PC, 디지털 TV 등의 소비주체가 대부분 청

12) 아래의 글은 2005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의 용역보고서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미래 청소년정책으로 개발한 '청소년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참조로 서술되었다(이민희 외, 2005).

소년들이므로 청소년 U.N.(ubiquitous network)세대의 잠재력을 키울 문화 기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21세기에 들어와 청소년들은 음반, 영화, 게임 등 문화산업의 주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등장하여 한류(韓流)열풍과 ‘Dynamic Korea’를 주도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산업 관련 학과 진학이나 진로결정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3) global standard 수준의 청소년 성장에 대한 요구 증대

21세기에 들어와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 발전적 역할 등이 UN의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UN 경제사회이사회의 「World Youth Report 2003」 청소년 행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권고사항과 정책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UN을 비롯한 선진각국에서는 ‘사람’, ‘지식’, ‘청소년’을 국가 인적자원개발(NHRD)의 중요 요소로 설정하고 특히, 새로운 21C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인적자원개발의 우선적 목표 집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음.

(4) gender 이슈 및 양성평등 개념의 확산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이후 gender 이슈 및 양성평등 개념은 청소년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정책방향과 정책과제에 이러한 개념들의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진 독일의 경우 양성평등을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주요 비전으로 삼고 있듯이, 우리도 양성평등의 의식화 및 사회화 작업은 연령이 이룰수록 그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이며 민주화 발전과 국제화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5) 향락산업 팽창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대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한 정책과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정보기술발전으로 청소년에 유해한 유흥향락산업 및 인터넷 채팅 등으로 인한 성매매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해시설이 주택가 및 청소년 생

활공간(학교주변과 등하교길)에까지 난립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접근가능성이 매우 용이해 유해업소 출입경험율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6) 주5일 근무(수업)제 확대에 따른 청소년 생활환경의 변화

주5일 근무(수업)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여가시간의 증대와 다양한 체험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확대의 긍정적 측면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와는 달리 주5일 근무(수업)제는 청소년 비행·범죄의 증대를 가져오고, 빈부차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여가시간의 증대가 학원수강과 과외 등 사교육비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고 있다.

주 5일제 수업 시범 중학교 대상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생활이 기존 생활과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부족, 맞벌이 부부 증가, 학교 밖 활동 관리소홀 등의 추세로 볼 때 주5일제가 되면 오히려 청소년 비행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전망된다.

(7)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 증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월드컵 응원열기, 대선에서의 젊은 세력들의 참여,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등장 등 청소년참여의 효과들이 입증되고 있으며, 국가 성장과 발전에 청소년의 창조적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일부 변질되어 가고 있음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 전반에 청소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율적·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며, 청소년참여를 사회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책·제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8)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실업 등 청소년 진로의 불확실성 증대

IMF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고질적인 학벌사회 체제로 인한 사회 진입로의 획일화, 경직화, 다양한 직업 준비를 위한 인프라 부재, 그리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해이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등으로 청소년이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 불확실성에 따라 취업과 관련한 청소년의 갈등과 좌절도 증대되고 있고, 청년실업율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일자리 없는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종전까지 아동기-사춘기(청년기)-성년기의 과정을 거쳤지만 최근에는 아이도 어른도 아닌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세대들에서 ‘Twixter’, ‘Neet’ 등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부류가 출현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청소년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폭력, 일탈, 범죄 등의 문제 집중

정보사회가 심화되면서 사이버공간에서는 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정보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 속도는 그에 상응하는 문화의 창출과 보급의 속도를 능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표 II-4> 연령별 사이버범죄 현황

(단위: 건)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계
2000년	675	665	404	135	49	262	2,190
2001년	2,193	1,661	777	242	87	92	5,052
2002년	8,205	6,876	3,743	1,881	563	549	21,817
2003년	10,187	11,185	5,437	2,277	725	339	30,150

출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2004)

(9) 청소년관련 주요법령의 제(개)정과 시행

2005년부터 「청소년기본법」이 새롭게 개정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3법에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보장되고 있고,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복지증진 등이 명시되어 있어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시대적 의미

이미 앞서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관계 고찰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그 동안 양 정책의 관계는 평행선을 그며 접점을 찾지 못했던 관계였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청소년정책이 정부에서 주목받는 주류 정책이 아니라 주변부적 정책 대상으로 간주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인은 청소년정책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 정책이 서로 연계와 협력의 관계를 일찍부터 가지지 못한 책임에는 학교교육정책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정책은 제7차 교육과정까지 오면서도 모든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정책에 머무르고 있고, 현재에도 이러한 지탄을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해결의 고심 때문에 청소년정책과 연계·협력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정책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도 다름 아닌 우리의 교육이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소위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학교교육정책의 교육개혁과 청소년정책

그 동안 학교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노력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번번이 이러한 노력이 실패한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대학이 서열화 되어 줄을 서있고, 이 줄은 다시 서열화 사회를 만들어 내는 줄이 되기에 모두가 소위 최상위 명문 대학에 입학하려고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고, 지나치게 과열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정책 속에서 시도되었던 교육개혁의 노력들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 안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은 「교육개혁심의회」에 의해서이며, 그 이전의 교육개혁들은 교육관계부처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온 문제해결 중심의 부분적인 조치들로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 중심의 조치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시제도와 관련된 개혁안들이다.

<표 II -5> 시기별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내용

시 기	전 형 방 법
1945-53	대학별 단독입시제
1954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 + 본고사
1955-61	대학별 고사 + 내신성적
196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실기, 신체검사, 면접)
1963	(국가고시제) + 본고사
1964-68	대학별 자율입시정책(필답고사 + 진학적성시험 + 신체검사 + 면접)
1969-72	예비고사 + 본고사
1973-80	예비고사(성적 30% 반영) + 본고사
1981	예비고사 + 내신
1982-85	학력고사 + 내신
1986-87	학력고사 + 내신 + 대학별논술고사
1988-93	학력고사 + 내신 (선지원 후시험)
1994-96	수학능력시험 + 내신 (+ 본고사)
1997-현재	종합(학생)생활기록부 (+수학능력시험+논술+면접+실기)

우리나라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를 간략히 위의 <표Ⅱ-5>에서 살펴보면 최초로 1969년 중학교 무시험입학제의 실시를 말할 수 있다. 당시 개혁의 취지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유발시킨 교육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 학생의 신체적 발달 저해, 정서적 불안 조성, 이기적, 비협동적 성격 형성, 과외비 부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풜조, 출신학교 위주의 인간평가, 입시준비 학원의 난립 등으로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개혁의 효과는 전국의 국민학교 아동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는 데는 성공적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류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1974년에는 마침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시되게 되었다.

당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의 취지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실업교육 진흥,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인구의 대도시집중 억제로 매우 의미가 깊은 조치였다. 문제는 이러한 고등학교 평준화가 대학교 평준화 제도의 실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한계이자 문제였다. 즉, 대학교 평준화로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어지지 못하므로 고등학교 평준화의 훌륭한 취지는 명문화에 그쳤고 지금까지도 대학의 서열화 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 전 국민들이 망국적인 대학입학시험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망국적인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개혁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다. 대학입시제도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이 있기 전에 이미 크개는 십여 차례 바뀌었고, 작은 변화는 거의 매년 있었다. 큰 흐름을 보면, 선발의 공정성과 적절성, 대학의 자율성,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서로 순서를 달리하여 강조되어 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심의회」는 1985년부터 과외금지와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골간으로 했던 1980년 7.30 교육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과외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단순한 입시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변혁이 어렵다는 판단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주요 개혁내용으로

는 유치원-5-3-4-4로 이어지는 학제의 개편,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 실시, 대학별로 독자적인 입학전형 실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주당 수업시간 수 감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시도 단위 재량권 부여, 과학두뇌의 개발,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교육행정의 자율화, 교육투자의 획기적 확대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도 교육전반에 걸쳐 별다른 변화가 없자 「교육개혁심의회」는 1989년 「교육정책자문회의」 기구를 거쳐 「교육개혁위원회」로 기구를 개편하여 1995년 마침내 ‘5.31 신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당시의 주요 개혁안으로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도입,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로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1998년까지) 등이 골자였다. 이러한 조치도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자 현 참여정부가 2003년 7월 「교육혁신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시켰으나 지금까지 큰 긍정적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학교교육정책의 교육개혁의 연혁과 내용을 보면 국가가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도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볼 때 과거보다 상황이 악화되었으면 되었지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 청소년정책의 변천사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도 그동안 꾸준히 선진국 수준의 정책을 도입하고 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 막혀서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놓은 많은 청소년 시설과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학원에서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려고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만 소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의 시설 및 기관과 단체는 경영난에 부딪혀 성인들을 목적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간신히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국가의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 학교교육정책의 교육과정과 청소년정책 관계의 시대적 의미¹³⁾

여기서는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관계의 시대적 의미를 90년대 초반부터 즉, 학교교육정책의 제6차, 제7차 교육과정과 청소년정책이 확립된 1990년대 초부터 비교하여 고찰하겠다.

① 학교교육정책의 ‘제6차 교육과정’과 청소년정책

학교교육정책의 교육과정과 청소년정책의 관계가 의미 있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청소년정책에서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이 확립되어 힘차게 출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교교육정책의 제6차 교육과정과 맞물려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내용을 관련 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이 시기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몇몇 교과와 통합, 특별활동시간을 조정한 것과 고등학교에서 계열별 폐쇄형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와 직업과정을 위한 전문교과 만을 구분하는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 지방교육자치단체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학교, 학생의 선택사항이 증가된 것, 그리고 과외활동으로 학생봉사활동이 장려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특별활동부분의 개정부분이 청소년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주당 특별활동 시간이 줄어들었고, 고등학교에서만 전체 이수단위가 12(평균 주당 2시간)에서 16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학급활동(토론활동), 클럽활동 12단위와 단체수련활동 4단위로 구성되었다. 1995년부터는 청소년정책에도 매우 의미 있는 봉사활동 내신 점수화 제도가 도입되어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연간 40시간

13) 아래의 고찰은 2001년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인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를 참조하였다(교육부, 2001).

의 봉사활동(학교와 학급 28시간 확보, 개인 12시간 확보)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었다. 특별활동의 점수화도 이루어져 3점(30%), 2점(40%), 1점(30%)로 상대평가 하도록 권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봉사활동의 내신 점수화와 특별활동의 점수화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1995년 발표된 5.31 '신교육개혁안'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육성관련 개혁안은 1997년부터 대학입시에 적용된 '종합생활기록부제'와 관련이 있다. 당시 '종합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평가로 부터 성취기준 평가로 전환하고, 교과별 성취수준과 석차는 기록하되 전 교과 총점에 대한 전체석차는 기록하지 않도록 하였다. 주요 기록내용의 구성은 학교생활의 총체적인 면을 보도록 되어 있어 학교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취수준과 석차,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출결사항, 특별활동·단체활동·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각종 대회 참가 및 입상 실적, 성격 및 품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청소년정책에서는 입시제도가 교육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에서 이 제도가 학교를 매개로 한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컸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결국 우려한 대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자율적 반영'의 이름 아래 인성, 적성평가를 제외하고 교과 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형식화되었고, 그 외에도 각 교과목의 성취기준을 평가하는 구체적 방법의 결여, 특별활동·수련활동·봉사활동 참여를 기록하는 인정하는 방식의 결여, 점수화로 인한 봉사활동의 의미 퇴색, 교사의 업무부담 등의 현실 문제 앞에 역시 교육정책에 새로운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지 시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보면 봉사활동의 의미는 자생적인 청소년 봉사활동 동아리가 형성되는 등 점차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 고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봉사활동의 의미는 학생봉사활동을 문화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등 다른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확대 적용하면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 것이 큰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방향 중에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단체 수련활동 활성화, 집단적 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학습 제공, 방학 중 다학년 집단야영활동 실시 등 청소년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의 내용을 ‘종합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것은 청소년정책에도 매우 의미가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의 확립을 위해서 도입된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제도는 지금의 ‘방과 후 학교’ 제도의 전신으로 각 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 후 학생의 흥미, 취미 및 학교실정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각종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 피아노, 컴퓨터, 예절교실, 외국어, 등).

② 학교교육정책의 ‘제7차 교육과정’과 청소년정책

먼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그 목표를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로 내용을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과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나온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추진과제 중 청소년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및 학생의 선택권 부여를 목표로 하는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와 지속적으로 운영 되어왔던 ‘특별활동’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10년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필수과목)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된다. 이중 재량활동은 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성되었고,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중학교 교과과정에서는 교과 편제의 조정과 학생·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재량활동이 신설되었다. 그 구체

적인 신설 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성교육, 환경교육 등과 같은 범교과 학습활동과 주제 탐구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활동, 특별활동의 보충·심화 활동과 같은 자기주도 학습활동으로 나뉘어져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다.

<표Ⅱ-6>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재량활동 내용

(6차 교육과정)

(개정)

선택 교과	재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 • 컴퓨터 • 환경 • 기타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교통기본교과의 자율활용 • 선택과목(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 • 범교과 학습, 자기주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주당 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주당 4시간

<표Ⅱ-7>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학생활동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총괄 목표만 제시 ○ 영역 • 학급활동 • 학교활동 • 클럽활동 • 단체활동(고) ○ 강조점 • 학급활동 : 협의, 역할분담, 상담, 적응, 진로탐색 • 학교활동 : 학생회, 행사활동 • 단체활동 : 극기, 수련 탐사활동 ○ 방법·평가 • 지도 방법의 구체적 제시 • 평가영역 및 평가 담당자 지정 ○ 교육 과정 구성 • 초·중·고 분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하위 영역별 구체목표 제시 ○ 영역 • 자치활동 • 적응활동 • 계발활동 • 봉사활동 • 행사활동 ○ 강조점 • 봉사활동 • 자치활동 • 적응활동 ○ 방법·평가 • 시간 배정을 비롯한 편성·운영의 학교 자율권 확대 •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평가 신설 ○ 교육과정 구성 • 초·중·고 통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영역별 구체화 ○ 목표 중심의 영역 설정 ○ 목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한 영역 구분 및 명칭 부여 ○ 학생의 집단적, 자주적, 실천적 활동의 강조 ○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요령 ○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 초·중·고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과정은 내용은 먼저학생들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중시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의 <표Ⅱ-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가 도입되어 학교와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고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6차와 비교해보면 특별활동이 영역별 단위 배당에서 총괄 단위 배당으로 전환되면서 4단위가 줄어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12단위가 되고 대신 재량활동 12단위가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을 청소년정책과의 관계에서 살펴 본 결과 학교교육정책 안에서의 부단한 교육과정 개혁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고 지향하는 방향도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이 개혁되었다고,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현장 때문이다. 그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교육부가 제안을 해도 학부모, 학교, 학생들은 오로지 서열화 된 대학들 중 상위 대학에 들어가려고 모든 것을 전력투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는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혁이다.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없애고 고교입시를 부활하자는 시대를 역행하는 음모에 가까운 움직임들이 있다.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학력수준이 OECD 국가들 중 상위에 있는 것은 과거 입시제도가 있던 시기보다 더 좋은 결과이다. 이는 아마도 고등학교 평준화제도가 미친 영향도 있겠지만 그 만큼 대학입학시험이 더 치열해진 결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시위주 교육에는 창의적인 교과내용의 결과보다는 어려운 영어나 수학문제 푸는 기능이, 인문적 성숙과 문화수준에서 서술되어야 하는 논술이 기술적, 기계적 논술로 참다운 교육과 교육

의 질적 수준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이루어 놓은 사회 속에서의 높은 서열과 명문대학 출신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기가 싫을 뿐이다. 우리 아이가 고통스럽게 성장하던,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성적을 비관해 뛰어내리던, 내가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대학이 평준화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협함이 자신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 평준화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나라를 후진국에 속하게 할 것이라는 위장과 기만은 한 번도 교육정책사에 대학의 서열이 없고 평준화정책을 유지해온 독일이 1,000조원에 가까운 통일비용을 부담하고도 미국과 일본을 앞서 수년 간 세계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21세기에는 단순히 OECD 기준의 학업능력만 가지고 세계는 고사하고 동북아도 주도할 수 없다. 21세기에는 지적능력과 함께, 사회성, 문화적 성숙도, 이타적 심성, 사회적 literacy, 의사소통 능력, 모험심, 강인한 체력 등이 종합된 글로벌리더십(global leadership)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이다. 청소년정책에서는 학교교육정책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인격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2005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수인재양성, 교육복지사회구현,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3대 부문에 역점을 두어 인적자원강국의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의 실천을 위해 ▲대학교육의 혁신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초·중등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교육소외, 부적응 해소 ▲대학생 복지지원 확대 ▲교육개발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e-learning 활성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즉, 바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불행하게 성장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21세기의 진정한 경쟁력을 청소년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글로벌리더십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 대학교평준화와 같은 근원적인 교육혁신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청소년정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들이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에 편입되어서 고등학교나 대학에 입학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타율적인 활동이 되겠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의적으로 보면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모색하고, 획일적인 수능대비 교육과 시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은 시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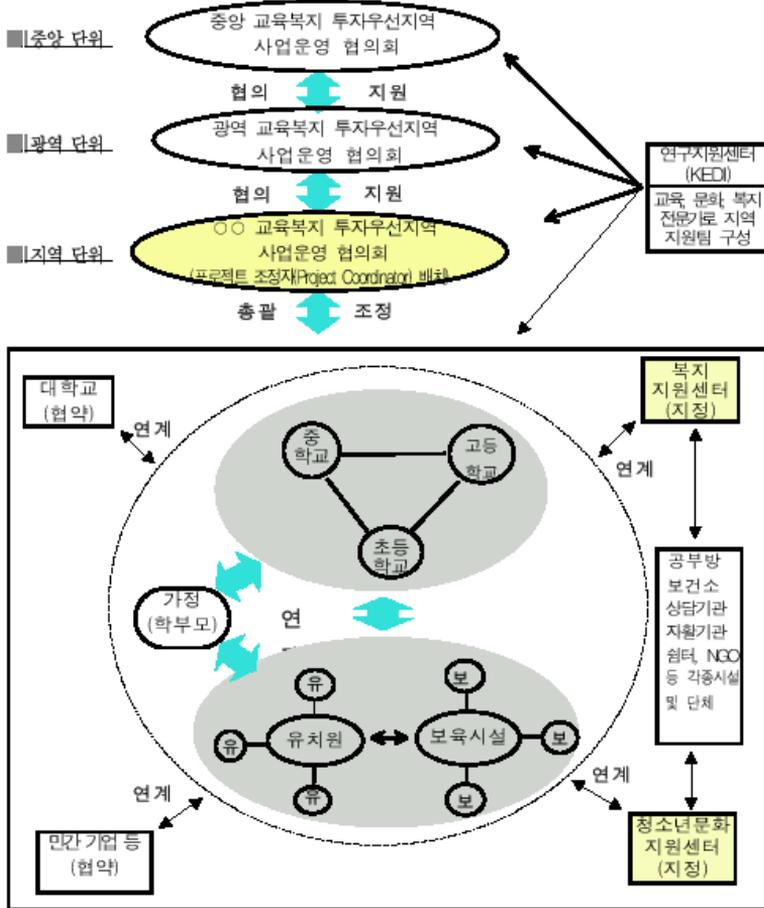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모형 고찰

지금까지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연계·협력 관계의 역사적 고찰과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제 양 정책 간 연계·협력의 실천을 위한 모형 탐색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연계·협력의 실천 모형에 관한 논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함께 연계되는 ‘family-school-community’ 모형과 지역사회에 속하는 청소년 관련 인적·물적·사회적 자원들이 직접 학교로 들어가는 ‘community-to-school’ 모형, 그리고 공간은 지역사회이지만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함께하는 ‘school and community’ 모형으로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세 가지 모형에 관한 사례중심의 이론적 고찰이다.

1) 가정·학교·지역사회(family-school-community) 연계 모형

우리나라에서 현행 실시되고 있는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모형으로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¹⁴⁾이다. 이 모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역교육공동체의 구현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 문화적 결손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집중하며, 그들의 정서 발달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그림 II-1>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추진체제

14) 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먼저 이 모형의 운영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모든 동(洞)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가구주 교육수준’, ‘기초자치단체 별 일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하위 10%와 20%에 해당하는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 수준, 학업 중단자·장기결석자·비행자 수 등 교육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지역 선정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해 서울 6개, 부산 2개 지역의 유치원 34교, 초등 29교, 중 16학교 등 총 79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지원 예산은 특별교부금 238억 원이 투입되었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 44명이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좋은 평가를 얻어 2005년도에는 총 15개 지역으로 사업 대상 지역수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법 제정 등 적극적인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위의 <그림 II-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모형의 운영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선정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별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지역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문화복지관련 기관(단체), 학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각종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운영협의회는 당해 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기관 간 협조체제구축,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등 지역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업운영협의회에는 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추진 계획을 기획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인 프로젝트 조정자(project coordinator)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운영협의회와 프로젝트 조정자는 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과 학교(학생)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복지 거점 구축을 위하여 투자우선지역 내 영유아 교육 보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간에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생활지도, 프로그램운영, 교원연수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특히, 실업계 고)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관련 단체들과 학교간의 유기적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복지관련 기관(단체)중에서 학교

를 지원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연합체)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정된 청소년(문화)지원센터, 복지지원센터는 투자우선지역의 영 유아관련기관, 학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 학생(청소년)에 대한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원센터가 학교와의 공식적인 연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추가 배치, 프로그램 운영비 확충 등)을 강화하게 된다.

이 모형의 지원체제를 살펴보자면 먼저, 중앙 단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의 수립과 평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실무지원팀으로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당해 투자우선지역 사업에 대한 연도별 세부 계획 수립, 기관 간 연계방안 수립 등을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문화복지단체 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광역시 단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운영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 사업의 기본 방향 제시 및 정보 제공,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feedback)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적 연구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 학교교육, 청소년문화, 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지원팀을 상시 운영하며, 해당 투자 우선지역과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게 되어있다.

이 모형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지역 내 학생의 삶의 질 제고와 교육성취 수준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교육·문화 복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대해서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 방과 후 보호 등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핵심 센터로서 지역의 교육-문화-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지역 내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

생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문화·복지의 통합 서비스 망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학교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들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자원봉사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지역 학교 간 연계를 통한 특별활동(중등) 및 체험활동(초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축제의 적극적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내 축제기획단 운영 및 지역 단체 및 전문가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형 사례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방과 후에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학교 수업 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습능력 배양·특기적성 교육·급식(석식, 간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주체는 서울특별시, 광역 시도 및 시·군·구,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이고, 사업시행주관은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있게 된다. 이 사업의 지원형태는 2005년도는 예비비 21억 원을 전국 46개소에 투입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공모를 통한 직접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저소득·맞벌이·한 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교 4-6년 및 중 1-2년생 약 2,350명이 참가하고 있는 중이다. 2006년부터는 자치단체 보조를 매칭펀드로 하여 국고 50% 와 지방비 50%의 분담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운영형태를 보면 수련시설 중심형과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대별하고 무료형, 저가유료형, 전액유료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체험활동위주의 전문선택과정 중심으로 운영

하며 건강검진, 상담, 생활일정관리, 안전귀가 지원, 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종합복지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II-8>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

구 분	내 용	강사진 구성
기본 공통과정	숙제지도, 보충심화학습(주요과목), 자기주도 학습 등	대학생, 대학원생, 주부, 퇴직교사 및 지역 사회 자원인력 활용
전문 선택과정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외국어 등 특기·적성 교육	분야별 전문기능 수행가능자로서 지역사회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 전문인력 활용
특별 지원과정	부모 간담회, 가족 캠프, 부모교육 등	-
생활지원	급식, 건강검진, 상담, 생활일정관리, 안전귀가 지원 등	-
운영시간	토요일(등교일/휴무일) : 정오~저녁7시 / 아침9시~오후4시 일요일 : 미운영, 평일 : 오후 3시~ 저녁 10시	

2) 'community-to-school' 모형

'community-to-school' 모형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는 모형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관련 인적·물적 자원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이러한 사례로 추천할 모범적인 사례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 후 학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위원회가 전개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와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어 두 정책 관계 부서 간 연계·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방과 후 학교' 제도를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부터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다

양한 교육활동이 학교 내에서 one-stop으로 이루어져 사교육비 절감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되어 온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과 후 학교’ 제도는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의 운영관리·지도강사·교육대상·교육비·교육장소·운영시간·프로그램 등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여 해당학교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교과 관련 보충학습 등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현직 교사, 학원강사, 자원봉사자, 지역인사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우수강사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이 모형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모형은 단위 학교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운영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의 연장과 다른 학교(학생)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청소년 관련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를 위해 이에 앞서 금년에 시·도 교육청별로 초·중·고 1개교씩, 총 48개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연구학교 48교 중 운영주체 현황을 보면 학교장 운영이 32개교이고, 위탁운영이 16개교로 학부모회 12개교, YMCA 3개교, 사회복지관 1개교로 되어있다.¹⁵⁾ 연구학교 운영결과와 ‘방과 후 학교’ 운영매뉴얼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미국의 The After-School Cooperation(TASC)에서 YMCA등과 같은 지역사회조직이 공립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나, 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BEST)

15) 위탁운영 16개교 중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YMCA 3곳에 불과한 것은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과 같이 LA시장이 중심이 되어 교육청, 시청, 민간회사 등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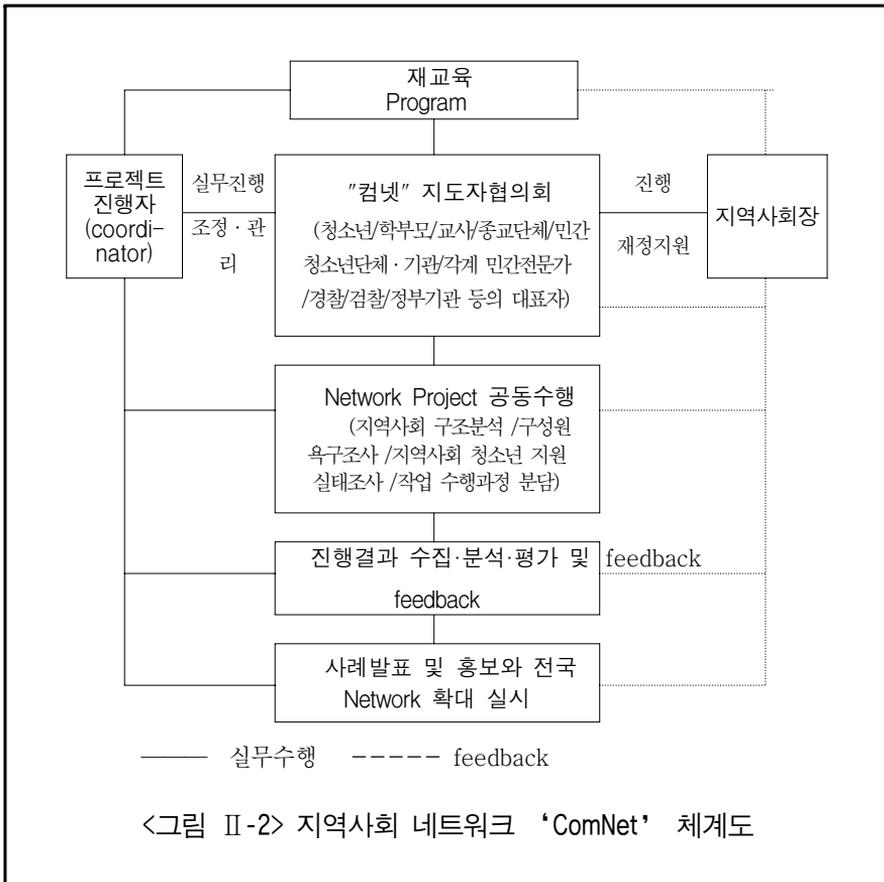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강사는 현직 교원, 교원자격증소지자, 예체능전공자(자격증소지자), 학원강사, 예비교사(교사대생, 발령대기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인사, 국내체류 외국 유학생, 공인된 특기자, 기능인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사례를 보면, 전남 담양남초등학교에서 국제 결혼한 원어민 강사, 보건소 지원 음악줄넘기 강사, 문화원 지원 대나무공예 강사, 군청지원 판소리 강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 마산 호계중학교에서는: 경남대·마산대 사범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대상은 해당학교의 재학생 위주 운영에서 다른 학교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확대 운영하려하고 있는데, 학교의 벽을 허물어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종합회관,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인근 대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23조의 2항에 ‘방과 후 학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학교교육정책의 ‘방과 후 학교’는 청소년정책의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들이다. 현재 양 정책 관계자들이 이들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과 후 학교’의 수요를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단체 및 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좋은 연계·협력 사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3) 'school and community' 네트워크 모형

'school and community' 모형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인프라가 함께 투입되어 일하는 모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관계자가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시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일하게 되므로 'school-to-community' 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정책보고서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에서 개발된 한국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델 '컴넷(ComNet)'¹⁶⁾은 당시 이러한 모형의 이상형으로 제시되었다. '컴넷' 모형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II-2> 와 같다.



16) '컴넷(ComNet)'은 영어 "Community Network"을 줄여서 합성한 말이다.

위의 모형은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개발에 필요한 청소년대표를 포함한 지역사회 각 구성요소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그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민·관·관련단체 및 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각 구성요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직접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지도자협의회’ 대표들을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다양한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컴넷’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네트워크 구성은 네트워크 개발과 네트워크 간 연계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진행자(coordinator), 지도자협의회, 그리고 이 ‘컴넷’ 체계를 총괄하여 진행과 재정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협의하며 이의 내용을 전달하고 지휘하는 지역사회 자치단체의 장으로 그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위의 그림에서 먼저 ‘컴넷’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컴넷’ 지도자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지역사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학부모, 종교단체, 학교, 민간청소년단체 및 기관, 상담·의료·법률, 봉사 등 각 분야, 경찰, 검찰, 정부기관 등의 가급적 대표자로 구성토록 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학교의 대표로 참여하는 교사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청소년 대표와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대책을 마련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과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봉사활동, 수련활동, 방과 후 활동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함께 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학교가 능동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지역사회 교육청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초기 형성단계의 바람직한 인적 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홍보와 각 지역사회 자원들의 연계와 협력, 사전준비모임 주선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자(coordinato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컴넷’에서는 코오디네이터가 정부

의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고용되어 전문적인 담당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전담하여 총괄책임 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한 전문 상근인력 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 대책과 관련된 유관기관에게 위탁을 주어 그 기관의 기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과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해 코오디네이터 역할을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의회를 장을 지역사회장으로 제도화하고 매번 참석하기 어려운 시를 대비하여 대리 참석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스스로와 지역구성원들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이 모형은 학교 밖의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학교관계자들이 지역사회 내 다른 전문가로 구성된 각 계 대표들과 함께 참여하여 학교 홀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폭력과 가출과 같은 청소년문제들을 함께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와 같은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school and community’ 모형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Ⅲ.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현황 및 실태분석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현황 분석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실태조사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 평가

Ⅲ.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 및 실태 분석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현황 분석

1) 청소년정책의 현황분석¹⁷⁾

(1) 기존 청소년정책의 성과

이미 앞에서 청소년정책의 역사를 고찰한 것과 같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보호·규제·단속중심의 소극적 청소년정책”에서 “육성·지원중심의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청소년정책의 범위와 폭을 확대시켰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책영역 또한 점점 다양화·복잡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화된 이후 고유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기존의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청소년육성정책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정책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문화부의 청소년육성정책은 그동안 「청소년헌장」 개정,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제3차 청소년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를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발전시켰다. 2004년에는 1993년 시행된 「청소년기본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정책영역의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청소년

17) 아래의 글은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용역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한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를 참조하였다(이민희 외, 2005).

사업지원 및 기금조성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단체 확대, 청소년국제교류협정 체결국 확대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들의 기반을 확충하고 여건을 강화하였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년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일대전환 및 정부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성매수자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를 시행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대처를 통한 청소년 성보호의 획기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소극적 보호정책에서 적극적 보호정책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위험노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복지 및 인권보호의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

(2) 기존 청소년정책의 문제점

① 국가적 중점추진과제 및 현안정책과의 연계체계 구축 미흡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정부 내 타 부처의 정책들 즉,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정보화정책, 보건·복지정책, 아동정책, 인권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추진과제 및 현안정책과의 밀접한 연계체계를 구축 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의 미흡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청소년정책을 통한 성과가 폐쇄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청소년과 학부모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의 시행과는 거리가 먼 청소년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② 경제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재구조화에 따른 생활기술(life skills) 향상 및 고용가능성 제고 노력 미흡

현재 우리사회에는 청소년들이 지식기반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기술 습득 및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 및 진로

정책 개발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획일적인 입시위주 교육이 유일한 청소년들의 진로인 것인 양 하는 경직되고 전근대적인 교육제도도 한 몫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구촌 환경에 다양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우리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아주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경직되고, 보수적이며, 집단적 이기주의 형태의 정치, 경제, 교육구조와 체제는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적 실업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화·개방화·다양화된 우리 사회속의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새 시대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추진 미흡

주 5일제 수업이 점차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활동 영역이 새로운 전기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사교육의 증가로 인해 더욱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면밀한 상황분석과 예측을 토대로 새로운 청소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학교교육과 청소년들의 진로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학교-직업세계이행(school-to-work transition)과 관련된 정책이 개발되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저 출산 고령화 및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가족단위 보호체계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청소년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대응정책이 나와야 하겠고, 저성장으로 인한 청소년실업 증가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와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개발 등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④ 잦은 조직개편과 분산된 청소년정책 추진체간의 유기적 연계·협력 및 체계적 정책수립 미흡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사를 살펴보면 1964년 내무부 아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40여 년간 무려 8차례(평균 5년마다)나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체계·수단 마련에 있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에도 청소년정책

전담기구가 사방으로 분리되어 있고, 19개 부처에 산재해 있어서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미흡하여 정책의 중복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 연령, 개념 등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치료·재활프로그램들이 교육적으로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 등 그 동안 지속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청소년정책의 실질적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⑤ 지방차원의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미비 및 집행체계 불일치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은 중앙차원에서의 잦은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의 집행체계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가 취약한 지방에 「청소년행정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여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과 질적 저하를 막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청소년행정에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여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행정조직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차치단체별로 청소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고,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직·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며, 민간으로 부터의 기금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한편, 지방의 청소년분야 예산도 타 분야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평균 0.48%)하여 지역차원의 효율적 청소년정책 추진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금 조성과 기업의 기부금 등 다양한 지방의 재원을 마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재원의 부족 및 재정과급력의 장애요인

2004년 정부예산 대비 청소년정책 예산(약 1천억 내외)은 0.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2004년 기금운용평가단의

청소년육성기금준치평가 결과 가칭 ‘체육청소년기금’으로 통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최근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경륜사업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의 다양화 등 기금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의 통합 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9개 정부부처에 산재된 정책의 분리수행으로 인해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 부족으로 새로운 사회변화를 선도하지 못하였다. 공공정책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정책의 정체성과 독자적 정책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변적 정책의 범주에 머물렀으며, 국민적 지지 획득에도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효율적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 강화가 필수적인데 마침내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청소년육성정책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정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었다.

그 동안 양 정책이 분리되어 있어 각 정책은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정책을 수행하였고, 이제 통합되어서는 양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통합된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이라는 정책비전을 브랜드화하고,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다양한 활동기회 보장’, ‘청소년 참여와 인권 증진’,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이라는 4대 정책목표를 가지고 통합된 청소년정책을 시작했다. 새롭게 통합된 청소년위원회는 많은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 아래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과제들은 국제사회의 동향과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중요한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민간-공공의 청소년정책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일이다. 뉴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와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조정·협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민간, 공공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청소년

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포함하여 모든 수립된 청소년정책의 과제들을 보다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장기적 청소년정책의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그 동안 청소년정책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 고유영역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부족하여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청소년정책 수립체계가 미흡했다. 따라서 과학적·장기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청소년정책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 사회 환경 조성은 고답적 구호 같지만 시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정해체,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 유해환경 증대 등 청소년을 위협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점증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예산의 확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사회 환경 조성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비형 청소년 등의 사회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한 사회발전 역량을 확충하는 일이 새 시대에는 중요하다. 지구촌은 지금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다양한 청소년참여의 증대를 통한 민주시민사회의 확립,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리더십(leadership), 시민성(citizenship)을 함양하여 국제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을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시민성 함양, 역량개발 등 청소년 임파워먼트의 실질적 강화가 요청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통합 청소년정책의 방향은 우리 연구보고서의 주제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다. 이에 대한 내용과 의미는 이 보고서의 여러 곳에서 서술되고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 정책의 연계·협력은 시대적 요청이자 정책적 필수요건이다. 이

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은 아래의 연구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산된 청소년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통합성(integration), 전문적인 청소년정책 집행체계 구축과 청소년정책 현장 자원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성(specialty),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써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추구하는 접근성(accessibility), 체계적·과학적 정책평가와 ‘투입(input)’ 중심에서 ‘성과(outcome)’ 중심으로의 재정운영방식 전환을 통해 성과창출 극대화를 꾀하려는 효과성(effectiveness), 단기적·일회적 정책개발과 시행에서 탈피하고, 중장기적·지속적 정책추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향상을 추구하는 지속성(sustainability) 등이 요청된다.

2) 학교교육정책의 현황분석

한국의 학교교육정책들은 중앙수준과 지방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수준의 학교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정책을 입안 결정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수준의 학교교육정책이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입안 결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시·도교육청 밑에 지역교육청이 있기는 하지만 시·도의 하급행정기관일 뿐 실제 자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권한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정책은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하지만 실제 고등교육단계와 평생교육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정책들은 대부분 지방의 시·도교육청에 이양 내지는 위임되어 있고 특히 청소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수련활동이나 봉사활동 혹은 상담활동이나 인성교육 등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기본방향 혹은 방침 또는 대강의 원칙과 지침만을 결정할 뿐이지, 그 구체적인 정책은 대부분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입안되고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이다.

학교교육정책의 결정과 추진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행정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체제는 3층 구조의 분업적 체제로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5개의 직속기관을 갖고 있음), 지방의 16개 시·도교육청(167개의 직속기관을 갖고 있음)과 시·군·구 단위의 182개 지역교육청(200개의 소속기관을 갖고 있음)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중앙은 국립학교와 고등교육기관,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사설학원, 각종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을 직접 관장한다.

교육자치제도 실시에 의해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특별행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은 교육자치 미 실시로 시·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 3층 구조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 및 직속기관에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3,764명, 일반직(1급에서 9급 공무원) 30,448명(지방직 포함) 등 모두 34,212명의 교육행정인력들이 일하고 있으며, 초·중등학생 2,071명당 전문직 1명, 초·중등학생 256명당 일반직 1명 정도로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

(1) 중앙정부의 학교교육정책 과정 및 현황

학교교육정책이란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말하며 통상 평생교육정책과 대비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정책이라고 할 때 유치원단계에서부터 대학교육단계까지를 말하지만 실제 청소년 정책이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정책과 초등교육정책, 그리고 고등교육정책을 제외한 중등교육정책만을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차관보, 2실, 6국, 1단, 3심의관, 36과(담당관), 7팀의 조직에 514명의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조직 중 청소년정책과 관련이 깊은 중등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는 학교정책실로

서 이 실은 1실 2국, 11과로 약 145명(133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II-1]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 중 초·중등학교 교육정책 관장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303호)'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단계의 학교교육 권한은 주로 '학교정책실'에서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학교정책실의 사무는 학교정책 일반과 교육과정 및 평가정책, 과학·실업교육정책, 교원정책(양성, 연수, 인사, 교직원단체 등), 지방교육복지정책, 지방교육재정정책, 유아교육정책, 특수교육정책, 보건교육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중등학생에 대한 정책 관장 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들의 평생학습정책과 직업교육정책은 평생학습국의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여성 청소년 정책은 여성교육정책과에서 관장한다.

학교정책실에서 관장하는 각종 학교교육정책 및 업무들 중 청소년정책과 관련 있는 학교교육정책 업무들은 대부분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교육복지정책과, 학교체육보건급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의 업무관장 사항을 아래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학교정책실 관장 학교교육정책 및 업무

부 서	업 무 내 용
초·중 등교육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 초·중등학교 교육제도의 연구·발전 - 과학고등학교 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 초·중등학교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정책수립 -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 학생의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조정 - 초·중등학교 학교체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수립·조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교과용 도서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학교평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그 밖에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유치원교육과정, 특수학교교육과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정책의 수립 -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p>교육 과정 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도서심의회 및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 구성·운영 - 교육과정심의회 및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 구성·운영 - 교과용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 외국교과서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검토 -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 국정도서의 편찬계획 수립 -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 국사편찬위원회의 운영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및 학습참고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지도
<p>과학 실업 교육 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지원 -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 중앙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 -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원 - 과학교육 단체 지원 -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지원 - 고등학교 직업교육 촉진 및 지원 -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 -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p>교육 복지 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특성화학교·자율학교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 교육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 초·중등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제도개선 - 국립대학(교육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부설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관련 지역특구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체육
보건
급식과

- 초·중등학교 학생체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학생체력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 초·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지원
-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 학교보건정책의 수립·조정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학교주변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보건·급식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 학교급식의 영양·위생관리에 관한 기준 설정
-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

이 밖에도 평생학습국의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지원, 원격대학의 설치 및 운영지원,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한국지도자육성재단·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지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그리고 여성교육정책과에서는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교육의 증진, 여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여성의 교육 참여 확대계획의 수립 등을 관장한다.

이들 각 조직에서 관장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책 사안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있다. 그러나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안 결정되는 학교교육정책은 대부분 해당 국·과에서 정책을 직접 개발하지만 대부분 교육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 교수 등에 정책 연구를 의뢰 한 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입안과정에서는 대부분 공청회나 세미나 등 각종 여론 수렴 활동

을 거치며,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정책과 관련되어있는 중등교육정책을 입안 결정할 시 청소년정책 관장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2) 지방정부의 학교교육정책

지방정부의 학교교육정책은 교육자치제도에 의해 시·도교육청이 관장한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청소년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중등학교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결정자이며 동시에 집행자이다. 그리고 중등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교육시설을 실제 관장 운영하는 주체이기도 하며, 교원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권한을 가진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교육기관을 관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장 지역 내의 대부분의 평생교육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지역 내의 민간 사설학원 역시 교육감의 감독 하에 있다.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살펴보면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7120호)’ 제2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 및 사무를 관장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 교육조례안의 작성
- 교육예산안의 편성
- 교육결산서의 작성
- 교육규칙의 제정
-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운용
-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그러나 이들 권한 중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교육감의 관장 업무들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아 시·도교육청은 그 밑에 하부행정기관을 두고 있는데 각 지역교육청들이 그것이다. 지역교육청은 시·군·구 수준의 기초교육행정기관으로서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하지 않고 학생인구수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2개의 군이나 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1개의 지역교육청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통 통합지역교육청이라 한다. 지역교육청의 장은 교육장으로 호칭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182개의 지역교육청을 가지고 있고 이들 중 통합지역교육청은 모두 38개로 약 2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관내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설학원 등을 관장할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중학생 단계에 해당하는 청소년 정책은 지역교육장의 업무와 매우 관련이 높다.

이상과 같은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도교육청의 조직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청 조직이 대동 소이하지만 인구수에 비례하여 그 크기가 약간 다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도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1실, 2국, 6담당관, 1단, 8과로 되어 있다. 이들 조직 중 청소년 정책과 관련이 높은 부서는 교육정책국의 중등교육과와 산업정보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이다.



[그림 III-2]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도

시·도교육청의 관장 업무 중 청소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교육정책은 교육정책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국에서도 주로 중등교육과와 산업정보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의 업무가 비교적 청소년정책관련 교육정책이 많다. 이들 주요 과의 관장 업무를 보면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 과의 관장 사무

관 장 사 무 명	
중 등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 중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 중등학교 장학지도 • 중등학교에 대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 중등학교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관리 • 중등학교 학생의 학예행사 및 생활지도 • 중등학교 학교평가 업무 • 장학생선발 및 추천 •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 협약(협정)에 의한 외국과의 교육교류(교원, 학생)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 • 중등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 중·고등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산 업 정 보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기술·가정 포함)·정보교육과정 운영지도 • 실업계학교 장학지도 • 실업(기술·가정 포함)·정보교육에 관한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지도 • 실업계학교의 현장실습 및 진로지도 • 각종 기능경기대회 운영·지원 • 실업계학교 장학금 관리 • 공동실습소 운영지도 • 일반계고교생 직업교육 운영지도 • 실업교육 육성대책 수립 • 실업계학교 전문교과 교원 연수 • 실업계학교 학교평가 • 교육용 S/W 보급 • 학교 전산망 구축·지원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 자녀 PC 및 우수학생 교육비 지원 • 타 산업교육 및 교육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평 생 교 육 체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획·제도(학원 포함) 관리 개선 및 운영지도 • 평생교육시설(학원 포함)의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 개인과외교습신고제 운영의 지도·감독 •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도 • 학점은행제의 운영 • 체육교육에 관한 학사·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지도 •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아영, 심성, 임해, 특수영역) •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및 교류 •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운영지도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 과정 운영지도 • 보건·체육 및 학생수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 학교보건·환경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학생 신체검사의 관리 • 학생 및 교직원 보건교육의 지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의 지도 • **시 학생교육원 운영지도 • **시 학교보건원 운영지도 • **시 학생체육관 운영지도 • 재단법인 서울체육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	--

한편 시·도교육청에는 본청 소속의 다양한 직속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총 167개에 이른다. 각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의 종류는 연구기관, 연수기관,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수련기관, 학생체육시설, 학생야영장, 자연학습시설, 학생수영장, 공동실습소, 교직원복지시설 등이다.

〈표 III-3〉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연구기관	1	2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8
연수기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18
평생교육기관	4	-	-	-	1	2	-	-	5	-	-	-	1	1	-	-	14
도서관	17	11	9	6	2	-	4	3	-	1	1	-	2	6	1	1	64
학생회관	-	2	1	-	2	-	-	-	-	1	1	3	-	-	-	2	12
학생수련기관	1	1	-	1	1	-	-	1	4	-	1	2	3	1	3	-	19
학생체육시설	1	-	-	1	-	-	-	-	-	-	-	-	-	-	-	-	2
학생야영장	-	-	-	-	-	-	-	-	-	1	1	-	2	-	-	-	4
자연학습시설	-	-	-	-	-	-	-	-	-	-	-	-	1	-	1	-	2
학생수영장	-	-	-	-	-	-	-	-	-	-	-	-	-	-	-	-	0
공동실습소	-	-	-	-	-	-	-	2	-	3	-	-	-	-	-	-	5
교직원복지시설	-	-	-	-	-	-	1	-	1	-	1	-	-	-	-	-	3
기 타	1	-	-	-	1	1	-	-	2	-	-	-	1	-	-	-	6
합 계	26	17	12	10	9	5	7	8	14	8	7	7	12	11	8	6	167

주 : 기타내역 ; 서울 → 학교 보건원, 광주 → 광주교육 시설감리단, 대전 → 한밭교육 박물관, 강원 → 이승복 기념관, 강원도학생복지관, 전남 → 학생종합교육원

이들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들은 특히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지도를 위한 시설들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면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 하다. 여러 종류의 직속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연구원 : 교육연구원의 기능은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방법 개선,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교육정보화 및 교수학습지원 등 교육의 이론과 실체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응용코자 교단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또한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연수원 : 교육연수원의 기능은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연수 운영'을 목표로 자기 주도적 참여 연수 강화, 연수자 중심의 열린 연수 체제 운영, 수업방법 혁신과 현장 개선 연수 강화 등 교육현장 중심의 연수를 운영한다.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교실 강좌와 수영교실, 헬스장등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디지털자료실, 문헌정보실, 어린이실 등의 도서관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보건원 : 학교보건원은 학교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학교보건연구, 검진 및 연계진료를 함으로써 학교보건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지역교육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시·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이다. 지역교육청의 설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120호)' 제36조에 근거하는데 일반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기초단위 자치제 실시에 의해 독자적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은 기초단위 교육자치 미 실시로 자치 기구는 아니다.

지역교육청의 장인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12호)' 제 37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도교육감으로부터 다음 정책 사항을 위임 받아 관장할 권한을 지닌다.

-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관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한편 지역교육청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에 모두 182개(일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는 23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주요 현황은 다음 <표 III-4>과 같다.

<표 III-4> 시·도별 지역교육청수 및 소속기관수

구 분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서울	11	-
부산	6	1
대구	4	-
인천	5	-
광주	2	4
대전	2	-
울산	2	-
경기	25	12
강원	17	35
충북	11	18
충남	15	17
전북	14	14
전남	22	16
경북	23	40
경남	20	39
제주	3	4
합 계	182	200

이를 보면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에 총 200개의 소속기관이 있어 평균 1개 지역교육청 당 1.1개의 소속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종류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학생 야영장, 학생수영장, 교직원수련원 등이다.

지역교육청의 내부 기구들을 보면 구체적인 국·과의 설치, 국·과장의 직급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지역교육청의 유형은 앞서 살펴본 기구 설치 기준에 의하여 2과 체제, 4과 체제, 2국 6과 체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2과 체제는 학무과와 관리과 위주로 구성하고, 이 경우 교육장과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되고 관리과장은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4과 체제로 운영되는 지역교육청은 3곳(경남 마산, 서울 중부, 부산 남부)이 있는데 학무과, 평생교육체육과, 관리과, 재무과로 구성 이 경우 교육장과 학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되고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국 6과 체제로 운영되는 지역교육청은 40개청이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 학생 7만 명 이상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0개, 부산 5개, 대구 3개, 인천 4개, 광주 2개, 대전 2개, 울산 2개 등 대도시와 인구가 밀집된 전국 주요 도시(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남양주, 청주, 전주, 포항)에 분포되어 있다.

조직은 지역마다 약간씩 상이하나 대부분 학무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사회체육과를 두고 있으며, 관리국의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를 두고 있음. 이 경우 교육장, 학무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등은 장학관으로 보임되며 사회교육체육과장, 관리국장 및 이하 3개 과는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역교육청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데 조직 규모 및 하부기구의 명칭은 교육장 아래에 학무국과 관리국을 두는 대동소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

지역교육청 근무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은 총9,564명(국가직 2,085명, 지방직 7,479명)이며, 1개 지역교육청은 평균 약 52.5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직을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이 5,119명, 기능직이 2,357명으로 약 68 : 32의 비율이다.

이들 지역교육청의 조직 중 청소년정책과 비교적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학무국(과)의 중등교육과와 사회체육과이다. 이들 조직들에서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의 해당과의 업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지역교육청은 관장 업무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며, 시·도교육감이 위임한 고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정책을 집행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3) 학교교육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① 교육정책의 자주적 특성과 이에 따른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협력체제 전무
교육정책은 오래 전부터 타 부처 혹은 여타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는 교육의 특성상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혹은 이해관계에 근거한 영리적 행위로 부터의 자유로운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④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정책의 특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독점 정책인 것처럼 여겨져 왔고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을 비교적 소홀히 취급하여 왔다.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협력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정책의 대상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소년 정책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인 논의만 있었지 실제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 행위가 없다. 즉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청소년위원회간의 어떤 형태로든지 상호 연계·협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16개 시·도 교육청은 실질적인 학교교육정책 실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 추진 기관인 시·도청과의 연계·협력 체제가 전혀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

② 지방교육자치제에 의한 자주성 증시 특성과 이에 의한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의 혼란과 권한 및 책임 모호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여 1991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어 지방의 교육적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나아가 교육이 다양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에 의해 청소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중등학교 교육정책이 시·도교육감에게 이관되어 있어, 중등학교 교육정책이 시·도별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외부의 관련 정책 파트너는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등학교 정책이 기본 방향과 방침은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으나 어디까지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인지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행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궁극적으로 학교의 성공과 혁신을 지원하는 기능 보다는 교육행정기관들이 결정한 시책과 방침을 관리, 감독하는 것 위주로 발휘되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권한의 경우 구체적인 권한 배분 기준 없이 기관별로 관장해야 할 사무만을 직제를 통해 추상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누가 어디까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모호하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시·도가 처리해야 할 교육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교육감의 관장사무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방의 사무이고, 어떤 것이 중앙정부의 사무인지에 대해 불명확하다.

비슷한 사무가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본정책 혹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운영·지도 또는 관리·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직제규정에 표현된 사무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무 한도가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어디까지가 중앙의 책임이고 지방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303호) 제11조(학교정책실) 제3항 제25의3호. 과학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지원, 25의7호. 실업계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지원에 관한 사항, 제72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지도 등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8조(교육정책국) 제5항 제5호. 과학고등학교 운영 지도, 제12호.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 지도, 제1호에서7호의 특수학교에 대한 지도 등이 서울교육청의 사무로 규정하여 그 경계선 모호하다.

교육행정권한의 배분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누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로 권한을 배분해야 하나, 실체는 이러한 기준 없이 관장해야 할 학교의 관리·감독 위주로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위주로 부적절한 권한 배분이 지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은 결국 타 부처들이 중등학교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들과 상호 협력적 연계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려준다.

③ 교육정책의 폐쇄적 특성에 의한 교육정책 관장 실·국·과 간 및 유관 부처와의 협력 미흡

교육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 혹은 실·국과 이기주의가 작용하여 매우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업무가 처리되어 실제 어느 국·실·과에서 어느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모르고 자기 관장 업무가 결정 집행되는 예가 빈번하다.

이러한 폐쇄성은 실·국·과 간 조정체제 미흡, 중앙과 지방의 사무 종류와 배분에 대한 개념과 범위, 기준 미설정, 기관들이 관장·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시·도 위임사무, 시·도재위임사무 중 어떤 것인지 모호, 공무원들의 폐쇄적인 업무 처리 관행 등에 기인한다.

오랜 중앙집중형 행정 문화로 실제 문제 발생 시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풍토가 강하고 이러한 풍토 속에서 중앙은 지방의 교육감에게 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정책실 소관 사무에서 집행사무가 과다하여, 타 부처와의 상호 협력 및 연계에 의한 정책의 효과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학교정책실 조직이 정형화 되어 있어 교육환경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교육개혁사업, 그리고 다양한 유관 부처와의 연계·협력을 융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④ 시·도교육청의 독자성에 의한 청소년정책과의 연계·협력 미흡

시·도교육청들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정작 해당 시·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청과의 연계·협력 체제 유지하는 거의 찾기 어렵다. 물론 일부 시·도는 교육감과 시도지사들이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는 해도 오랜 독자적 업무 처리 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정책 공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경우도 다양한 집행사무의 과다로 타 기관과의 정책 공조 혹은 업무 연계·협력 체제 유지의 여지를 발휘하게 어렵게 한다. 이는 우리의 할 일도 많은데 타 기관과의 연계체제 유지를 할 만한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로 연결된다. 실제 시·도교육청의 기획 및 정책 개발 사무 비중은 약 8%,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무 비중은 약 17%이며, 시·도교육청의 사무 중 나머지 75%는 행정관리 및 감독 등 획일적 통제 중심의 집행사무이어서, 이러한 과다 집행 사무 비중 속에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협력 사무가 포함되어 효과적으로 수행될만한 행정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⑤ 각종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폐쇄적 운영 특성에 의한 시설 및 프로그램 공유 곤란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들은 모두 167개의 직속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역시 200여개의 소속기관들을 관장하고 있다. 이

들 기관들은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관 혹은 연수 및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제공하는 기관들로서 청소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교원연수시설 역시 청소년 지도자들의 연수기관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 각종 교육청 관할 직속 혹은 소속기관들의 폐쇄적 운영으로 여타 기관과의 상호 연계 공동 활용 체제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실태조사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실천현장에 근무하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양 정책의 연계·협력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본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교사, 청소년지도자, 정책입안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한 의식 및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네 집단으로서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16개 광역시·도 별로 전국을 단위로 하여 다단계 유층표집방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다. 표집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입안 관련 공무원은 전수조사로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중앙의 경우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전집(population)으로 하여 조사대상자를 무선적으로 표집 하였다. 지방의 경우는 광역시를 전집으로 하여 조사 대상자를 무선적으로 표집 하였다.

둘째, 청소년지도자 및 교사는 전국을 전집으로 하여 조사 대상자를 무선 표집 하였다. 실제 표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소규모 문화의집이나 수련관, 자연권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학교연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서울은 40명-7명 정도의 청소년지도자가 근무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방은 10명-1,2명 정도의 청소년지도자만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편파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각 시도별로 한 기관 당 최고 7명 이하에서 최저 1명까지로 조사하였다. 교사는 16개 광역시별로 7명씩 조사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인원수는 총 1,066명이며 최종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003부(회수율 94 %)이었다. 조사기관은 총 153개 기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시·도청, 시·도교육청, 청소년시설, 학교)이었다. 조사 기간은 2005년 7월 20일부터 8월25일까지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표Ⅲ-5>과 같다.

<표Ⅲ-5> 조사 대상자의 표본 크기

(단위: 명)

대상	지역	청소년정책	학교교육정책
공무원	중앙	20명 (청소년위원회)	20명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	100명 (16개 시청/도청 청소년담당자)	100명 (16개 시교육청/도교육청)
지도자, 교사	16개 시·도	386명 (청소년지도자) (55 시설) 7광역시x4시설x8명=224명 9 도x3시설x6명=162명	440명 (교사) (64 학교) 7광역시x4학교(중·고 2학교씩) x8명=224명 9 도x4 학교(중·고 2학교씩)x6명=216명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WIN 1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첫째, 전체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응답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 간 응답분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표를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카이스퀘어 값을 제시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집단 간 평정점수의 평균차이를 통하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비교로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3.0%, 여성이 47.0%이고, 조사대상 지역은 16개 광역시·도로서 서울시가 13%,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의 5-8% 이내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근무연도는 1~5년 사이가 32.6%, 21-30년 사이가 17.2%로 높았으며, 조사대상 집단은 교사가 53.3%, 청소년지도자가 23.3%,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12.9%, 학교 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이 10.4%로 나타났다. 현 직무종류의 문항에 응답한 조사대상은 교사 519명, 청소년지도자 227명,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6명,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조사대상 집단 간의 사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접근 가능한 대상자를 포함한 것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전집 사례수의 차이로 인한 표집계획 단계에서 출발된 것이다. (표Ⅲ- 6참조).

<표Ⅲ-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525	53.0
	여자	465	47.0
	계	990	100.0
근무지역	서울시	128	13.0
	부산시	63	6.4
	대구시	71	7.2

	인천시	71	7.2
	광주시	45	4.6
	대전시	56	5.7
	울산시	48	4.9
	경기도	62	6.3
	강원도	69	7.0
	충청북도	33	3.3
	충청남도	62	6.3
	전라북도	65	6.6
	전라남도	53	5.4
	경상북도	49	5.0
	경상남도	57	5.8
	제주도	55	5.6
	계	987	100.0
근무연도	1년 미만	141	14.3
	1-5년	321	32.6
	6-10년	117	11.9
	11-20년	204	20.7
	21-30년	169	17.2
	30년 이상	33	3.4
	계	985	100.0
현직무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6	12.9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	10.4
	교사	519	53.3
	청소년지도자	227	23.3
	계	973	100.0

2) 직무종류별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한 인지도 차이검증¹⁸⁾

직무종류별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인지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ANOVA의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Ⅲ-7>와 같이 나타났다.

18) 각 설문문항의 평균측정 점수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하여 설문지 문항을 아주 잘안다 (매우 심각하다, 매우 필요하다 등)를 5점, 잘 안다를 4점, 대충안다를 3점, 잘모른다를 2점, 전혀모른다를 1점 척도로 변수를 모두 recode하여 사용하였다.

<표III-7> 직무종류별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인지도 차이검증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df	Scheffe 검증 ¹⁹⁾
청소년정책 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5	3.5680	.86450	86.807***	3/956	3) < 2),4) <1)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	2.9109	.81362			
	교사	508	2.4646	.75416			
	청소년지도자	226	3.1062	.71632			
	Total	960	2.8063	.86404			
학교교육정 책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5	2.7120	.80137	42.518***	3/944	1),4) < 3) <2)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	3.6634	.82798			
	교사	499	3.1263	.78777			
	청소년지도자	223	2.7444	.68586			
	Total	948	3.0390	.82051			
청소년정책 의 법·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5	3.4320	.85512	81.315***	3/940	3) < 2),4) <1)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0	2.8600	.82902			
	교사	496	2.3931	.67020			
	청소년지도자	223	2.9910	.78838			
	Total	944	2.7214	.83261			
학교교육정 책의 법·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5	2.5360	.74643	33.389***	3/936	1),4) <4),3) <2)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99	3.4444	.89468			
	교사	494	2.7915	.80758			
	청소년지도자	222	2.5631	.69457			
	Total	940	2.7723	.82382			

*p< .05 **p< .01 ***p< .001

19) 1) 청소년정책 관련공무원, 2) 학교교육정책관련공무원, 3) 교사, 4) 청소년지도자

구분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df	Scheffe 검증 ²⁰⁾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6	4.5079	.71270	21.422***	3/969	3),2) <1),4)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	4.2772	.70879			
	교사	519	4.1830	.61136			
	청소년지도자	227	4.5330	.53424			
	Total	973	4.3165	.63869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중요성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6	4.5159	.66614	18.512***	3/969	3),2) <4),1)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	4.2277	.71946			
	교사	519	4.1985	.61913			
	청소년지도자	227	4.5066	.53522			
	Total	973	4.3145	.63486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6	2.4286	.77386	23.045***	3/968	4),1) < 3) < 2)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	2.9010	.74169			
	교사	518	2.6641	.65463			
	청소년지도자	227	2.3128	.70646			
	Total	972	2.5761	.71570			

*p< .05 **p< .01 ***p< .001

20) 1) 청소년정책 관련공무원, 2) 학교교육정책관련공무원, 3) 교사, 4)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지도자의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P < .01$)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유의한 차이가 어느 집단 간에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비교검증 방법으로 각 집단들의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아도 사용될 수 있는 Scheffe 검증($P < .05$)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평균값이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집단이 3.56으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지도자 3.10,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2.91, 교사 2.46의 순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_{3,956} = 86.807, P < .01$). 또한 Scheffe 검증($P < .05$)을 실시한 결과, 교사보다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이 높고, 이 보다는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 두 집단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이 3.66으로 가장 높았고, 교사가 3.12, 청소년지도자가 2.74,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2.71의 순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_{3,944} = 42.518, P < .01$). 또한 Scheffe 검증($P < .05$) 결과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집단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인식이 그보다 크게 나타났고,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법·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3.43으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지도자가 2.99,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이 2.86, 교사가 2.39의 순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_{3,940} = 81.315, P < .01$). 또한 Scheffe 검증($P < .05$) 결과 교사집단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교육정책 관련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이 그보다 컸고,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교육정책의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이 3.44로 가장 높았고, 교사가 2.79, 청소년지도자가 2.56,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2.53의 순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_{3,936}=33.389$, $P < .01$). 또한 Scheffe 검증($P < .05$) 결과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어 낮게 나왔으며, 교사의 인식이 그보다 크게 나타났고,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청소년지도자가 4.53으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4.50,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이 4.27, 교사는 4.18의 순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_{3,969}=21.422$, $P < .01$). 또한 Scheffe 검증($P < .05$) 결과 교사와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집단의 인식이 낮게 나왔으며,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인식이 그보다 크게 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4.51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지도자가 4.50,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이 4.22, 교사가 4.19의 순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_{3,969}=18.512$, $P < .01$). 또한 Scheffe 검증($P < .05$) 결과 교사와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집단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집단의 인식이 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이 2.90으로 가장 높았고, 교사가 2.66,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2.42, 청소년지도자가 2.31의 순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_{3,969}=23.045$, $P < .01$). 또한 Scheffe 검증($P < .05$) 결과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집단의 인식이 낮게 나왔으며, 교사의 인식이 그보다 크게 나타났고,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에서 분석된 결과를 보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네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인지도에 있어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차이가 집단별로 구분이 된다는 것은 현재 연계·협력의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가 있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청소년정책보다는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고,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가 잘 모른다는 낮은 응답률을 나타냄으로서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교사 집단의 인식을 적극 고양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정책관련 공무원의 인지도가 잘 모른다는 대충 안다는 응답을 나타냄으로서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정책관련 공무원 집단의 인식을 적극 고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정책관련 공무원 집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반하여,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의 응답은 그저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함으로써 현재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정책관련 공무원 집단이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청소년정책의 법·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학교교육정책의 법·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는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집단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청소년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 두 집단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과 적극적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정도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교사와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보다 연계·협력의 어려움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네 집단이 공통된 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어 인지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에 대한 빈도분석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아래의 <표Ⅲ-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무부처간의 인식 및 노력부족이 56.0%로 두드러지게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법·제도의 취약으로가 15.5%,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부족이 14.3%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주무부처간의 인식 및 노력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한 것은 이미 앞서 검증된 집단 간 인식차이와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표Ⅲ-8>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법.제도의 취약	147	15.5
주무부처 간의 인식 및 노력 부족	531	56.0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및 노력부족	64	6.8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 부족	136	14.3
일선 현장 담당자의 인식 및 노력부족	70	7.4
계	948	100.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행정체계가 42.6%로 가장 높았으며, 법·제도17.5%, 프로그램이15.7%, 시설 등 물적 자원이 13.4%, 인적자원이10.8%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9참조).

<표Ⅲ-9>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
(단위: 명, %)

구 분	빈도	%
법.제도	173	17.5
행정체계	422	42.6
인적자원	107	10.8
시설 등 물적자원	133	13.4
프로그램	156	15.7
계	991	100.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는 체험활동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수련활동이 22.7%, 특별활동이 17.0%, 재량활동이 12.6%, 가족단위청소년활동이 12.0%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10 참조).

<표Ⅲ-1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
(단위 : 명, %)

구 분	빈도	%
체험학습	352	35.7
재량활동	124	12.6
특별활동	168	17.0
가족단위 청소년활동	118	12.0
수련활동	224	22.7
계	986	100.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 행정체계 연계방안으로 중앙차원의 연계·협력체제(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구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37.8%, 매우 필요하다가 31.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간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청소년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68.9%로 조사되었다.

지방차원의 연계·협력체제(시·도의 청소년관련부서와 시·도교육청) 구축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39.4%, 매우 필요하다가 각각 37.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차원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의 청소년관련부서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간의 연계·협력회의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76.7%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앙차원(68.9%)보다는 지방차원(76.7%)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지도가 7.8% 더 높음을 알 수가 있다. (표Ⅲ-11참조).

<표Ⅲ-1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 행정체계 연계방안
(단위: 명, %)

구분	응답	빈도	%
중앙차원의 연계·협력체제구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간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청소년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성	매우 필요하지 않다	8	.8
	필요하지 않다	49	4.9
	그저 그렇다	251	25.4
	필요하다	374	37.8
	매우 필요하다	308	31.1
	Total	990	100.0
지방차원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의 청소년관련부서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간의 연계·협력회의 기구설치에 대한 필요성	매우 필요하지 않다	7	.7
	필요하지 않다	38	3.9
	그저 그렇다	185	18.7
	필요하다	389	39.4
	매우 필요하다	368	37.3
	Total	987	100.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사례인 ‘학교봉사활동’ 외에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위해 다른 청소년활동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가 83.2%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반대한다는 의견도 16.8%로 나타났다. (표Ⅲ-12참조).

<표Ⅲ-1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사례인 ‘학교봉사활동’의
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위해 다른 청소년활동들에도 확대 적용

(단위: 명, %)

구 분	빈도	%
찬성한다	811	83.2
반대한다	164	16.8
계	975	100.0

청소년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으로는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이 27.3%, 방과 후 동아리자치활동(생활권)이 27.0%,로 높게나왔으며, 가족단위 청소년활동이 16.8%, 청소년취업 및 진로활동이 8.7%, 방과 후 청소년 단체활동(자연권)이 8.1%,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에 의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생활권), 가족단위 청소년활동, 방과 후 청소년 단체활동(자연권), 청소년취업 및 진로활동,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자연권),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과 방과 후 동아리자치활동(생활권)을 가장 먼저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서 연계·협력 활동은 자연권 보다는 생활권 시설에서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과 동아리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Ⅲ-13참조).

<표Ⅲ-13> 청소년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 적용 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

(단위: 명, %)

구 분	빈도	%	순위
가족단위청소년활동	138	16.8	3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	225	27.3	1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자연권)	92	11.2	4
방과 후 동아리자치활동(생활권)	222	27.0	2
방과 후 동아리자치활동(자연권)	67	8.1	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41	5.0	7
청소년취업 및 진로활동	72	8.7	5

청소년정책 제도 중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 대해서는 40.5%가 잘 모른다고 나타났으며, 31.0%가 대충 안다, 15.4%가 잘 안다, 10.3%가 전혀 모른다, 2.9%가 매우 잘 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50.8%, 알고 있다가 49.2%로 나타나 연계·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수련프로그램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알 수가 있다. (표Ⅲ-14참조).

<표Ⅲ-14> 청소년정책 제도 중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
전혀 모른다	102	10.3
잘 모른다	401	40.5
대충 안다	307	31.0
잘 안다	152	15.3
매우 잘 안다	29	2.9
계	991	100.0

4)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에 대한 교차분석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집단 간 빈도분포 차이를 보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72.2%, 교사 57.1%,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55.8%, 청소년지도자 50.4%가 주무부처 간의 인식 및 노력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네 집단 모두가 주무부처 간의 인식 및 노력부족을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으로 교사만 법 제도의 취약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세 집단은 모두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부족을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제시한 것을 알 수 가 있다.

따라서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와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 법제도의 취약에 대한 개선방안이 가장 시급함을 보여준다. (표Ⅲ-15참조).

<표Ⅲ-1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단위 :%)

구 분	청소년 정책관련 공무원	학교교육 정책관련 공무원	교 사	청소년 지도자	계
법·제도의 취약	16.7	8.9	17.1	13.8	15.5 (N=144)
주무부처 간의 인식 및 노력 부족	55.8	72.2	57.1	50.4	56.8 (N=529)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및 노력부족	4.2	4.4	7.8	5.4	6.4 (N=60)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 부족	18.3	8.9	9.3	23.7	13.9 (N=129)
일선 현장 담당자의 인식 및 노력부족	5.0	5.6	8.7	6.7	7.4 (N=69)
계	100	100	100	100	100 (N=931)

$\chi^2=47.731$, $df=12$, $P<.00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에 대한 집단 간 교차분석을 보면,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57.9%,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53.5%, 청소년지도자 48.2%, 교사 35.1%가 행정체계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가 행정체계와 법·제도를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응답한데 비하여,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는 행정체계와 프로그램을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응답함으로써 행정체계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계자들은 법제도의 어려움을 학교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경향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네 집단 모두 행정체계와 법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협력의 실행을 인적자원, 시설보다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III-16참조)

<표III-16>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 (단위 :%)

구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 지도자	계
법.제도	20.6	14.9	14.3	23.5	17.3 (N=168)
행정체계	57.9	53.5	35.1	48.2	43.0 (N=418)
인적자원	8.7	7.9	13.1	8.0	10.8 (N=105)
시설 등 물적자원	4.8	8.9	18.3	8.0	13.2 (N=128)
프로그램	7.9	14.9	19.3	12.4	15.7 (N=1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972)

$\chi^2=66.367$, $df=12$, $P<.00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에 대한 집단 간 빈도분포 실태를 보면, 교사37.2%,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36.4%,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34.1%, 청소년지도자33.2%가 체험활동을 꼽았다.

특히 교사집단이 체험학습과 특히 특별활동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세 집단이 모두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라고 응답하였다. (표Ⅲ-17참조).

<표 Ⅲ-1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
(단위 :%)

구 분	청소년정책 관련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공무원	교사	청소년 지도자	계
체험학습	34.1	36.4	37.2	33.2	35.8 (N=346)
재량활동	12.7	6.1	12.8	14.6	12.5 (N=121)
특별활동	11.1	13.1	19.8	15.5	17.0 (N=164)
가족단위 청소년활동	11.1	15.2	13.2	8.8	12.1 (N=117)
수련활동	31.0	29.3	17.1	27.9	22.6 (N=2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967)

$\chi^2=29.984$, $df=12$, $P<.001$

중앙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청소년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 구성운영에 대한 교차표를 통한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 실태를 보면,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43.7% 청소년지도자41.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사 40.6%와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37.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앙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청소년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 구성운영

에 대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에 대한 청소년관계자들이 교육관계자들보다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Ⅲ-18참조).

<표 Ⅲ-18> 중앙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청소년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 구성운영

(단위 :%)

구 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 지도자	계
매우 필요 하지 않다	.8	2.0	.6	.4	.7 (N=7)
필요하지 않다	9.5	8.9	4.3	2.2	4.9 (N=48)
그저 그렇다	22.2	28.7	28.6	16.7	25.0 (N=243)
필요하다	23.8	37.6	40.6	39.2	37.8 (N=367)
매우 필요하다	43.7	22.8	25.9	41.4	31.5 (N=3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971)

지방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시·도의 청소년 관련부서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간의 연계·협력회의 기구설치에 대한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를 보면, 청소년지도자 51.3%,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45.6%가 매우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사 42.8%,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41.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방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에 대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청소년관계자들이 교육관계자들보다 지방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Ⅲ-19참조).

<표III-19> 지방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시·도의 청소년 관련부서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간의 연계·협력회의 기구설치

(단위 :%)

구 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 지도자	계
매우 필요 하지 않다	2.4	1.0	.4	.0	.6 (N=6)
필요 하지 않다	4.0	5.0	4.7	.9	3.7 (N=36)
그저 그렇다	18.4	22.8	20.9	11.9	18.7 (N=181)
필요하다	29.6	41.6	42.8	35.8	39.4 (N=381)
매우 필요하다	45.6	29.7	31.2	51.3	37.6 (N=3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968)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외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청소년활동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교차표를 통한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를 보면, 청소년지도사 93.3%,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86.4%, 교사 80.2%,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78.4% 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표 III-2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외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청소년활동도 확대 적용하는 것

(단위 :%)

구 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 지도자	계
찬성한다	86.4	78.4	80.2	93.3	83.9 (N=802)
반대한다	13.6	21.6	19.8	6.7	16.1 (N=1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956)

특히 위의 <표Ⅲ-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외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청소년활동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청소년정책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Ⅲ-21>에서 청소년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 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에 대한 집단 간 빈도분포의 실태를 보면, 청소년지도자 38.6%가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생활권),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38.0%가 방과 후 청소년 단체활동(생활권),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28.7%가 각각 방과 후 청소년 단체활동(생활권)과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생활권), 교사 22.5%가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생활권)으로 응답하였다.

<표Ⅲ-21> 청소년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

(단위 :%)

구 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 지도자	계
가족단위 청소년활동	23.1	21.5	16.3	13.3	17.0 (N=138)
방과 후 청소년 단체활동(생활권)	28.7	38.0	22.1	33.3	27.4 (N=223)
방과 후 청소년 단체활동(자연권)	9.3	8.9	12.9	8.6	10.9 (N=89)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생활권)	28.7	16.5	22.5	38.6	26.9 (N=219)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자연권)	4.6	7.6	11.5	3.8	8.2% (N=67)
국제청소년교류활동	1.9	2.5	7.0	3.8	5.0 (N=41)
청소년 취업 및 진로활동	7.4	6.3	10.6	6.7	8.7 (N=71)

특히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은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을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와 청소년지도자는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생활권)을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권보다는 생활권의 방과 후 청소년 단체활동과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집단 간 빈도분포를 보면, 교사54.1%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42.9%가 대충 안다,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41.6%가 잘 모른다, 청소년지도자 40.5%가 대충 안다로 답했다.

특히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의 응답에서 많았으며, 이에 비해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응답은 대충 안다는 응답이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네 집단 모두 낮았으며,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22참조).

<표Ⅲ-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 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 지도자	계
전혀 모른다	1.6	18.8	14.5	1.8	10.3 (N=100)
잘 모른다	23.0	41.6	54.1	18.1	40.3 (N=392)
대충 안다	42.9	29.7	24.1	40.5	31.0 (N=301)
잘 안다	26.2	8.9	6.4	33.0	15.4 (N=150)
매우 잘 안다	6.3	1.0	1.0	6.6	3.0 (N=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972)

5) 소 결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3.0%, 여성이 47.0%이고, 조사대상 지역은 16개 광역시·도로서 서울시가 13%,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의 5-8% 이내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16개 광역시·도 별로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청소년지도자는 소규모 문화의집이나 자연권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학교연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서울은 40여명-7여명의 청소년지도자가 근무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방은 10여명-1명에서 2명의 청소년지도자만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편파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각 시도별로 한 기관 당 최고 7명 이하에서 최저 1명까지로 조사하였다. 교사는 16개 광역시별로 7명씩 조사하였다.

따라서 총 1,066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최종 회수하여 분석한 설문지는 1,003부(회수율 94%)로서 현 직무종류의 문항에 응답한 조사대상은 교사 519명, 청소년지도자 227명,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6명,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직무종류별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한 인지도 차이 검증

직무종류별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인지도에 대한 F검증과 Scheffe 검증에서 분석된 결과를 보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 청소년지도자 네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인지도에 있어서 집단 간에 차이가 없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차이가 집단별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볼 때 현재 연계·협력이 어려운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청소년정책보다는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지도를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가 잘 모른다는 대충 안다는 응답을 나타냄으로서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교사 집단의 인식을 적극 고양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정책관련 공무원의 인지도가 잘 모른다는 대충 안다는 높은 응답을 나타냄으로서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정책관련 공무원 집단의 인식을 적극 고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정책관련 공무원 집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반하여,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의 응답의 평균은 2.90으로서 그저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함으로써 현재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정책관련 공무원 집단이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청소년정책의 법·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학교교육정책의 법·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는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집단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청소년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 두 집단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과 적극적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정도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이 교사와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보다 연계·협력의 어려움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네 집단이 공통된 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지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에 대한 빈도분석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주무부처간의 인식 및 노력부족이 56.0%로 두드러지게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법·제도의 취약으로가 15.5%,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부족이 14.3%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주무부처간의 인식 및 노력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한 것은 이미 앞서 검증된 집단 간 인식 차이와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행정체계가 42.6%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는 체험활동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 행정체계 연계방안으로 중앙차원의 연계·협력체제(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구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68.9%로 조사되었다. 지방차원의 연계·협력체제(시·도의 청소년관련부서와 시·도교육청)구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은 76.7%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앙차원(68.9%)보다는 지방차원(76.7%)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지도가 7.8% 더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사례인 ‘학교봉사활동’ 외에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위해 다른 청소년활동들에도 확

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가 83.2%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반대한다는 의견도 16.8%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으로는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이 27.3% 방과 후 동아리자치활동(생활권)이 27.0%로 높게 나왔으며, 이와 같이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과 방과 후 동아리자치활동(생활권)을 가장 먼저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서 연계·협력 활동은 자연권 보다는 생활권 시설에서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과 동아리자치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50.8%, 알고 있다가 49.2%로 나타나 연계·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수련프로그램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알 수가 있다.

(4)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에 대한 교차분석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를 보면, 네 집단 모두가 주무부처 간의 인식 및 노력 부족을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원인으로서 교사만 법 제도의 취약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세 집단은 모두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부족을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와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 법제도의 취약에 대한 개선방안이 가장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에 대한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를 보면, 특히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가 행정체계와 법·제도를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는 행정체계와 프로그램을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

야라고 응답함으로써 청소년관계자들은 법제도의 어려움을, 학교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네 집단 모두 행정체계와 법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협력의 실행을 인적자원, 시설보다 시급하게 생각함을 알 수가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에 대해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 실태를 보면, 특히 교사집단이 체험학습과 특히 특별활동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세 집단이 모두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라고 응답하였다.

중앙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청소년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 구성운영에 대해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를 보면, 중앙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청소년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 구성 운영에 대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에 대한 청소년관계자들이 교육관계자들보다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지방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시·도의 청소년 관련부서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간의 연계·협력회의 기구설치에 대한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 실태를 보면, 지방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에 대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를 보면 청소년관계자들이 교육관계자들보다 지방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외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청소년활동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를 보면, 특히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교사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외

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청소년활동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청소년정책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년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에 대한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 실태를 보면, 특히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은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을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와 청소년지도자는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생활권)을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권보다는 생활권의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과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집단 간 인지도의 빈도분포 실태를 보면, 특히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의 응답에서 많았으며, 이에 비해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의 응답은 대충 안다는 응답이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네 집단 모두 낮았으며,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분석된 내용과 같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실태분석과 인지도에 대한 차이 검증은 통하여,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 네 집단이 공통된 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지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 집단이 상호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여 서로의 공통된 문제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평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평가는 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평가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양 정책의 효율적인 실천이 가능하고, 나아가 그 정책 효과도 더욱 고양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평가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연계·협력의 정도와 내용이 양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에 영향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평가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말하는데 먼저 법적·행정적 연계·협력, 인적·물적 연계·협력, 기술적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연계·협력 등이 그것이다.

법적·행정적 연계·협력이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이 상호 연계·협력을 할 수 있도록 혹은 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령들을 의미하고 또는 그러한 법령 운영을 위한 양 정책 관장 행정부서들 간의 협력체 혹은 구조체의 행정 제도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적 연계·협력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개발-결정-집행-평가하는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이나 이들의 행위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 간의 상호 교류 및 연계·협력을 의미하고, 물적 연계·협력이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관 시설과 설비간의 상호 공동 활용을 의미 한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중 기술적 혹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연계·협력이란 양 정책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개발과 그 운영에서의 교류 협력을 의미한다.

1) 법적·행정적 연계·협력 평가

국가 수준의 청소년정책은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으며 동위원회는 각종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소관 법령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신상공개사건심의위원회운영규정」,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청소년위원회비영리법인설립규칙」, 「청소년위원회직제」, 「청소년위원회직제시행규칙」 등 약 20여종의 법령들이 그것이다. 이들 법령 중 직접적으로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협력을 규정한 법령은 「청소년기본법」이다.

동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를 보면 제①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에는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부과하고 있고, 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는 “①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③협의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청소년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을 모아 협의회를 두어 청소년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시행

령 제3조를 보면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도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에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역시 학교교육정책을 직접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수준에서의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에 의하면 “①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 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적체계는 적어도 청소년정책을 학교교육정책과 상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행정적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는 양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행정해위를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규정해 놓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조항이 실제 행정기관 간에 잘 운영되고 있느냐가 문제일 뿐이나 이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운영이 그리 활발하지 않아 법령에 규정된 만큼 행정적으로는 연계·협력 행위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소년정책을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의 행정부 내 위상이 위원회 형식의 행정기구가 갖는 한계 때문에 실제 자신들의 소관 법령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권한 행사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 청소년정책에 협력하게 되어 있는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들의 소극적 인식이나 태도가 청

소년정책을 매우 비 활성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기관간의 연계·협력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예컨대 본 연구 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졌듯이 학교교육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들은 약 5점 만점에 약 2.7점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청소년정책에 대해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약 2.9점으로 나타나 그 인식정도가 모두 그리 높지 않음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들은 학교교육정책 관련법이나 제도들에 대해 어느 정도나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 2.5점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들은 청소년 정책의 관련 법 혹은 제도들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약 2.9점으로 나타나 역시 그리 높지 않은 인식도를 보인 것 역시 이들 양 정책이 행정적으로 연계·협력이 비활성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적으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이 잘 연계·협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양측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평가로 보인다. 본 연구 조사서도,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도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즉 청소년관련 공무원들은 5점 만점에 현재의 연계·협력 정도를 약 2.4점으로 평가하였으며, 학교교육정책 공무원들은 2.9로 평가하여 역시 3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음도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2) 인적·물적 연계·협력

청소년위원회에는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13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모두 514명의 공무원이 있다. 이들 양 기관

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별도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서로 연계·협력하도록 실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청소년 정책과 협력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국 소속의 초·중등교육정책과에 담당 공무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위원회 공무원과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서로 회의를 운영하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인적 교류나 협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수준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에는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청에는 지방 수준의 청소년정책만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 수준의 조직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수준에서는 지방 청소년정책은 대부분 여성이나 보육, 아동, 가족들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청소년정책은 행정 제1부시장 밑에 위치한 ‘여성가족정책관’의 담당 업무로 동정책관은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가족 등의 지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정책관 밑에 3명의 과장급의 담당관이 있는데 이들 중 하나가 청소년담당관으로서 약 20여명의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중 지방교육청의 해당 공무원들과의 인적 교류 협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거의 밝혀지고 있지 못하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들은 모두 0000명이나, 이들이 학교교육에서의 교원들과의 교류 협력을 어느 정도나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으나 일부 청소년지도 혹은 육성단체에서 개별 학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의 인적 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나마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에는 별도의 상담전문교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학교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방의 학교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연계·협력하는 전담 조직은 없으며, 다만 중등교육과과 평생교육체육과 등의 소속 공무원들 중 1-2명의 공무원이 청소년정책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대해 부분적으로 회의 혹은 협의를 진행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중앙이나 지방 모두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정책 수행 기관과의 인적 교류 협력을 운영하는 기구나 프로그램은 없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혹은 지역교육청에 청소년 정책과 연관되어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그 만큼 인적 교류 협력행위를 창출해 내기는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된다.

한편 물적 연계·협력 수준을 평가해 보면 현재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소년시설의 종류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보호시설”)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가장 유용한 시설은 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로써 ①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②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③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④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⑤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⑥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

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등이 있다. 이들 시설들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시설들이다.

한편 교육당국은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 이외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학생수련원, 수영장, 도서관 등 다양한 학생교육 및 지도 시설들과 교원연수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에 약 167개의 시설, 지역교육청에 200여개의 시설들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시설과 학교시설 및 교육청 운영시설들 간의 연계·협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으나, 이들 시설 중 특히 학교 및 교육청 관장 운영 시설들은 청소년시설보다는 개방성이 약하여, 청소년시설의 학생 이용은 많으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 및 각종 교육청 보유 시설 활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학교시설이나 교육청 시설들의 개방성이 그리 크지 못한 것은 교육시설관리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나아가 시설 관리예산이 그리 풍부히 책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된 학생의 교육용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시설 대여활동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3)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계·협력

청소년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학교교육정책 측면에서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다. 재량활동, 특별활동, 직업활동, 체력 및 레저활동, 봉사활동, 수련활동, 문화체육활동, 동아리활동, 폭력 예방활동들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학교와 상호 연계·협력하여 이들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거나 청소년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교교육에 활용하는 예는 빈번하다.

예컨대 청소년정책 담당 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으로서 지역 내 초중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강사의

강좌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청소년 기관이 주관이 되어 학교폭력 업서 신고상담제 일환으로 학교에 업서함을 설치하여 폭력문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청소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처리 한다든지,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이나 교칙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교육과 지도에 대한 위탁 교육을 받고, 일정한 교육 및 상담과정으로 스트레스대처훈련, 자아발견, 심성훈련, 봉사활동, 심리검사, 개인상담, 가족 상담을 하는 것도 학교와 청소년 기관의 협동과 노력의 결과이다.

'난나'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연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연계 특기적성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영상제작반, 수영반, 검도반, 농구반, 암벽등반, 헬스반, 밴드만들기, 풍물교실, 창작그리기반, 연극반으로 10개의 프로그램이 영상, 체육, 음악, 문화예술 영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한편 학생봉사활동 면에서의 양 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은 여러 사례들 중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학생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립·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봉사 대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취지, 실시 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교장 및 봉사활동 담당교사에 대하여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의의 및 취지, 실시 요령 등을 제대로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러한 봉사활동을 청소년정책과 협력하여 봉사활동 유관기관의 네트워크와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각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전용배너를 설치하고, 이를 서로 링크하여 별도의 검색절차를 거치지 않고 봉사활동 영역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한국청소년 자원봉사센터,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의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하여 봉사활동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학생활동 혹은 청소년 활동으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 혹은 운영하는 모습들은 양 정책의 연계·협력이 매우 필요하고 다양한 성과를 산출해 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보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간의 연계·협력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장 잘 협력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연계·협력은 청소년정책 쪽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아직도 학교교육정책 쪽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가 많아, 여전히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협력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총괄 평가

결국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간의 연계·협력 수준은 법적으로는 잘 구비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적 규정이 제대로 행정 실제에서는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서로 연계·협력하면 보다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부분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 정책의 담당 고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서로 인적 교류 및 협력은 매우 미약하고, 나아가 청소년 시설과 학교교육용 시설의 상호 공동 활용 및 공동 운영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용 및 학생용 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하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예는 있어도 학생용 프로그램을 청소년 단체나 연수 혹은 지도기관이 활용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 정책 간의 일부 연계·협력 우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성공 사례들은 대부분 청소년 관련 기관 혹은 단체들과 각 급 학교 간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맺어지는 연계·협력이고, 그것도 대부분 청소년 정책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즉 중앙정부 수준에서 혹은 지방 정부 수준에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공식적인 연계·협력 활동은 거의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상호 연계·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최대 원인은 양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 간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상호 인식 부족과 협력을 위한 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 조사에서도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의 약 55.8%,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약 72.2%는 주무부처간의 인식 및 노력 부족이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최대 원인으로 반응하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간의 연계·협력은 이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먼저 준비 상태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정책 추진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청소년 관련 기관과 공무원에 협력하느냐에 연계·협력 체제 구축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 · 협력사례

1. 국내의 연계 · 협력 사례
2. 외국의 연계 · 협력 사례
3. 연계 · 협력 모범사례 : 청소년봉사활동

IV. 국내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 사례

1. 국내의 연계·협력 사례

본 사례조사의 목적은 국내의 연계·협력 사례로서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통하여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과의 연계활동 중심으로 재량활동, 특별활동, 직업연계활동, 체력 및 레저활동, 봉사활동, 수련활동, 문화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질적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조사 내용으로는 연계·협력 활동 프로그램명, 활동내용과 단체명을 제시하고 연계·협력에서의 문제점, 성공요인,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계·협력 영역을 네 가지 측면인 인력 연계·협력측면, 시설 연계·협력 측면, 프로그램 연계·협력측면, 정책결정 공무원 행정연계 체계 구조 측면에서 종합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의 선정절차와 방법으로는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속성을 가진 조사대상 선정에 위하여 적절한 표집절차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선정방법은 전문가 자문과 인터넷 및 언론, 문헌조사에 의한 유명한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과 전형적 사례선택(typical case selection)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자료, 연계·협력실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 면담, E-mail, 전화, 현장방문방법을 사용하였다.

1) 특기적성 지역·학교연계 프로그램²¹⁾

(1) 학교 연계 계발활동(CA) 프로그램 내용

○ 계발활동 프로그램 개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발활동을 통한 전문적 지식 습득 및 교과 과정 외 학습으로 취미활동의 영역확대 ○ 취미 및 특기와 계발신장 ○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협동심과 질서의식 함양
운영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선호하는 강좌 운영 ○ 강사과건영역의 확대 ○ 주 5일제 수업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학년도 학기부터 월 토요 3주 운영 시행 - 전체 전일제운영 및 인원증대 - 관내 중고등학교 방침에 따른 유동적 대책 마련 - 강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수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일시 : 2005. 3월~ 12월 학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주 토요일(09:00 ~ 13:00) ○ 교육장소 : 청소년수련관(문화복지사업소 포함), 과건학교 교실 ○ 교육대상 : 청소년 5,200명(학교 12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관 : 2,720명(4개교 - 전일제 수업 유도) - 과 건 : 2,960명(8개교 - 전년 대비 3개교 증) ○ 프로그램 : 20개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별 적정 인원 배치로 원활한 수업 유도 ○ 강 사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사 : 20,000원/시간당(보조강사 : 12,000원/시간당) - 수련관 전임강사 : 10,000원/시간당 - 상담(자원봉사) : 10,000원/시간당 ○ 수 강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프로그램 5,000원 (영화 감상반 2,500원, 강사과건 4,000원, 또래상담 무료)

21) 안양청소년수련관(2005). 학교연계프로그램.

http://www.ayc.or.kr/special/special_main.ht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주차 전일제 4시간 월 4회 실시 -과건 확대(학교 및 인원, 프로그램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주차 과건학교 주당 2개교로 강사 배정 -2005학년도 주 5일제 수업대비 학교별 토요 3주 운영에 따라 학교와의 협의 후 교육방법 변경가능 ○ 강사가 직접 출석 점검, 교육일지 작성 및 평가서 작성 ○ 수강인원이 30명 이상일시 강사의 요청에 의해 보조강사 채용 ○ 강사 및 각 층에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계발활동 학생들의 이탈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구 흡연, 중도 이탈학생 통제 ○ 계발활동 기자재의 정비 및 구입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안구 중·고등학교 방문 홍보 및 프로그램지 전달 ○ 만안구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홍보지 우편발송 ○ 수련관 홈페이지에 게재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학교들과의 연계성 확보 ○ 관내 청소년들에게 수련관의 홍보효과 및 시설사용의 증대
행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도중 학생 이탈(흡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전·후 2회 출석 체크 -층별 담당직원 배치, 수시 점검 ○ 강사관리 : 매주 계발활동 운영 하루 전 전화확인으로 수업시간, 학교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통보·협의(수업진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 ○ 쉬는 시간을 동일하게 공지하여 타 수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 강의실 관리 - 수업 후 담당강사가 간단한 청소지도 ○ 학교별 담당교사와 관리 확인 - 출석 관리 등의 학생지도 ○ 수련사업팀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학년도 계발활동 금요일 운영가능 여부 정규강좌 검토 ○ 문화복지사업소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강의실 부족으로 강의실 사용 협조

○ 개발활동 프로그램 유형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단위 : 명, 원)

강좌명	정원	수강료	강의실	필요장비	비고
라켓볼	20	5,000	라켓볼장	라켓,라켓공,고글	
힙합댄스	30	5,000	댄싱룸		
농구	50	5,000	다목적체육관	농구공	
볼링	40	5,000	볼링장	볼링공,볼링화	
스포츠맛사지	30	5,000	미술실	매트	
댄스스포츠	30	5,000	B1 연주실		
영화감상	150	2,500	문예극장		
영상촬영	20	5,000	스튜디오	캠코더	
풍물	30	5,000	4층 공연연습실		
종이공예	30	5,000	एको실		재료비 별도
만화캐릭터	30	5,000	과학실		
인터넷	20	5,000	컴퓨터실		
또래상담	10	무료	상담실		
중국어	30	5,000	(미정) 문화복지사업소		
일본어	30	5,000	어학실		
NIE	30	5,000	(미정) 문화복지사업소		
환경반	20	5,000	(미정) 문화복지사업소		(신설)
논술반	20	5,000	2층 창작교실		(신설)
단소반	30	5,000	(미정) 문화복지사업소	단소 및 교재	구입비 별도(신설)
스타일리스트	30	5,000	(미정) 문화복지사업소		(신설)
20개 강좌	680명		20개실		
※ 모집 미비시 프로그램 조정 가능 교육실 부족시 파견 강좌로 이동 가능					

강사파견 프로그램

(단위 : 명, 원)

강좌명	정원	수강료	강의실	필요장비	비고
광고제작	30	4,000	참여학교 강의실		
종이공예	30	4,000			재료비 별도
요 가	25	4,000		매트	
합 기 도	25	4,000		운동복	
스포츠마사지	25	4,000		매트	
짜즈댄스	25	4,000			
일 본 어	30	4,000			
중 국 어	30	4,000			
NIE	30	4,000			
단소반	30	4,000		단소 및 교재	단소,교재 구입비별도 (신설)
풍물반	30	4,000		풍물장비 일체	학교장비 사용(신설)
스타일리스트	30	4,000			(신설)
논술반	30	4,000			(신설)
13개 강좌	280명		13개실		
※ 모집 미비 시 프로그램 조정 가능					

(2) 학교연계 체험학습(재량활동)내용 개요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을 반영한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여 직접적인 체험활동 및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 안양지역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및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애향심·공동체의식 고취 ○ 체험학습을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p>운영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3월~12월(목, 금 오전 또는 오후, 토요일 오전) ○ 대상 : 안양지역 중·고등학교 ○ 인원 : 중·고등학교 7,800여명(6개교×1,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프로그램에 1~2학급(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조정) - 학교 학년단위로 운영 ○ 신청방법 : 학기 초 학교별 학년단위로 신청 ○ 회비 : 사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 연계 프로그램 : 무료 - 지역 외 프로그램 : 참가비 50,000원(강사료로 지급) - 교통비 : 참가자 부담(대중교통 이용) - 학습일 1일전까지 회비 입금→사후 강사료 입금 ○ 소요예산 : 참가자 부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예산과목 : 운영관리, 사업비, 특강 - 지출예산과목 : 운영관리, 사업비, 강사수당
<p>운영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제 수업 대비 토요 휴무제 및 시수 변화에 따른 운영일수 및 프로그램 유동적 대처 ○ 청소년의 흥미, 관심, 특기를 고려한 영역과 내용을 설정 ○ 지식정보 및 사회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범 교과 학습 ○ 학교실정과 지역사회 실태 및 특수성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산업기관 연계 구축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 환경·문화·역사 체험 ○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구분 및 운영 - 방문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기관 위촉 및 고정화 ○ 학교 측과 사전협의 및 의견반영 ○ 학교별 체험학습의 날 운영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분야별 다양한 주제로 흥미로운 학습내용 구성 ○ 장르별 전문 강사 활용(전문 강사진 확보 단체와 연계 운영) ○ 참가자 평가기록 : 체험학습 소감 및 사진 제출 ○ 프로그램 사후 평가 실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내용 :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관내·외 기관 및 대학 등 기타 기관 토요일 운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지역 기관탐방활동 : 현장체험 및 사회생활 이해 - 환경체험활동 : 관내 생태학습(숲, 하천) - 문화답사활동 : 안양, 서울, 수원등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이해 - 진로탐색활동 : 대학탐방, 직업체험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은 수익사업이 아닌 관계로 참가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 수입=지출(간담회 비용은 수련관에서 지원한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련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 학교 연계사업의 탄력적인 운영계기 마련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추진으로 청소년 애향심 고취 ○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부각 ○ 주 5일제에 대비한 프로그램 연계기반 마련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현장학습 : 기관별 사전 협의(공문발송, 프로그램 협의) ○ 주 5일 근무제의 확대로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체험학습 축소 ○ 학습 당일 담당자 배치 : 프로그램 진행 ○ 인솔요원 배치 : 실습생, 자원봉사자 지원 체제 구축 및 배치 요망
진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시간 : 토요일 오전, 평일 오전 또는 오후 ○ 강 사 : 1학급당 1인 (단체특강 제외) ○ 인 솔 자 : 담당교사, 수련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문화역사해설사

○ 체험학습 세부프로그램

체험학습 세부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명	내용
환경 체험 (10개)	안양천 탐사와 봉사활동	도시하천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우리지역의 안양천의 생태현황과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실태를 학습하고, 청소년들이 실천 가능한 활동 전개
	환경과 물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별 학습, 수돗물 정수과정 견학을 통해 물 절약의 중요성 및 환경보전 의식함양 ▶협력기관 : 안양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
	물의 중요성과 절약	하수종말처리과정 견학을 통해 물절약 실천의식과 생명의 물로서의 중요성 인식 ▶협력기관 : 안양시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환경과 폐기물	우리가 버린 쓰레기의 소각과정을 살펴보고 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의 필요성 인식 ▶협력기관 : 안양시건설사업소(청소사업소)
	물자 절약과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과정의 견학을 통해 물자절약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협력기관 : 안양시건설사업소(재활용박물관)
	나무생태 학습	안양시의 공원이나 숲에서 나무의 생태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필요성 인식
	환경기업 탐방	유리병을 재활용하는 환경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자원재활용 실천의식 제고 ▶협력기관 : (주)두산테크텍
	쓰레기와 재활용	폐식용유를 활용해 재생비누 만드는 과정을 학습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자원 재활용하는 습관 유도 ▶협력기관 : 안양시여성과(재생비누가공센터)
	환경영화 감상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환경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실천 방안 모색
	자연사 박물관	동물, 식물, 광물, 암석 등 57,000여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국제보호조, 특산종 등의 표본 견학으로 지구 생명변천의 역사 학습 ▶협력기관 : 이화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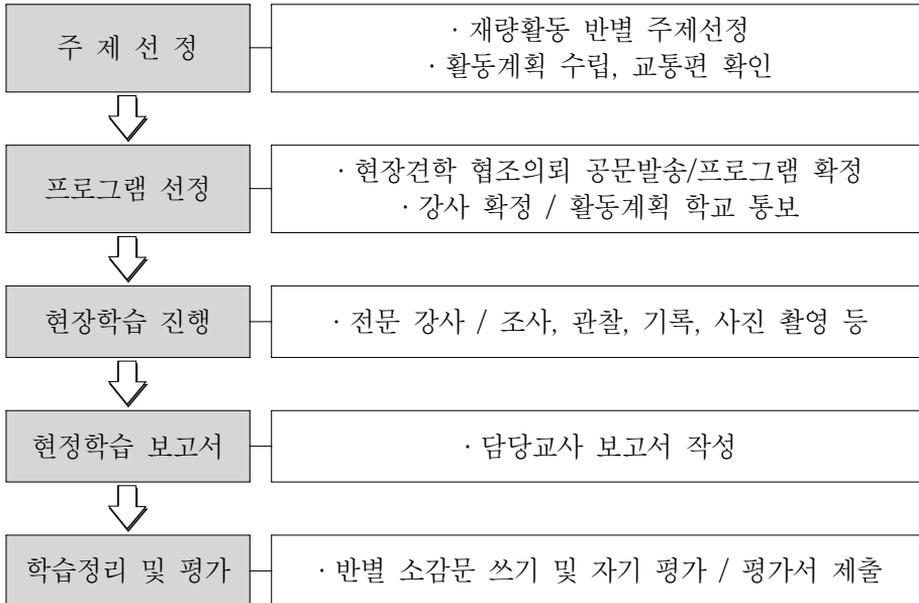
공공 기관 탐방 (5개)	민주시민 의 역할 (안양시의 회 탐방)	안양시의회의 방청 및 시설견학을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인식 ▶협력기관 : 안양시의회
	구청 탐방	내 고장의 행정단위 이해, 내가 사는 구의 기능과 역할을 알고 지역사회의 기능 학습 ▶협력기관 : 동안·만안구청
	동사무소 탐방	우리동의 살림살이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제공 ▶협력기관 : 각 동사무소
	국회 견학	민주정치의 핵심부인 국회 탐방으로 역사인식 (도서관, 헌정기념관, 국회본관) ▶협력기관 : 국회
	청와대 관람	경복궁의 후원이었던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집무와 외교가 이루어진 역사현장 관람 ▶협력기관 : 청와대

○ 학년별 대상 프로그램

학년별 대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영역	활동인원	비고
1학년	관내 지역 프로그램 중심 운영 -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활용	500명	· 기관 사정 및 학교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2학년	문화역사체험 중심 운영 (관외지역 위주) - 문화 역사	500명	
3학년	직업, 진로탐색등 중심 운영 (관외지역 위주) - 진로탐색, 기관 방문	500명	

○ 활동절차



○ 세부 추진 계획

일 정	추진 내용	비고
2월	○ 운영계획(안) 작성 ○ 학교 홍보 및 프로그램별 일정 확인/답사 ○ 참가학교 선정	
3월	○ 학교 홍보/담당교사 간담회 ○ 프로그램별 일정 확인/답사 ○ 체험학습 운영 시작	
4~6월	○ 체험학습 관련기관 담당자 간담회	
7월	○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평가, 결산 ○ 하반기 운영계획 작성	
8~12월	○ 담당교사 협의 및 프로그램별 일정 확인/답사 ○ 일정 및 프로그램 확정 ○ 체험학습 운영	
12월	○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평가, 결산 ○ 2004년 사업운영 평가 및 결산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2005학년도 학사일정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된다면 지역·학교 연계활동이 토요 4주 운영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2005학년도 학사 일정이 학교재량이 아닌 일괄적으로 토요 4주차 휴무를 한다면 지역학교 연계활동이 4주차 금요일 운영체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금요일 정규강좌의 시간변경과 손익부분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하여 계발활동 운영 대책 방향을 모색하되 금요일 운영시 정규강좌와 CA활동 간에 수익성 및 발전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수련활동인증시스템 확보방안과 그에 맞는 운영관리 방법 등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대안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성공요인

첫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성공한 이유는 청소년을 둘러싼 주체들로서 학부모, 교사, 공공기관, 시설, 교육청 등이 유기적인 협력하에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둘째, 활동장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체제가 잘 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 장소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내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공무원과도 협조체제가 있었다.

셋째, 청소년들이 가까운데서 프로그램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함께 공유한 것이다.

넷째, 여러 분야의 역할들이 잘 조화되어 성공될 수 있었다. 청소년수련관은 학교연계사업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청소년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이 학교의 협력 하에 잘 운영되었다. 수련관과 학교가 함께 청소년활동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매우 유익을 주었다.

다섯째, 대국민 홍보와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의 개념을 가짐으로써 내 아이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수련관과 학교에서 함께 홍보하고 운영되도록 하였다.

2) 지역·학교 연계 문화예술 활동/외국어학습 프로그램²²⁾

(1)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3월 - 12월(학기 중 실시)
- 사용장소 : 강남청소년수련관내 그룹실 및 참여 학교
- 참여인원 : 연중 대략 10,000명 (2004년 현재 18개 학교 연계)
- 강사인원 : 외래 전문 강사 및 청소년수련관 직원
- 참가비 : 1회 1인 2,000원-5,000원(재료비 포함)

○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 학교연계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명으로는 미디어반, 영화 감상반, 만화반, 연극반, 마임반, 힙합브레이크반, 재즈댄스반, 스포츠댄스반, 민속춤반, 제과제빵반, 요리실습반, 단소반, 하모니카반, 민요반, 풍선아트반, 선물포장반, 종이접기반, 켈트반, 손뜨개반, 테디베어반, 한지공예반, 염색반, 수채화반, 연필소묘반, 수화반

○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 학교연계를 위한 외국어학습 프로그램명으로는 스크린영어, 영어회화반, 스크린일본어, 중국어 배워보기, 애니메이션 일본어, 청소년 토익토플, 영어성경반, 영어소설반

(2) 시사점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CA활동의 의미는 열린교육차원에서 시작된 중·고교 특별활동의 제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고교

22) 강남청소년수련관(2005). 학교연계 프로그램.

http://www.gangnamyc.or.kr/3_activity/activity61.php

특별활동 지원 사업은 다양한 문화, 예술, 심성활동을 실시하여 문화예술 감상 활동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문화감상활동을 통해 안정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다.

3) 지역·학교연계 특기적성활동 프로그램²³⁾

(1) 특기적성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소개

'난나'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연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참가안내 및 절차

- 실시기간 : 4월부터 ~ (1,2학기 중, 방학 중)
- 실시장소 : 서울특별시립 강북청소년 수련관
- 대상 및 인원 :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
(영상제작반외 9개 프로그램 156명)
- 접수방법 : 공문과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 후 전화로 확인(학교일정과 수련관 일정에 맞춰 신청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전화확인)
- 제출서류 : 특기적성교육실시 일정 계획서 1부, 프로그램별 출석부(연락처 기재요망) 1부.
- 프로그램의 개설은 정원의 80%이상이어야 가능
- 모든 프로그램 수강료는 20시간 기준이며 일정 및 시간 조정은 담당자와 상담 후 일부조정 가능
- 문의 : 학교연계사업 담당자

23)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2005). 학교연계프로그램.

http://www.nanna.seoul.kr/school_con/school.asp

○ 특기적성활동 프로그램 내용

- 학교연계 특기적성활동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영상제작반, 수영반, 검도반, 농구반, 암벽등반, 헬스반, 밴드만들기, 풍물교실, 창작그리기반, 연구반으로 10개의 프로그램이 영상, 체육, 음악, 문화예술 영역으로 구분되어 실시

(2) 성공요인 및 시사점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접수방법, 제출서류, 참여정원, 수강료, 일정조정, 학교연계사업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일정과 수련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사업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명시되었다.

4) 지역·학교연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²⁴⁾

(1) 프로그램 내용

○ 학교폭력 엽서 신고상담

내 용	학교에 엽서함을 설치하여 폭력문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청소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처리함
시 기	3월-12월
대 상	지역 내 중학교
목 적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따돌림을 방지하고 학교생활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의 고민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목 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에서의 관계의 벽을 깨고 지역사회기관에서 학생들의 문제에 좀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여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24) 강남청소년회관의 지역·학교연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신지식청소년육성을 위한 수련활동 모형 및 프로그램 사례 자료집. pp. 140-143 참고.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내용	지역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강사의 강좌를 통한 교육 실시
시기	5월~12월
대상	지역사회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음
목적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자녀지도 방법에 대한 강좌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자녀지도 교육으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자녀들이 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학교에서 폭력으로 고통을 주거나 받는 것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녀지도 방법을 학부모에게 교육, 학부모들이 자녀 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세대 자녀들에게 맞는 바른 교육방법을 주제로 한다. 가정에서의 자녀지도방법과 대화기술을 교육하여 가정에서 폭력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위탁상담

내용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이나 교칙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교육과 지도에 대한 위탁교육을 받고, 일정한 교육 및 상담과정으로 스트레스대처훈련, 자아발견, 심성훈련, 봉사활동, 심리검사, 개인상담, 가족상담을 한다.
시기	3월-12월
대상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실시함
목적	학교 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학생들에게 문제의 원인, 진단, 치료 계획 등을 상담하여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인간을 존중하는 심성을 교육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문제행동을 교정한다.
목표	폭력의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세운다.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과도 상담대상으로 선정하여 변화자로서 함께 동참하게 한다. 사회의 일원으로써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한다.

○ 부모상담자 교육

내용	학부모들에게 상담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한다.
시기	3월-12월
대상	지역사회 내의 중·고등학교 학부모
목적	학부모들에게 상담봉사자로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폭력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다.
목표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유형에 대하여 상담기법을 교육한다. 청소년들이 자기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상담의 전문기법을 교육하여 청소년 상담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내 자녀만을 바라보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문제는 가해자에게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는 문제가 원인이다. 원인과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후속으로 따라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문제가 외부에 노출됨으로 학교가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청소년의 폭력문제가 은폐되고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라도 공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서 그러한 대처방안이 사회나 교육 상부부처에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넷째, 폭력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은 인간의 문제해결을 돕는 기술이며 학문을 기초로 함으로, 상담자의 일정학력과 정신건강이 필요하다.

(3) 효과성 및 시사점

첫째, 부모들에게 학교 폭력문제에 대한 가정에서의 지도방법을 교육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의 해결을 돕는다.

셋째,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미래를 계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통하여 폭력과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행동치료와 인지지도로 폭력행동을 교정한다.

넷째, 청소년 폭력예방과 학부모들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며 사회와 가정에 유익이 된다.

5) 연계·협력의 영역별 분석

연계·협력 영역을 네 가지 측면인 인력 연계·협력측면, 시설 연계·협력 측면, 프로그램 연계·협력측면, 정책결정 공무원 행정 연계체계 구조 측면에서 종합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정리한 내용은 사례조사한 내용과 문헌자료로서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이민희 외; 2005), ‘한국의 청소년정책 통계’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인적자원정책조정·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 방안 워크숍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의, ‘제3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 (문화관광부; 2004)을 참고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1) 인력 연계·협력측면

첫째, 학부모의 참여와 홍보 필요, 둘째,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를 함께 연계해서 대처, 셋째, 학교 교사 및 학부모,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상담자 양성 필요, 넷째,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부족, 다섯째, 일선 현장 담당자의 인식 및

노력부족, 여섯째, 교원대상 청소년 지도자 육성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필요, 일곱째, 교원과 청소년 지도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사이버 네트워크 운영체제 개발, 여덟째, 교원과 청소년지도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의 개최, 아홉째, 청소년지도자의 학교 순회 강사제 개발을 위해 각종 청소년 육성 정책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자가 직접 학교를 순회하며 지도하는 체제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교사와 청소년지도자 간의 인적자원의 상호교류 협력 활동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시설 연계·협력 측면

첫째, 학교와 지역의 청소년 전문 상담시설과의 연계·협력 필요, 둘째, 학교와 가정 지도와 지역 문제행동 수정하는 행동치료센터와의 연계·협력 필요, 셋째, 지역사회 시설, 청소년시설, 학교시설, 구청 등 공공기관 시설 간의 상호 협력부재, 넷째, 각종 교육시설 및 수련시설의 공동 활용, 다섯째,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시설 공동 활용 계획의 개발’, 여섯째,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된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시설 공동 활용 중개소’ 운영, 일곱째, 시설 공동 활용 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각종 인센티브제 운영, 여덟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각종 교육용 시설을 실비 혹은 무상으로 임대 및 대여해 주는 기관에 대해 각종 행·재정 혜택과 정부지원제공, 아홉째, 시설 공동 활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에 시설 관리비의 지원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으로서 ‘교육시설과 청소년시설 간 시설의 상호 공동 활용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프로그램 연계·협력 측면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지도방법과 학교 내 상담지도 방법과 지역사회 예방 및 사후대처 지도방법 필요,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수

련관, 학교, 공공기관 간의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부재, 셋째, 청소년지도 경험 및 방법의 상호교류 차단, 넷째, 교육청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동개발 추진팀 구성 필요, 다섯째,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공공개발과 공동 활용 필요(예로서, 인성, 민주시민, 경제, 통일, 국토, 안전, 폭력예방, 봉사, 진로탐색 교육 등 프로그램의 집중적인 공동개발), 여섯째, 기존의 활용프로그램을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협력체제 개발이 필요, 일곱째, 개별 대학교와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협력체제 유지가 필요(예로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 개발, 청소년 대상 문화 및 예술 활동의 공동시행)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으로서 ‘각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활용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정책결정 공무원 행정연계 체계 구조 측면

첫째, 해당 부처 간의 협의체나 협력통로 부재, 둘째, 주무부처 간의 인식 및 노력부족, 셋째, 법·제도의 취약,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및 노력부족, 다섯째, 교육정책 담당부처와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간의 의사소통 채널 필요, 여섯째,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간의 연계·협력 필요, 일곱째, 시·도의 청소년관련부서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간의 연계·협력 필요, 여덟째, 지역단위 각급 학교와 청소년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필요, 아홉째, 지방차원의 상호 협력관 파견을 통한 정책협의 및 조정역할 강화가 필요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행정구조가 중앙과 지방과 현장까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한다. 지금까지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이 그 유사성 및 내용적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존하여 왔다. 따라서 교육정책 담당부처와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간의 의사소통채널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행정구조상 연계·협력이 없으면 중복투자를 피할 수 없으므로 정부시책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정책결정 공무원 행정 연계체계 구조 측면에서의 연계·협력이 각 부문별로 다양한 형태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국외의 연계·협력 사례

1) 미국

(1) 미국 After School Activities Partnerships

① 목적 및 목표

After School Activities Partnerships(ASAP)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두 가지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방과 후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s)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일반인들과 기관들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데 있다. 둘째, 필라델피아의 청소년들에게 가용한 방과 후 활동 수를 증가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의거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섯 개의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들에게 가용한 방과 후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체 캠페인(유인물,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벌인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넓힐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들이 새로운 자원들(resources)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준다. 셋째, 자원봉사자들이 방과 후 활동의 리더들이 되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 넷째, 방과 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들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홍보한다. 다섯째, 유인물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파악하고 출판한다.

② 필요성

미국 전국의 경향성은 더욱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일을 하고 그 결과로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 방과 이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 시간과 학교 시간사이의 간격은 주당 20-25시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0대 범죄와 그 희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방과 후 시간은 모든 10대 범죄의 25% 이상이 발생하는 시간대인데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3-4시 사이이다. 시간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보호가 없는 청소년들은 비행을 일으킬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방과 후 시간에 보호가 없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예를 들면 많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음식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과다해지는 것이다. 전국 스포츠 및 체육 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for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는 3명의 청소년 중 1명이 매일 운동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국 건강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는 과체중 청소년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3배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방과 후 시간 동안 조직된 활동(예를 들면 팀워크를 장려시키고 규칙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능들을 개발시키고 성인들과의 중요한 관계를 제공한다.

③ 이점

청소년들이 구조화된 그리고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그 프로그램이 학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많은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흡연, 약물, 알코올 등의 이용을 줄여주며, 10대 임신 발생을 줄여준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복지에 대해 덜 불안해 할 수 있다.

(2) 미국 American Camp Association 인증제

① 목적

American Camp Association(ACA) 인증제의 첫 번째 목적은 캠프 운

영의 주요 측면들, 특히 프로그램의 질, 캠핑 참가자와 직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의 경영에 대해 캠프(camp) 소유자와 지도자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정책, 절차, 실행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이 기준(standards)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캠프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캠프를 진행시킬 의무가 가지게 된다. ACA 인증제의 두 번째 목적은 캠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로 하여금 인증이 되고 정부의 승인된 기준에 부합하는 캠프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ACA 인증제를 통한 캠프의 정보 제공 서비스는 ACA가 인증한 이상적인 캠프를 찾는 많은 방법들을 일반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② 인증제의 의의

ACA의해 인증되는 대상은 주로 캠프가 되는데 ACA 인증이 의미하는 것은 캠프에 위탁하는 학부모들에게 그들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한 최고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인증은 학부모들에게 캠프 수행이 국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고, 국가의 기본적인 승인 요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질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인증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캠프가 최상의 수행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정되는 ‘일일 그리고 숙박 캠프(day and resident camps)’ 8,500개 중에서 단지 25-30%만이 인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증은 교육적인 과정에 속하는 훈련, 가이드라인, 프로그램과 캠프 지도자, 직원을 위한 출판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③ 기준 및 절차

ACA 기준은 캠프업의 기준으로서 정부 원칙과 법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ACA 인증제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캠프에서 현재 최고의 실행을 반영하기 위해 계속해서 평가되고 갱신되고 있다. ACA는 미국 소아학, 미국 적십자사 그리고 다른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같은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ACA 기준은 대중, 법적 조건,

청소년 발전과 캠프 활동영역에 관한 조사에 기초하여 계속 개정되어진다.

또한 ACA 캠프들은 캠프 참가자들의 병 또는 상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견고한 위기 계획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위기관리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행해진다. 캠프는 어린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제한 한계와 함께 긍정적인 환경과 관리를 제공한다.

ACA 인증제는 적어도 3년에 한번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외부의 팀이 300개 기준 이상의 인증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통해 캠프를 관찰한다. 인증 기준은 캠프 운영의 모든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장소·음식 서비스: 화재 보호, 관리, 숙박 지역, 욕실·화장실 시설, 음식 서비스 부분과 장소 등.
- 수송·교통: 운전자와 차량의 요구조건, 교통 억제, 운송 안전 등.
- 건강치료: 직원과 설비 시설 요구, 약물 관리, 필요한 건강 정보와 기록 보존 등.
- 경영: 안전과 보안 규칙, 직원 비상사태 훈련, 비상통신망, 보험, 전략 등.
- 직원관리: 직원 자격부여, 훈련, 인원(ratios), 경영 가이드라인을 위한 관리와 행동 등.
- 프로그램: 캠프 참가자들의 발전을 위한 목표, 일반 및 특별 프로그램들, 수상 훈련, 도전 과정, 여행, 승마 등을 위한 안전 규칙들과 오리엔테이션 등.

④ 인증제의 이점

ACA 인증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 또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ACA 인증제를 통한 인증은 캠프 수요자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들에게 해당 캠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있다. 이러한 이점 또는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캠프가 인증되었다는 것은 캠프 참가자와 관계자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ACA 인증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게

쉽도록 하도록 디자인된 새로운 로고를 개발해 오고 있다. 또한 자료나 인터넷을 통해 캠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ACA 로고를 통해 인증된 캠프가 지니는 이점 또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ACA의 캠프 정보제공 서비스는 하루에 수천 명의 방문자가 이용하고 있다.

ACA 인증제를 통한 캠프 정보제공 서비스는 접근성, 고객, 요금, 후원 조직, 프로그램 등에 기초한 평가에 있어 매우 우수하다. 전국적으로 2000개 이상의 ACA 인증제를 활용한 캠프들이 있다. ACA 인증제를 통해 캠프 프로그램이 인증된다면 직원 채용, 신용카드 처리,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할인 등이 용이해 진다.

캠프 프로그램이 ACA 인증제를 통해 인증될 것인가를 평가하는 현장 방문자로 자원 봉사하는 것은 많은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캠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더욱 더 많은 캠프들이 인증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2) 캐나다

(1) 캐나다 British Columbia Camping Association 인증제

① 목적

British Columbia Camping Association(BCCA)는 British Columbia에서 열리는 캠핑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다. BCCA는 British Columbia의 숙박 캠프(resident camps) 운영자들과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개인들이나 기관들에게 캠핑의 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British Columbia의 숙박 캠프 서비스(resident camp service)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BCCA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② 용어의 정의

BCAA 인증제에서는 인증의 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용어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BCAA 인증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용어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BCAA 인증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용어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가. 완전 인증(Full Accreditation)

모든 “요구 사항들(Required)” 기준 100% 충족한 캠프, 그리고 모든 “희망 사항들(Desirable)” 기준 중 80%를 충족한 캠프를 완전 인증이라고 말한다.

나. 조건부 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현장 방문에서 “요구 사항들” 중 12개 이하와 “희망 사항들” 중 15개 이하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구 사항들” 과 “희망 사항들” 기준의 대부분 충족한 캠프를 조건부 인증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캠프는 다음 캠프 운영 시즌 전에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

다. 인증 보류(Accreditation Pending)

현장 방문에서 “요구 사항들” 중 12개 이상과 “희망 사항들” 중 15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캠프를 인증 보류하고 한다. 인증 보류 상태에 있는 캠프는 여러 가지 자료에 BCCA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할 때 이를 알려야 한다.

라. 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mmittee)

인증과정을 감독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말한다.

마. 인증 현장 방문(Accreditation Visit)

수립된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캠프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바. 요구사항 기준(Required Standards)

인증을 받기 위해 100% 따라야 하는 기준들을 말한다.

사. 희망사항 기준(Desirable Standards)

인증을 받기 위해 80% 따라야 하는 기준들을 말한다.

③ 인증 과정 및 기준

회원으로 가입된 캠프는 인증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캠프가 인증되는 최대 유효기간은 4년이다. 구체적인 인증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기로 한다.

- 1단계

매년 봄에 BCCA는 새 인증 또는 인증을 요구하는 캠프에 관련 정보를 우송한다. 새로운 캠프는 서면으로 인증 현장 방문을 요구하여야 한다.

- 2단계

캠프는 인증 기준을 담고 있는 편람 1부와 인증 방문 팀의 이름을 받는다. 현장방문자들은 방문할 캠프, 인증 기준, 인증 요약 양식을 받는다. 현장 방문자와 캠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협회장이 현장 방문자들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 3단계

인증 받을 캠프는 현장 방문자들과 의사소통을 시작할 책임이 있으며, 캠프가 열리고 있는 동안 상호 편리한 방문 일자와 시간을 만들 책임이 있다. 캠프는 최소한 현장 방문 30일 전에 현장 방문자들에게 직접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우송해야 한다. 첫째, 철학, 목적, 목표, 둘째, 안내서와 관련 자료, 셋째, 등록 양식과 의료 양식, 넷째, 캠프진 훈련 스케줄과 매뉴얼, 다섯째, 캠프진 연락처, 신청서, 업무. 만약 현장 방문이 현장 방문자들에 의해 또는 캠프에 의해 취소된다면 그 상세한 내용을 BCCA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장 방문이 캠프에 의해 취소된다면 인증 상태는 회원으로만 전환된다. 현장 방문자들은 캠프 정보를 알기 전에 캠프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 4단계

캠프는 기준을 살펴보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5단계

캠프는 현장 방문동안 다음과 같은 정보가 방문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식당: 가장 최근의 공공 보건 기록서, 둘째, 식당, 수영장, 물: 허가증, 셋째, 캠프자: 건강기록부와 사고기록부, 넷째, 응급 및 안전 절차, 다

첫째, 프로그램 기록과 안내서, 여섯째, 샘플 메뉴, 일급째, 정책 매뉴얼, 여덟째, 캠프진 훈련 매뉴얼, 아홉째, 기타.

- 6단계

완전한 캠프 순회와 프로그램 관찰 시간을 포함하여 4-6시간이 현장 방문 팀에게 소요된다. 의견, 아이디어, 관점 등은 캠프 운영 전체에 걸쳐 공유될 것이다. 캠프 단장과 현장 방문자들은 각 기준에 대해 응답하며, 각 질문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 No라는 응답 수를 반드시 ○ 표를 해야 하며 No라는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공란이나 별지에 설명해야 한다. No 응답을 포함하는 모든 페이지와 평가지는 인증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7단계

현장 방문자는 인증검토위원회에 서면으로 경비를 요청한다. 인증을 받을 캠프는 현장 방문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개인 여비를 현장 방문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8단계

인증위원회는 모든 캠프 보고서를 평가한다. 그리고 “요구사항” 기준 중 100%, “희망사항” 기준 중 80%를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심층 검토를 통해 확인한다. 프로그램 기준은 해당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데 사용한다. 또한 기준은 일일 캠프는 물론 숙박 캠프에도 적용된다. No 응답에 대한 설명은 주의 깊게 고려될 것이다.

인증위원회는 BCCA에게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추천할 것이다. 첫째, 캠프는 조건을 가지고 또는 조건 없이 1-4년의 기간 동안 인증될 것이다. 둘째, 캠프는 인증되지 않으며 그대로 남아있거나 인증 보류로 될 것이다. 셋째, BCCA는 해당 캠프에 대해 인증 전에 서면으로 기준에 맞는지를 보여주도록 요구한다.

- 9단계

인증 보고서를 9월 30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CA는 결정은 서면으로 해당 캠프에게 통보하며, 캠프는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유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식 인증서는 해당 캠프에게 우편으로 우송되거나 BCCA 연차 회의에서 제공될 것이다.

3) 핀란드

(1) 핀란드 Finland 「Youth Academy」의 “Study Book”

① Youth Academy

가. Youth Academy-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 활동-지원-학습

Youth Academy는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학습, 아르바이트 생활 각 영역이 서로 유기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기관이다. 청소년들은 다른 또래들과 함께 작업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배운다. 여기서 어른들의 역할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Youth Academy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훌륭한 자원이다.

나. Youth Academy의 설립목적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여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Youth Academy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모델이 될 만한 활동과 상품을 계획하고 설계 한다.

다. Youth Academy의 운영 방법

Youth Academy(Youth Academy)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모델이 될 만한 활동과 작품을 계획한다. Youth Academy의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특성화 되어 있다.

- * 각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단체 사이에서 만들어진 협력의 결과이다.
(비영리기구, 교육기관, 근로생활) 이 모두가 관습의 영역 테두리를 교차한다.
- * 그 프로그램들의 운영방법과 기획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청소년 혹은 성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토대로 한다.
- * 청소년들은 기획된 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Youth Academy의 프로젝트가 가능한 만큼 확장될 수 있도록 개발과 수단 제공에도 참여한다.

라. Youth Academy의 협력기관

Youth Academy는 12개의 회원 기관과 협력한다. Youth Academy는 다른 기관과 함께 협력관계 속에서 청소년 활동의 전체 범위 안에서 운영된다. 이러한 모델은 Youth Academy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 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12개의 회원 기관은 Youth Academy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한다. Youth Academy의 회원 기관은 다음과 같다.

- Centre for Education and Youth Work/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Finland
- Finnish School Sport Federation
- Finnish Nature League
- Mannerheim League for Child Welfare
- Young Finland Association
- Finnish 4H Federation
- Finnish Youth Association
- Finnish Youth Co-Operation Allianssi
- Guides and Scouts of Finland
- Finnish Red Cross
- Finnish Workers' Sports Federation
- Swedish Study Centre

② “Study Book”

핀란드에서는 1996년 이후로 여가활동 “Study Book” 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Youth Academy에서 개발 되었는데 이것은 주요 핀란드 청소년스포츠협회를 위한 협력기관이다. 핀란드의 교육과 문화는

Study Book 시스템을 원한다. Study Book은 청소년들을 위해 비공식/공식적인 Youth Academy와 연계된 활동기록이다. 그들은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속에서 모든 선행학습으로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자기계발 학습, 학교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장 및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이자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Youth Academy는 이 책속에 기록된 참가자들의 활동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가치화 할 것인지 250개의 공식적인 교육기관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책의 시스템은 개개인 학습자(청소년)의 개발에 보다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식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몇 개의 길이 Study Book 시스템의 일부으로써 창조된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은 학교 밖의 자발적인 여가환경에서 대안 학습으로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자연체험학습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결과나 수행평가나 혹은 다른 어떤 공개적인 시험이 아마도 Study Book의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가활동 Study Book 시스템은 기록화와 인증 그리고 청소년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얻은 권한과 자격을 위해 적합한 것이다. Study Book에서 보다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직업 사항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의 현실적 자격보다는 오히려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봉사활동 및 여가생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주요 생각은 청소년들이 인권, 커뮤니케이션, 사회성과 같은 자기 개발에 관해서 주요한 권한을 얻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Study Book 한편에 인생 전체가 있다. 여가 활동인 Study Book은 읽는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의 기술 및 청소년들이 경험을 배우는 과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넓은 시각을 준다. Study Book은 모든 형태의 여가 활동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기록한다. 이 활동의 목적은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Study Book을 사용했다.

많은 교육 기관과 직원들은 학교 밖에서 자신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활동적인 청소년들을 선호한다.

Study Book 활동의 모든 참가자들은 Study Book을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로 펴낼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들이 또 다른 해외 활동이나 국제 활동에 대하여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지도자

지역 Youth Academy가 혁신을 필요로 하는가? 혹은 기관의 잡지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부족한가? 혹은 계획된 이벤트나 캠프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가? 이 모든 것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자신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기회가 주어 졌을 때 가능하다.

Youth Academy의 지도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는 어른들인데 이들은 고용될 수 있으며 기관의 자원봉사자 혹은 청소년 지도사, 학교 선생님들이다. Youth Academy의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유기적 관계는 청소년 스스로 만든 프로젝트가 잘 운영되어 질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배우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④ MAHIS

MAHIS 활동은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MAHIS 활동은 13세부터 17세까지의 의미 있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한다. 잘 훈련된 자원봉사, 성인 MAHIS 지도자는 청소년 그들 스스로가 고무된 그룹 활동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MAHIS 지도자와 함께 그룹은 이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Youth Academy로 부터 500 유로 상당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진로체험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구(NGO)와 다른 기관들은 청소년들이 직업 교육에서 자신들의 직업 찾기와 같은 가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 한다. 비영리 기구들은 종종 대중적이고 사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유연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전정신을 배양시킨다. Youth Academy는 1998년부터 비 영리기구에서의 진로체험 활동을 발전 시켜왔다. 비영리 기구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2004년 말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 프

로젝트는 비영리 기구와 다른 청소년 기관 속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청소년 사업부가 있는 다른 기관 사이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를 개발 중에 있고 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유럽의 사회기금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⑥ 활동기록(Note)

Youth Academy의 “기록(Note)”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상급 종합학교, 상급의 고등학교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 학교 클럽활동 혹은 다른 학교의 과목들을 연계시키는 작업이다. 함께하는 구성원은 한 학급 혹은 대학생, 친구그룹, 선생님이나 혹은 또 다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또래상담 혹은 학교 클럽이 될 수 있다. 그 교사들은 지방 협력 파트너와 함께 참가자 모두를 지원한다. 좋은 파트너는 찾아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의 청소년과 스포츠 관련기관들, 지방 행정기관과 교회의 청소년지도자들, 지역 기업들에서 좋은 협력 파트너들을 발견 할 수 있다.

“기록”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이 프로젝트 그룹은 실질적인 아이디어 및 은행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아이디어와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무료 제공,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적인 후원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경쟁을 제공한다. "기록" 활동은 학교에서 청소년 성장을 위한 미래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가르치고 협력하는데 목적을 둔다.

⑦ 훈련(Training)

Youth Academy 주관의 훈련은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성인들을 목표로 한다. 훈련의 섹션에 참가하면, 참가자는 지도자 기능을 개발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Youth Academy는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운영되고 시작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청소년 그들은 주어진 공간과 지원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열정과 개방된 마음으로 클럽활동, 캠프, 이벤트 같은 다양한 프로

젝트를 계획할 수 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청소년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평가하고 계획을 시작한다. Youth Academy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성인들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방법과 생각을 얻는다.

⑧ 교육기관들과의 협력

Youth Academy는 자원봉사와 여가활동, 교육, 근로생활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목표는 행동과 배우기를 위한 의미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학교 프로그램들은 - 종합학교를 위한 “기록(Note)”, 고등학교를 위한 “proto” - 아이디어들과 자유로운 자원들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들이 학교로 제공된다. 만약 당신이 교육기관들이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얻은 경험들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여가 활동을 위한 Study Book을 펼쳐봐라. 당신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봉사활동들을 학업에서 습득되어야 할 필요부분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들을 위해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⑨ 협력 파트너들

Youth Academy와 그의 협력파트너들은 청소년들을 신뢰하고, 청소년들이 활동적이며, 주도적이고, 책임감을 보여주도록 고무시키고 있다. Youth Academy와 그들은 함께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 속에서 학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well-being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Youth Academy와 협력 기관들은 다양한 자원, 장학금,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훈련된 성인의 자원들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한다.

협력은 Youth Academy의 가치들로 인도 된다. : 최선의 청소년 이익, 개방성, 존중

⑩ 자원들(Materials)

Youth Academy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돕는 성인들을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한다. 어떤 자원들은 무상이며 어떤 자원들은 지불한다. 핀란드의 Youth Academy는 무료 잡지를 배포한다. 그 잡지는 청소년기관, 스포츠클럽, 학교 안에 그들과 함께 일하는 성인 및 청소년들을 독자로 한다. 게다가 그 잡지는 지방, 구역, 국가의 모든 청소년 단체인 비영리기구 모두에게 배포된다. Youth Academy는 또한 핀란드 이메일에 의해 분류되는 Ankka 라 불리우는 월 1회 뉴스 속보를 발행한다. 이 뉴스 속보는 갑작스런 사건, 훈련, 재정적인 지원 및 지원서에 대한 정보를 실는다.

⑪ 유럽의 네트워크(Network)

청소년들의 비공식/공식 학습의 승인허가와 청소년 여가활동 및 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는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 비슷한 목적을 나누는 유럽의 네트워크 기관들을 세우기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출발점은 자원봉사활동 속에서 비공식/공식적인 학습의 인증과 장려를 다루는 기관의 연합이나 국제적인 단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학습의 가치화는 것은 유럽 의회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유럽기관의 안건 속에서 뜨거운 주제이다.

3. 연계·협력의 모범사례로서의 학생봉사활동 분석

1) 학생봉사활동의 도입배경과 내용

(1) 배경

학생봉사활동은 우리나라의 교육이념(교육기본법제2조)과 중·고등학교 교육목적(초·중등교육법 제45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시된 중·고등학교

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1997-15호)과 2000년 교육부에서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제도운영 개선지침’에 의하여 작성한 시·도교육청별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을 근거로 한다.

제 7차 교육 과정은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교육 과정의 편제를 살펴보면 크게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①교과 ②재량활동 ③특별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의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 5개의 활동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①교과 ②특별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의 특별활동 역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동일하게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봉사활동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 과정 및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 과정의 특별활동 모두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준 시수가 제시되어 있고, 이 가운데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운영은 학교의 특별활동 계획 수립과 운영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맞추어 2000. 11. 21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 활동제도 운영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2) 특징

첫째, 학생 봉사활동은 개개인의 완전한 자유 의지에 따른 자발적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육적으로 지도되는 활동이다.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95년 5·31 교육 개혁안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 봉사활동을 권장해 왔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이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해 교육적으로 지도되는 활동이 되었다.

둘째, 학생 봉사활동은 계획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학교가 지도하는 활동이다. 학생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야 하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학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봉사활동은 학교 단위의 활동이거나 개인 단위의 활동이거나를 막론하고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검토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 봉사활동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 급별로 적절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의 본격적인 봉사활동 실천을 지도하기보다는 봉사정신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주로 교내 및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중학교에서는 완전히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 실천은 가능하다. 따라서 봉사학습의 개념에 입각하여 학교에서 안내, 지도된 활동을 중심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학교 내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자신이 장차 선택하려는 진로 영역과 관련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봉사활동의 운영실태

(1)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봉사활동의 변화

① 제6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봉사활동은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적용·시행한다. 첫째, 「학교계획에 의한 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활동」으로 구분한다. 둘째,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계획하여 운영한다. 셋째, 봉사활동 영역 8가지로 분류되며, 구체적으로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 지역사회 개발활동, 기타활동으로 분류된다. 넷째, 상급학교 진학 시 봉사활동 반영시간은 중학교는 연간 기준시간 15시간 이상(고입 내

신성적에 8% 반영, 서울특별시), 고등학교는 기준시간 없이 실시. 대학에 따라 대입 내신성적에 반영된다.

② 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봉사활동은 초등학교는 2000학년도 1,2 학년도 부터, 중학교는 2001학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 1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첫째,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으로 구분 실시한다. 둘째, 각 학교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셋째, 영역은 6차 교육과정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한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별, 학년별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다양화한다.

(2) 학생봉사활동의 운영의 실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학생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립·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봉사활동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첫째, 봉사활동 시간의 확보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시간 중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계획을 세워 지도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또 봉사활동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함으로써 봉사활동의 내재화를 위한 단계별 과정을 충실히 밟도록, 먼저 학교에서 봉사활동의 이론 및 의의를 가르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봉사활동 체험하는 단계를 거쳐 그룹단위로 봉사활동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 프로그램에 의한 봉사활동도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봉사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취지, 실시 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교장 및 봉사활동 담당교사에 대하여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의의 및 취지, 실시 요령 등을 제대로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획일적으로 모든 학생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같은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학교 급별, 학년별, 봉사활동의 내용과 시간을 다르게 편성하도록 하였다.

또,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보다는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우선 인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봉사활동 유관기관의 네트워크와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화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각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전용배너를 설치하고, 이를 서로 링크하여 별도의 검색절차를 거치지 않고 봉사활동 영역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의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하여 봉사활동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전국의 182개 지역교육청에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182개 각 지역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의 영역을 구축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학교 및 학생, 지역사회 봉사센터, 봉사대상기관을 상호 인터넷으로 연결·관리함으로써 봉사 수요기관과 공급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이 봉사기관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봉사활동의 질적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봉사대상기관의 담당자는 각 학생이 봉사활동에 임하는 태도, 성실성 등에 관한평가 내용을 봉사활동 확인서에 기록해서 발급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여 상급학교 입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생봉사활동 권장시간 및 내신반영

① 학생봉사활동 권장시간

첫째,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및 학년별 봉사활동 권장 시간을 연간 7~20시간으로 다양화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은 초등학교는 연간 5~7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운영해야 한다. 학교급별, 학년별, 연간 봉사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급	학년	봉사활동 권장 시간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초등학교	1~4	연간 7시간 이상	연간 5~7시간 이상
	5~6	연간 10시간 이상	
중학교	전 학년	연간 18시간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고등학교	전 학년	연간 20시간 이상	

② 학생봉사활동 내신성적 반영

고교 진학시 내신신영비율은 12점에서 30점까지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시에는 대학의 방침에 따라 반영한다.

중학교는 연간 기준 시간 : 18시간이며, 고입 내신성적 반영하며, 고등학교는 대학에 따라 대입 내신성적에 반영한다.

봉사활동 시간	고입 내신성적 반영 점수
연간 18시간 이상	8점
연간 15시간 이상~18시간 미만	7점
연간 15시간 미만	6점

3) 학생봉사활동의 분석결과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여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미래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권장하고 실시하는 각 급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 있는 긍정적인 성과와 함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먼저 긍정적인 성과로는 첫째,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극참여 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실천, 둘째, 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셋째,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운영을 통해 가족에확인, 넷째, 다양한 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들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성과로는 첫째, 봉사활동 대상 기관 및 프로그램의 부족, 특히 대단위(학급단위 또는 학년단위)로 봉사할 장소 부족, 둘째, 활동시간이 학교마다 대부분 토요일에 중복되어 있어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 셋째, 봉사활동 본연의 의미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연계·협력 영역으로서 인력 연계·협력 측면, 시설 연계·협력 측면, 프로그램 연계·협력측면, 정책결정 공무원 행정연계 체계 구조 측면으로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력 연계·협력 측면

첫째, 학생, 학부모, 교사연수를 강화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둘째, 봉사활동에 대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봉사활동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인력을 확보하고, 선진국의 청소년봉사활동의 정책과 제도, 현장 프로그램의 조사·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마인드를 계발, 셋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지역사회운동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시설 연계·협력 측면

첫째,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와 지역 자원봉사활동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상기관 안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둘째, 언론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셋째, 지역사회의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시·군·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지부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여 지역특성과 환경여건에 맞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시범·협력학교의 지정확대,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역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 센터와 정보 공유 등의 연계·협력 체계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연계·협력측면

첫째,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 둘째, 캠페인 활동 등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운영, 셋째, 봉사학습 우수사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보급, 넷째,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조직의 활성화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동아리를 조직·운영하도록 지원, 다섯째, 청소년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기초조사를 통한 공익적인 통계자료를 보급하여 현장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 등이 강조된다.

(4) 정책결정 공무원 행정연계 체계 구조 측면

첫째, 시·도교육청별 봉사활동 시범학교를 통한 봉사활동의 정착 및 일반화 유도, 둘째,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및 고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 · 협력 개선방안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델파이 조사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 · 협력의 방향과 과제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의 실천전략

V.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 개선방안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델파이 조사

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에 적용된 델파이 조사는 2005년 9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관계자 각 10명씩 전문가 20명을 엄중히 선정하여 제1회 질문지에 응답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부탁한 20명의 전문가 100%가 제1회 질문지에 응답했다. 표집대상은 정책 담당공무원 10명, 민간 전문가 10명 중 대학교수는 4명, 교사는 3명 기관 및 시설 관계자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의 <표 V-1>에서 알 수 있다.

<표 V-1> 델파이 참여자

(단위 :명, %)

직 위	참여인원	응답비율
학교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4	100
학교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시·도 교육청)	3	100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3	100
대학교수	4	100
교사(교사단체)	3(2)	100
청소년기관	2	100
청소년시설	2	100
계	20	100

1) 1차 델파이조사

(1) 델파이 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를 위한 델파이를 전문가 20명에게 물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①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부진한 원인 ②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연계·협력이 바람직한 정책 ③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 ④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인적교류 대상 ⑤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 협의기구설치 소재와 참여자 ⑥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실질적 내용 ⑦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내용 중에서 연계·협력이 필요한 활동 ⑧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있어서 학생봉사활동 사례를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확대 시행 ⑨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확대 시행 시 유의점이 1차 델파이 내용들이다.

특히, 1차 델파이 내용 중 ⑦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내용 중에서 연계·협력이 필요한 활동 ⑧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있어서 학생봉사활동 사례를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확대 시행 ⑨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확대 시행 시 유의점의 세 질문은 본 연구의 제목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 -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로 연구제목의 부제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내용 중에서 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델파이 내용분석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내용 중에서 연계·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9개 영역의 델파이 조사결과 내용을 하나씩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①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부진한 원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양 정책관계 전문가 20명에게 물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은 같은 청소년인데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균형 없이 학교교육에 편중되어서다.
- 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현안 교육정책 때문이다.
- 담당 부처 간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서로가 상대 정책에 대하여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인적자원개발의 학교교육정책 목표와 건전 청소년육성의 청소년 정책 목표가 달라서이다.
- 양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파트너의식이 없어서다.
-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서다.
-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정책의 하위 또는 부속적 정책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 학교 밖 청소년정책은 교육정책과는 관계없는 비교육적 영역이라는 배타적 사고 때문이다.
- 양 정책의 업무성격과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 양 정책의 상설 실무협의체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 대학과 사회가 서열화 된 학벌사회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이유로는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단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여러 원인 중 양 정책의 협력체제가 부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교교육정책이 청소년정책과 유리되어 있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란 같은 대상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정책은 평행선을 긋고 정책이 따로 집행되고 있음을 적시하고 응답자 중에는 이를 부

처 이기주의로 보거나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입각해 상대정책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우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학교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교육정책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내용이 청소년정책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현실인식으로 주문하였고, 청소년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정책의 같은 대상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양 정책이 이루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②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체제 간에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에 대하여 양 정책관계 전문가들에게 묻은 내용에 대한 응답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청소년정책
-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
- ‘방과 후 아카데미’와 교육복지정책
-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 청소년 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
- 청소년교류활동과 국제이해교육
- 청소년인권·참여정책과 학생회 및 CA 활동
-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활용
- 청소년보호정책과 학생지도
-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청소년지도사의 학교활동 및 생활지도 활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체제 간에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먼저 매우 다양한 제안들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견은 대부분 청소년

정책에서 실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 활동들과 학교교육정책에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재량활동들을 연계·협력하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기술교육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영역의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청소년정책이 같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정책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와 청소년지도사의 학교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협력을 언급한 전문가도 있었다.

③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간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전문가들의 응답이 있었다.

- 법적 구속력 없는 긴밀한 상설 TF 설치
- 교육정책 관계자의 청소년정책 이해와 공동영역 찾기
- 단기적으로 상설협의체 구축, 장기적으로 교육부로 통합
-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연계·협력을 위한 독립적 제3기구의 설치와 관련 법제도 마련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로 양 부처의 정책담당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상설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을 말했으며 이러한 기구는 제도화하여 형식적인 조치로 되어서는 실효가 없을 것을 말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 부처들 간 정책의 중복 투자를 막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쌍방 간에 연계·협력의 계약을 맺고 있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이 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간에도 있어 공동협의체제가 마련되고 정책 간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④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의 소재와 참여자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간 상호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협의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는 어디에다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소재의 문제와 협의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하는 가하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 관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대통령 직속 통합기구로 설치하여 범 국민대표들이 참여
- 교육인적자원부에 두고 청소년위원회,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공무원 함께 참여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 설치하고 양 정책부처의 담당 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참여
- 중앙은 국무총리 산하, 지방은 시·도교육청에 설치하여 정책입안자, 청소년 현장전문가, 교사 참여
-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협의체를 설치하고 양 정책 실무자 국·과장, 사무관 참여
- 국장급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양 부처가 격년제로 주관하며 양 정책 관계자들 참여
- 시도교육청에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청소년NGO, 학부모단체, 교사참여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의 소재와 참여자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로 청소년정책 관련 전문가들과 학교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대통령직속,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협의체 설치 소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에는 청소년정책의 집행 조직이 미약하므로 시도 교육청에 연계·협력 기구를 설치하는데 대한 의견들이 더 많았다.

참여자에 있어서도 양 부처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청소년위원장, 양 정책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에서부터 국민대표, 고위공무원, 국무조정실의 사회문화조정관, 청소년NGO, 학부모단체, 교사, 학자 등이 다양하게 거론 되었다.

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 ·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대상 중에서 이번 텔파이 질문 내용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정책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이 초기 단계에 활동의 기록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점차 자생적인 청소년봉사활동 동아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 긍정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므로 이를 다른 활동들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질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
- 청소년경제활동 참여와 직업탐색 교육
-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 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 수련활동 최소 시간 이수제도 도입과 학생활동기록부 제도 도입
- 정치참여 활동과 민주시민교육
- 양 정책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 청소년상담활동과 학생상담
- 청소년 금주 · 금연 활동과 학생지도

위의 응답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대상 중 청소년활동에 관한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 · 협력 내용은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중 청소년정책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교육정책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과의 연계 ·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련활동의 개념이 청소년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뚜렷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 의미로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도 같은 의미의 연계 · 협력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 정책에서의 활동의 연계 · 협력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수련활동 최소 시간 이수제도의 도입과 학생활동기록부 제도의 연계 · 협력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연계 · 협력은 청소년 경제

활동 참여와 학교교육에서의 직업탐색 교육,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⑥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

이 델파이 질문은 청소년정책의 청소년봉사활동과 학교교육정책의 학생봉사활동 이수제도가 양 정책 연계·협력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청소년활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를 찬성하는 가를 알아 본 결과들이다.

이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서술하자면, 비록 타율적이지만 학생이 정해진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면 상급학교 진학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됨으로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델파이 내용은 이와 같은 사례를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학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물음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65%이고 반대가 35%로 나타났다. 아래에 열거한 내용들은 찬성한 응답자들의 이유를 나열한 것이다.

- 활동이수기록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례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학생봉사활동은 모범사례이므로 다른 활동으로 확대 적용 필요
-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21세기 글로벌리더십 함양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다양한 교과 외 체험활동으로 입시위주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함
-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대안 마련하여 대책수립
-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때까지 한시적인 제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위에서 나타난 이유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현행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극도로 제한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가 교육적으로도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의견 중 학생봉사활동이

아직 일부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대의적으로 다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대안을 마련한 다음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는, 이러한 타율적인 제도도 결국 우리의 고질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이 개혁되어 정상화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타율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뿐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⑦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아래의 델파이 질문에 응답한 내용들은 이미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학생봉사활동 사례를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학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반대가 35%로 나타났고 아래에는 반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 학생봉사활동은 입시점수를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그릇된 정책이므로 사례가 될 수 없음
- 다양한 청소년활동기록의 진학 시 인센티브 부여는 활동의 도구화와 대학서열의 심화를 가져옴
- 허위 학생봉사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목적 성취 못할 것
-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활동의 확대시행도 대학에서 경시하고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임

위의 찬성 이유에 대한 응답 내용들과 달리 반대 내용들은 각기 내용이 다르게 서술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생각은 결국 학생봉사활동도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하나의 도구화된 활동이라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학생봉사활동의 학생생활기록부예의 기재를 다른 활동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대학입시의 가열과 대학서열의 심화,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 가중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모든 대학이 학생

선발 대상의 기준을 다양한 활동 경력보다는 높은 학력수준으로 정하여 대학의 주가를 높이려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치가 실제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2차 델파이조사

(1) 조사대상 및 방법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의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이용된 조사대상 및 방법이 2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그대로 이용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대상 및 그 실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차 델파이 조사대상 및 실시 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2) 델파이 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의 2차 델파이 내용은 1차 델파이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전문가 20명에게 물은 2차 델파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 ②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 및 그 실현 가능성, ③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 및 그 실현 가능성, ④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하여 양 정책의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 및 그 실현 가능성, 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 및 그 실현 가능성, ⑥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 시행되는 것에 찬성한 내용 및 그 실현 가능성, ⑦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및 자율적 활동의 실현 가능성, ⑧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효과성 및 다른 청소년활동들이 확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이다.

(3) 결과

①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의 타당도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V-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

(단위: %)

항목	전혀타당하지않음	타당하지않음	보통	타당	아주타당	계
입시위주교육정책		5.0	5.0	60.0	30.0	100.0
학교교육 편중			20.0	70.0	10.0	100.0
담당부처간 이기주의		20.0	40.0	20.0	20.0	100.0
상대정책에 대한 인식, 지식 부족		5.0	20.0	40.0	35.0	100.0
양정책의목표 서로상이	5.0	50.0	30.0	15.0		100.0
양정책담당 공무원들의 파트너의식부족	5.0		25.0	60.0	10.0	100.0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시각 결여	5.0		30.0	45.0	20.0	100.0
청소년정책이 학교 교육정책의 하위·부속 정책이라는 고정관념		15.0	25.0	55.0	5.0	100.0
학교밖 청소년정책은 비교육적 영역이라는 배타적 사고		25.0	30.0	30.0	15.0	100.0
양 정책의 업무성격 및 한계 불분명		5.0	50.0	45.0		100.0
양 정책의 상설실무 협의회기구부재			25.0	50.0	25.0	100.0
학벌사회		20.0	25.0	50.0	5.0	100.0

첫 번째, “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현안 교육정책 때문이다” 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8명(90%)이 타당 혹은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이 상호 연계·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먼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대상은 같은 청소년인데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균형 없이 학교교육에 편중되어서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6명(80%)이 타당 혹은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이 청소년이라는 동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정책이 균형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학교교육에 편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이 상호 연계·협력되질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 “담당 부처 간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2명(60%)이 타당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타당하다는 반응도 8명(40%)이나 나와 반응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이 상호 연계·협력되고 있지 못한 원인으로 담당 부처 간 부처 이기주의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서로가 상대 정책에 대하여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5명(75%)이 타당 혹은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상호 교류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정책의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자명하고, 또한 정책의 주무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로 볼 때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그간의 상호 교류가 매우 부족

하였으며 연계와 협력이 빈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인적자원개발의 학교교육정책 목표와 건전 청소년육성의 청소년정책 목표가 달라서이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7명(85%)이 타당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반응하였다. 이 중 11명(55%)은 전혀 타당하지 않거나 아주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양 정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는 원인은 타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양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파트너 의식이 없어서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4명(70%)이 타당하다 혹은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이것은 양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이 상호 부족하다는 원인과 더불어 양 정책의 담당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연계하고, 협력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며 나아가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들이 양 정책에 대해 공유하려는 의식을 증진시키고 서로가 같은 목표를 추구해나가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증진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을 끌어내는데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서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9명(95%)이 보통이다 혹은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의해 이 원인이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19명 중 6명(30%)이 보통이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비록 반응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원인도 양 정책의 연계와 협력 부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덟 번째,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정책의 하위 또는 부속적 정책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2명(60%)이 타당하다 혹은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고, 8명(40%)이 보통이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비록 반응이 전문가들 간에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이 원인도 양 정책의 연계와 협력 부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홉 번째, “학교 밖 청소년정책은 교육정책과는 관계없는 비교육적 영역이라는 배타적 사고 때문이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1명(55%)이 보통이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여 타당하다 혹은 아주 타당하다는 반응(9명, 45%)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이 원인은 양 정책의 연계 및 협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타당하다는 반응도 45%나 되어 이 원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열 번째, “양 정책의 업무성격과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1명(55%)이 보통이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고, 9명(45%)이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로 엇갈리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원인이 양 정책의 상호 연계 및 협력 부족에 매우 주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열한 번째, “양 정책의 상설 실무협의체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5명(75%)이 타당하다 혹은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 정책의 상호 교류, 연계 및 협력을 조율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매우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 또는 기구의 부재는 양 정책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부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열두 번째, “대학과 사회가 서열화된 학벌 사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원인에 대해 20명 중 11명(55%)이 타당하다 혹은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고, 9명(30%)이 보통이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비록 반응이 전문가들 간에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이 원인도 양 정책의 연계와 협력 부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그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원인은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그 5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현안 교육정책, 둘째,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 중 학교교육에의 편중, 셋째, 상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

넷째, 양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파트너 의식의 부족, 다섯째, 양 정책의 상설 실무협의체 기구의 부재이다.

이렇게 볼 때 양 정책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개선하고, 학교 밖 교육과 학교교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양 정책을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파트너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양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 실무협의체 기구의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V-3>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청소년정책”이라는 정책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7명(8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청소년정책이 긴밀하게 연계 및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다고 볼 때 이는 결국 국가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정책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이라는 정책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20명 중 19명(9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은 반드시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하며,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활동 정책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며 이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표 V-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상호 연계 · 협력해야 할 정책내용

(단위: %)

항목	전혀중요 하지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계
인적자원개발과 청소년정책			15.0	35.0	50.0	100.0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 특별및재량활동			5.0	40.0	55.0	100.0
청소년경제활동참여정책 과 진로및 기술교육정책			5.0	70.0	25.0	100.0
방과후 아카데미와 교육복지정책			30.0	20.0	50.0	100.0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10.0	25.0	40.0	25.0	100.0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10.0	45.0	45.0	100.0
청소년 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			10.0	60.0	30.0	100.0
청소년교류활동과 국제이해교육	5.0	5.0	30.0	50.0	10.0	100.0
청소년인권·참여정책과 학생회 및 CA활동			40.0	40.0	20.0	100.0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연계활용		15.0	10.0	40.0	35.0	100.0
청소년보호정책과 학생지도		15.0	15.0	45.0	25.0	100.0
청소년지도사양성과 학교활동및 생활지도활용		25.0	M20.0	30.0	25.0	100.0

세 번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이라는 정책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20명 중 19명(9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학교

의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은 반드시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하며,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제 활동 참여정책과 학교의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며 이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네 번째, “방과 후 아카데미와 교육복지정책”이라는 정책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20명 중 14명(70%)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고, 6명(30%)이 보통이라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이 정책 내용에 대해 대체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다른 시각에서는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정책 내용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을 연계할 정도로 명확한 정책이 아니라 지나치게 포괄적인 정책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음으로 인해 반응이 엇갈렸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이라는 정책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비록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는 반응이 13명(65%)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통 또는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도 7명(35%)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정책 내용에 대해 양 정책이 연계 및 협력해야 할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력해야 할 중요한 정책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 번째,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이라는 정책 내용에 대해 20명 중 18명(90%)이 압도적으로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이것은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때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 보여 진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결과는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은 분리되어 시행되지 말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정책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 내용을 양 정책을 통해 긴밀하게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 내용에 대해 20명 중 18명(90%)이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청소년

년 인구 중 학생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화 예술 활동을 양 정책에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 정책 내용은 양 정책이 상호 연계 및 협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여덟 번째, “청소년교류활동과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정책 내용에 대해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중요하다는 반응이 12명(60%)을 차지한 반면, 중요하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8명(40%)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정책 내용이 양 정책에서 연계 및 협력해야 할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력해야 할 중요한 정책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홉 번째, “청소년인권·참여정책과 학생회 및 CA 활동”이라는 정책 내용에 대해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중요하다는 반응이 12명(60%)을 차지한 반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8명(40%)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정책 내용이 양 정책에서 연계 및 협력해야 할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력해야 할 중요한 정책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열 번째,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활용”이라는 정책 내용에 대해 20명 중 15명(7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5명(25%)이 보통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비록 25%가 이 정책 내용에 대해 그저 그렇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대체로 이 정책 내용은 양 정책에서 상호 연계 및 협력해야 할 중요한 정책 내용이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 내용에 대해 양 정책이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열한 번째, “청소년보호정책과 학생지도”라는 정책 내용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요하다는 반응이 14명(70%)을 차지한 반면, 보통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6명(30%)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정책 내용이 양 정책에서 연계 및 협력해야 할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력해야 할 중요한 정책 내용

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열두 번째,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청소년지도사의 학교활동 및 생활지도 활용”이라는 정책 내용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요하다라는 반응이 11명(55%)을 차지한 반면, 보통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9명(45%)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정책 내용이 양 정책에서 연계 및 협력해야 할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력해야 할 중요한 정책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과 학교상담자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현실에서 이 두 자격을 연계하여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에 대해 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내용은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그 5가지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청소년정책, 둘째,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셋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 넷째,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다섯째,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이다.

이렇게 볼 때 양 정책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정책은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정책,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 정책, 청소년 봉사활동정책, 청소년 문화활동정책 등이라 할 수 있다.

③ 정책 내용의 연계·협력이 실현될 가능성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4>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청소년정책”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3명(65%)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청소년정책이 긴밀하게 연계

및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 4> 정책 내용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단위: %)

항목	낮다				높다	계
인적자원개발과 청소년정책	5.0	15.0	15.0	45.0	20.0	100.0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특별 및 재량활동			5.0	50.0	45.0	100.0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 및 기술교육정책		10.0	20.0	60.0	10.0	100.0
방과 후 아카데미와 교육복지정책		15.0	15.0	25.0	45.0	100.0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5.0	30.0	45.0	20.0	100.0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5.0		45.0	50.0	100.0
청소년 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		5.0	10.0	60.0	25.0	100.0
청소년교류활동과 국제이해교육		10.0	45.0	25.0	20.0	100.0
청소년인권·참여정책과 학생회 및 CA활동	5.0	15.0	40.0	35.0	5.0	100.0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연계활용		5.0	20.0	50.0	25.0	100.0
청소년보호정책과 학생지도		10.0	30.0	40.0	20.0	100.0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학교활동 및 생활지도활용	10.0	30.0	25.0	30.0	5.0	100.0

두 번째,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명 중 19명(95%)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정책 내용이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 내용인 동시에 그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활동 정책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명 중 14명(70%)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학교의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은 반드시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 내용인 동시에 그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학교의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며 이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네 번째, “방과 후 아카데미와 교육복지정책”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명 중 14명(70%)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이것은 이 정책 내용의 중요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정책 내용에 대한 연계 방안은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므로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삼가 점진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비록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13명(65%)을 차지하고 있지만 낮다는 반응도 7명(35%)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 내용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정책 내용에 대해 양 정책이 연계 및 협력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계 및 협력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정책 내용으로 보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 번째,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명 중 19명(95%)이 압도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응하였다. 이것은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이 연계 및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 내용으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 내용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정책 내용을 양 정책을 통해 긴밀하게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명 중 17명(85%)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이 정책 내용이 그 중요도에 있어서 높은 동시에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 정책 내용은 양 정책이 상호 연계 및 협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여덟 번째, “청소년교류활동과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9명(45%)을 차지한 반면, 실현 가능성이 보통이거나 낮다는 반응이 11명(55%)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정책 내용은 실현될 가능성이 대체로 미미하거나 낮다고 볼 수 있다.

아홉 번째, “청소년인권·참여정책과 학생회 및 CA 활동”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8명(40%)을 차지한 반면, 실현 가능성이 보통이거나 낮다는 반응이 12명(60%)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정책 내용은 실현될 가능성이 대체로 미미하거나 낮다고 볼 수 있다.

열 번째,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활용”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명 중 15명(75%)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5명(25%)이 실현 가능성이 보통 또는 낮다고 반응하였다. 비록 25%가 이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저 그렇거나 낮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대체로 이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 내용에 대해 양 정책이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열한 번째, “청소년보호정책과 학생지도”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

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높다는 반응이 12명(60%)을 차지한 반면, 보통이거나 낮다는 반응이 8명(40%)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정책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그저 그렇거나 낮은 정책 내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열두 번째,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청소년지도사의 학교활동 및 생활지도 활용”이라는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이 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높다는 반응이 7명(35%)을 차지한 반면, 보통이거나 낮다는 반응이 13명(65%)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연계 및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게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 내용은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그 5가지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둘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 셋째,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넷째,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 다섯째,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활용이다.

이렇게 볼 때 양 정책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의 연계,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의 연계, 청소년 봉사활동과 학교봉사활동의 연계, 청소년 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연계,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연계 등이라 할 수 있다.

④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V-5>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긴밀한 상설 TF 설치”라는 조치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3명(60%)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7명(35%)이 보통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비록 중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왔지만 대체로 이 조치 내용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V-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

(단위: %)

항목	전혀중요 하지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긴밀한 상설TF설치		5.0	30.0	30.0	30.0	100.0
교육정책관계자의 청소년 정책이해와 공동영역 찾기			5.0	60.0	35.0	100.0
단기적으로 상설협의체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교육부로 통합	5.0	15.0	25.0	30.0	25.0	100.0
해당 부처 MOU를 통한협력체계 구축			15.0	60.0	25.0	100.0
연계·협력을 위한 독립적제3기구설치와 관련법제도마련	10.0	25.0	25.0	25.0	15.0	100.0

두 번째, “교육정책 관계자의 청소년정책 이해와 공동영역 찾기” 라는 조치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20명 중 19명(9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 정책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한 원인 중 중요한 원인이 담당 공무원들의 양 정책에 대한 지식 및 인식 부족, 파트너십의 부족 등으로 나온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양 정책관계자들이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조치 및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단기적으로 상설협의체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교육부로 통합”이라는 조치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1명(5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9명(45%)이 보통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비록 중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왔지만 대체로 이 조치 내용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조치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20명 중 17명(8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 정책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정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부처 간 MOU 체결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 및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다섯 번째, “연계·협력을 위한 독립적 제3기구의 설치와 관련 법제도 마련”이라는 조치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2명(60%)이 보통, 중요하지 않다 또는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8명(40%)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조치 내용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회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에 대해 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내용은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그 2가지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관계자의 청소년정책 이해와 공동영역 찾기, 둘째,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⑤ 조치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6>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긴밀한 상설 TF 설치”라는 조치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9명(45%)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1명(55%)이 실현될 가능성이 보통 또는 낮다고 반응하였다. 이 조치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높다는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조치 내용은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결과와 비슷하게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그 실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V-6> 조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단위: %)

항목	낮다				높다	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긴밀한 상설TF 설치	5.0	10.0	40.0	15.0	30.0	100.0
교육정책관계자의 청소년 정책이해와 공동영역 찾기	5.0	10.0	30.0	35.0	20.0	100.0
단기적으로 상설협의체구축 장기적으로 교육부로 통합	20.0	20.0	20.0	25.0	15.0	100.0
해당부처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5.0	25.0	50.0	20.0	100.0
연계·협력을 위한 독립적 제3기구설치와 법제도 마련	20.0	25.0	40.0	15.0		100.0

두 번째, “교육정책 관계자의 청소년정책 이해와 공동영역 찾기” 라는 조치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1명(55%)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9명(45%)이 실현될 가능성이 보통 또는 낮다고 반응하였다. 이 조치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낮다는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비록 이 조치 내용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기적으로 상설협의체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교육부로 통합”이라는 조치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8명(4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2명(60%)이 실현 가능성이 보통이거나 낮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이 조치 내용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실현 가능성도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조치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명 중 14명(7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조치 내용이 중요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조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연계·협력을 위한 독립적 제3기구의 설치와 관련 법제도 마련”이라는 조치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7명(85%)이 그 실현 가능성이 보통이거나 낮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3명(15%)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조치 내용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회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게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조치 내용은 크게 1가지를 들 수 있다. 그 1가지 정책 내용은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⑥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타당도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7>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 관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7명(35%)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3명(65%)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

였다.

두 번째, “대통령 직속 통합기구로 설치하여 범 국민대표들이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8명(40%)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2명(60%)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표 V-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

(단위: %)

항목	전혀타당 하지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	아주 타당	계
국무총리산하고위 관료, 민간 전문가	5.0	15.0	45.0	25.0	10.0	100.0
대통령직속통합기구 -범 국민대표들		30.0	30.0	30.0	10.0	100.0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5.0	55.0	25.0	5.0	100.0
교육인적자원부학교 정책국에실무협의회 -양정책부처의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5.0	15.0	30.0	40.0	10.0	100.0
중앙은 국무총리산하, 지방은 시·도 교육청 -정책입안자, 청소년 현장전문가, 교사		5.0	50.0	30.0	15.0	100.0
국무조정실사회문화조정 관주재협의회-양정책 실무자국·과장, 사무관		20.0	40.0	35.0	5.0	100.0
국장급 공동협의기구 -양부처가 격년제로 주관, 양 정책관계자들	5.0	25.0	30.0	25.0	15.0	100.0
시·도교육청에 협의기구 -청소년NGO, 학부모단체, 교사		35.0	20.0	25.0	20.0	100.0

세 번째, “교육인적자원부에 두고 청소년위원회,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6명(30%)만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네 번째,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 각 10명씩 반수가 나왔다.

다섯 번째, “중앙은 국무총리 산하, 지방은 시도교육청에 설치하여 정책입안자, 청소년 현장전문가, 교사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1명(55%)만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여섯 번째,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협의체를 설치하고 양 정책실무자 국·과장, 사무관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8명(40%)만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일곱 번째, “국장급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양 부처가 격년제로 주관하며 양 정책관계자들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8명(40%)만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여덟 번째, “시도교육청에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청소년NGO, 학부모단체, 교사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9명(45%)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고, 11명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타당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양 정책부처의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것이다.

⑦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관계자 참여가 실현될 가능성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8>에 제시되어 있다.

<표 V-8>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관계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단위:%)

항목	낮다				높다	계
국무총리산하 -고위관료와 민간전문가		30.0	40.0	30.0		100.0
대통령직속통합기구 -범 국민대표들	10.0	55.0	25.0		10.0	100.0
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위 원회,여성부,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담당공무원	10.0	10.0	40.0	30.0	10.0	100.0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양정책부처의담당 국장,과장,사무관,학계, 민간전문가	5.0		40.0	45.0	10.0	100.0
중앙은 국무총리산하, 지방은 시·도교육청-정책입안자, 청소년 현장전문가, 교사		20.0	60.0	20.0		100.0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 관주재 협의회-양정책실무자 국·과장, 사무관		30.0	50.0	15.0	5.0	100.0
국장급공동협의기구 -양 부처가 격년제로 주관, 양 정책관계자	5.0	25.0	30.0	25.0	15.0	100.0
시·도교육청에 협의기구 -청소년NGO,학부모단체,교사		40.0	20.0	20.0	20.0	100.0

첫 번째,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 관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6명(30%)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 14명(70%)이 실현 가능성이 보통 또는 낮다고 반응하였다.

첫 번째,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 관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7명(35%)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3명(65%)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두 번째, “대통령 직속 통합기구로 설치하여 범 국민대표들이 참여”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2명(10%)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8명(90%)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이 설치 소재와 관계자 참여 방안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교육인적자원부에 두고 청소년위원회,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8명(40%)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 12명(6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네 번째,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양 정책부처의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참여”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1명(55%)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9명(45%)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비록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더 많아서 이 방안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중앙은 국무총리 산하, 지방은 시도교육청에 설치하여 정책

입안자, 청소년 현장전문가, 교사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매우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4명(20%)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에 16명(80%)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여섯 번째,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협의체를 설치하고 양 정책실무자 국·과장, 사무관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4명(2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으나 16명(8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일곱 번째, “국장급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양 부처가 격년제로 주관하며 양 정책관계자들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8명(4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2명(6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여덟 번째, “시도교육청에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청소년NGO, 학부모단체, 교사 참여” 라는 협의체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8명(4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에 12명(6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양 정책부처의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⑧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9>에 제시되어 있다.

<표 V-9>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

(단위: %)

항목	전혀중요하지않음	중요하지않음	보통	중요	아주중요	계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			20.0	45.0	35.0	100.0
청소년경제활동참여와 직업탐색교육			20.0	65.0	15.0	100.0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체험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5.0	45.0	50.0	100.0
수련활동최소시간이수 제도 도입과 학생생활 기록부제도 도입	5.0	15.0	35.0	15.0	30.0	100.0
정치참여 활동과 민주시민교육		10.0	60.0	20.0	10.0	100.0
양정책의활동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5.0	70.0	25.0	100.0
청소년상담활동과 학생상담		5.0	10.0	75.0	10.0	100.0
청소년금주·금연활동과 학생지도		15.0	30.0	50.0	5.0	100.0

첫 번째,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이라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6명(80%)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4명(20%)이 보통이라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 중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이 상호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와 직업 탐색 교육”이라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6명(80%)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4명(20%)이 보통이라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 중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와 직업 탐색 교육이 상호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이라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9명(9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명(5%)이 보통이라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 중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이 상호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수련활동 최소 시간 이수제도 도입과 학생생활기록부 제도 도입”이라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20명 중 9명(4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한 반면에 11명(55%)이 보통 또는 중요하지 않거나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이 내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정치참여 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20명 중 6명(30%)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한 반면에 14명(70%)이 보통 또는 중

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이 내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여섯 번째, “양 정책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9명(9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명(5%)이 보통이라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정책 및 학교교육정책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 연계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청소년상담활동과 학생상담”이라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7명(8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3명(20%)이 보통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상담활동과 학생상담이 상호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청소년 금주·금연 활동과 학생지도”라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전체 20명 중 11명(55%)이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하다고 반응한 반면에 9명(45%)이 보통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비록 중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으나 이 내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 할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5가지는 정도가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5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둘째, 양 정책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셋째, 청소년상담활동과 학생상담, 넷째,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 다섯째, 청소년경제활동 참여와 직업 탐색 교육이다.

⑨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실현될 가능성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

(단위: %)

항목	낮다				높다	계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		5.0	25.0	45.0	25.0	100.0
청소년경제활동 참여와 직업탐색교육			30.0	70.0		100.0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5.0	15.0	50.0	30.0	100.0
수련활동최소시간 이수제도도입과 학생생활기록부 제도도입	5.0	20.0	35.0	15.0	25.0	100.0
정치참여활동과 민주시민교육		20.0	70.0	10.0		100.0
양정책의활동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5.0	15.0	40.0	25.0	15.0	100.0
청소년상담활동과 학생상담	5.0		35.0	50.0	10.0	100.0
청소년금주·금연활동과 학생지도		15.0	30.0	45.0	10.0	100.0

첫 번째,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이라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4명(7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6명(30%)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 중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이 상호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그 실현 가능성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와 직업 탐색 교육”이라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전문가 20명 중 14명(7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에 6명(30%)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 중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와 직업 탐색 교육이 상호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그 실현 가능성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이라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6명(8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4명(2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 중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이 상호 연계 및 협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수련활동 최소 시간 이수제도 도입과 학생생활기록부 제도 도입”이라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20명 중 8명(4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에 12명(6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이 내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정치참여 활동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20

명 중 2명(1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에 18명(9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이 내용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며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여섯 번째, “양 정책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8명(4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2명(6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정책 및 학교교육정책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 연계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났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좀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 번째, “청소년상담활동과 학생상담”이라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 중 12명(6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8명(4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좀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덟 번째, “청소년 금주·금연 활동과 학생지도”라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전체 20명 중 11명(55%)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에 9명(45%)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좀더 많으나 이 내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 할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3가지는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3가지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둘째,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 셋째, 청소년경제활동 참여와 직업 탐색 교육이다.

⑩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찬성한 내용의 타당도를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1>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

(단위: %)

항목	전혀타당하지않음	타당하지않음	보통	타당	아주타당	계
활동이수기록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임		10.0	20.0	50.0	20.0	100.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례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5.0	30.0	50.0	15.0	100.0
학생봉사활동은 모범사례이므로 다른 활동으로 확대적용 필요		5.0	30.0	35.0	30.0	100.0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21세기글로벌리더십 함양으로 국제경쟁력강화	5.0		35.0	40.0	20.0	100.0
다양한 교과 외 체험활동으로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함		5.0	10.0	55.0	30.0	100.0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대안 마련하여 대책 수립		10.0	20.0	50.0	20.0	100.0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때까지 한시적 제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0.0	40.0	45.0	5.0	100.0

첫 번째, “활동이수기록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임”이라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4명(70%)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6명(30%)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두 번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례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3명(65%)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7명(35%)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세 번째, “학생봉사활동은 모범사례이므로 다른 활동으로 확대 적용 필요”라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3명(65%)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7명(35%)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네 번째,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21세기 글로벌리더십 함양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2명(60%)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한 반면에 8명(40%)이 보통 또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다섯 번째, “다양한 교과 외 체험활동으로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함”이라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7명(85%)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3명(15%)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여섯 번째,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대안 마련하여 대책 수립”이라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타당하다는 의견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4명(70%)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6명(30%)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일곱 번째,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때까지 한시적인 제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0명(50%)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한 반면에 10명(50%)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찬성한 내용의 타당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3가지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3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이수기록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장려한 정책임, 둘째, 다양한 교과 외 체험활동으로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함, 셋째, 학생 봉사활동과 같이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대안 마련하여 대책 수립이다.

⑪ 양 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의 확대·시행이 실현될 가능성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양 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의 확대·시행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2 >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될 가능성

(단위: %)

구분	낮다				높다	계
%		15.0	30.0	45.0	10.0	100.0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20명 중 11명(55%)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 9명(45%)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비록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⑫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의 타당도를 조사대상자(전문가)들이 반응한 결과는 <표 V-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3>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

항목	전혀타당하지않음	타당하지않음	보통	타당	아주타당	계
학생봉사활동은 입시점수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그릇된 정책이므로 사례가 될 수 없음	5.0	40.0	20.0	25.0	10.0	100.0
다양한 청소년활동기록의 진학 시 인센티브부여는 활동의 도구화와 대학 서열의 심화를 가져옴		50.0	30.0	15.0	5.0	100.0
허위 학생봉사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생과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목적 성취 못할 것		40.0	10.0	35.0	15.0	100.0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활동의 확대시행 결과를 대학에서 경시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임		30.0	30.0	25.0	15.0	100.0

첫 번째, “학생봉사활동은 입시점수를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그릇된 정책이므로 사례가 될 수 없음” 이라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3명(65%)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거나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7명(35)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고 반응하였다.

두 번째, “다양한 청소년활동기록의 진학 시 인센티브 부여는 활동의 도

구화와 대학서열의 심화를 가져옴”이라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6명(80%)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4명(20%)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세 번째, “허위 학생봉사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목적 성취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0명(50%)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10명(50%)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네 번째,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활동의 확대시행 결과를 대학에서 경시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였다. 전체 20명의 전문가들 중 12명(60%)이 보통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응한 반면에 8명(40%)이 타당 또는 아주 타당하다고 반응하였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의 타당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체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위 학생봉사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목적 성취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만 타당하다는 의견과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⑬ 자율적 활동의 권장으로 실현될 가능성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 활동의 권장으로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V-14>에 제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활동이 자율적 활동의 권장으로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회의적이었다. 전체 20명 중 4명(2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 8명(40%)이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나머지 8명(40%)은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이 교육정책과 활발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V-14> 자율적 활동의 권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단위: %)

구분	낮다				높다	계
%	15.0	25.0	40.0	20.0		100.0

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정책 연계 효과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정책 연계 효과성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나타낸 반응의 결과는 <표 V-15>에 제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정책 연계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 20명 중 16명(80%)이 조금 효과가 있음 또는 아주 효과가 큼이라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4명(20%)이 보통 또는 별로 효과가 없음이라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도입하여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정책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표 V-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 정책 연계 효과성

(단위: %)

구분	전혀 효과 없음	별로 효과 없음	보통	조금 효과 있음	아주 효과 큼	계
%		10.0	10.0	55.0	25.0	100.0

⑮ 학생봉사활동제도와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들이 확대·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
학생봉사활동제도와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들이 확대·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나타낸 반응의 결과는 <표 V-16 >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봉사활동제도와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들이 확대·시행될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좀 더 우세하였다. 전체 20명 중
13명(65%)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반응한 반면에 7명(35%)이 그 가능성
이 낮다고 반응하였다.

<표 V-16> 학생봉사활동제도와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들이 확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

(단위: %)

구분	낮다				높다	계
%		15.0	20.0	60.0	5.0	100.0

(4) 소결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그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원인은 크게 5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5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시험 준비 위주
의 현안 교육정책, 둘째,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 중 학교교육에의 편중, 셋
째, 상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 넷째, 양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파트너 의식의 부족, 다섯째, 양 정책의 상설 실무협의체 기구의 부재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에 대해
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내용은 크
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그 5가지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청소년정책, 둘째,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셋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
책, 넷째,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다섯째,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게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 내용은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그 5가지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둘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 셋째,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넷째,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 다섯째,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활용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에 대해 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내용은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그 2가지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관계자의 청소년정책 이해와 공동영역 찾기, 둘째,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게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조치 내용은 크게 1가지를 들 수 있다. 그 1가지 정책 내용은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타당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양 정책부처의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양 정책부처의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 할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5가지는 정도가 중요

또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5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둘째, 양 정책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셋째, 청소년상담활동과 학생상담, 넷째,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 다섯째, 청소년경제활동 참여와 직업 탐색 교육이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 할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3가지는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3가지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둘째,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 셋째, 청소년경제활동 참여와 직업 탐색 교육이다.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찬성한 내용의 타당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3가지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3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이수기록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장려한 정책임, 둘째, 다양한 교과 외 체험활동으로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함, 셋째,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대안 마련하여 대책 수립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의 타당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체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위 학생봉사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목적 성취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만 타당하다는 의견과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이 자율적 활동의 권장으로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회의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정책 연계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봉사활동제도와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들이 확대·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좀 더 우세하였다.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향과 과제²⁵⁾

1) 청소년정책에서 생각하는 연계·협력의 방향과 과제

앞서 고찰된 것과 같이 청소년정책 관계자와 학교교육정책 관계자 사이에는 분명 양 정책의 연계·협력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다를 것이다. 그것은 이미 2차 델파이조사에서 물은 것과 같이 양 정책이 상호 연계·협력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델파이에서 분석된 5가지 주된 원인으로는 첫째, 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현안 교육정책, 둘째,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 중 학교교육에의 편중, 셋째, 상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 넷째, 양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파트너 의식의 부족, 다섯째, 양 정책의 상설 실무협의체 기구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양 정책 관계자들 간의 상호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설 실무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위의 델파이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와 둘째 이유는 교육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향과 과제는 어떻게 상대 정책에 대한 상호 인식과 지식의 부족에 대한 갭을 줄어나갈 수 있는냐에 관한 것과 다른 하나는 파트너십을 가진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상설협의체의 구성이다. 이 두 가지 큰 방향과 과제는 서로 다른 방향과 과제가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청소년정책 관계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교교육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계·협력을 피하여야 한다. 앞서 서술한 설문조사 결과를 되돌아보면 청소년정책 관계자들은 학교교육정책 관계자들 보다 연

25) 이 V장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전문가 workshop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욕구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게 나왔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청소년정책 관계자들이 더욱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정책 관계자들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양 정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델파이 결과분석에 따른 양 정책의 연계·협력 방향과 과제가 실증적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정책의 다수 전문가들은 저 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부처의 명칭을 개칭하여 교육을 인적자원의 개발로 이해하고 있는 현 교육부처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양 정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호 구체적 협의를 통하여 연계·협력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청소년정책의 성과가 학교교육정책에 들어가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에게 효과를 주도록 한다. 양 정책의 실무 협의체의 구성을 전제로 법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지금까지 일부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학생들이나, 요지원 대상청소년들에게만 주어졌던 청소년정책의 효과가 전체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양 정책의 연계·협력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정책을 보완하는 역할과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중복된 정책을 피하면서 연계·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사실 청소년정책의 태동 이유가 애초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급속히 사회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므로 학교교육정책이 청소년들에게 다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이 학교 밖에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 정책의 상호 연계·협력 속에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혁신의 대상으로 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가 부처 간 중복투자 되는 업무를 피하고 상호 연계·협력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부처 간 업무의 연계와 협력, 조정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은 우선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차 델파이에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에 대해 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의 연계·협력과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그리고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연계·협력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차원의 활동이 서로 연계·협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한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생활시간을 분석해 볼 때 공부하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제대로 청소년들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교육정책에서 생각하는 연계·협력의 방향과 과제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정책에서 생각하는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협력 방향과 과제는 청소년정책 관계자들만의 생각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정책에서 생각하는 연계·협력의 방향과 과제는 일부 청소년정책 관계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다년 간 학교교육 차원에서 보고 겪어왔던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보완적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

첫째,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에 있어서 양 정책의 전문인력 간 상호교류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1차 델파이에서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양 정책의 상호 인지도를 높이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간 일정기간 상호 교환근무와 같은 교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법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정책의 실질적 수행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예산과 이의 집행도 법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양 정책의 관계자들은 이미 설문조사와 델파이를 통하여 양 정책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적교류라든지,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학교교육정책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정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평생교육 학습도시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등 학교교육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주로 학교 밖에서 수행되는 청소년정책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일찍부터 가져왔고 사실 양 정책의 연계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차원에서 실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은 장기적 실천전략으로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현행 교육체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학년부터 내신성적을 등급제로 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시키는 교육정책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입시위주의 과열 교육으로 불행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다. 하지만 내신성적에 학교에서의 학업점수만을 보지 말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도 평가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협력 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이렇게 청소년활동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논술과 같은 또 하나의 학생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계몽과 이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실천전략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보고서는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이 절에서는 연구의 종합적 결과로서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실천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실무자들 간 최우선적으로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앞서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만남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만나지 않고 뜻만 가지고 있다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무자 간의 만남을 위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양 정책관계자들 특히, 청소년정책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만남이 성사되면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같은 다음 단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는 정기적인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study group과 같은 제도가 운영되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먼저 중앙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 큰 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은 교육청이나 지방청소년행정체계에서 시행되도록 한다. 중앙차원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의 소재, 인력구성, 예산, 법제도 개선과 같은 큰 내용을 다루고, 실제로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과 같은 실천은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양 정책의 지역 실무 행정체계 내에서 소화되도록 한다.

셋째,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관계자들은 연계·협력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수평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협의에서 성공적 결과의 전제조건으로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요구된다. 현실적으

로 학교교육정책이 청소년정책보다 모든 면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대의적 차원에서 진지하고도 성실한 수평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매년 예산편성 시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해 주어야 좋은 이상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 양 정책의 관계자들은 연계·협력 차원에서 공동기금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협의하여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매년 누락되지 않고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은 중앙단위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점차 지방단위로 확산하여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 정책의 연계·협력이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할 수가 있다. 특히, 청소년업무의 지방행정체제와 조직이 매우 미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략적으로 양 정책의 연계·협력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연계·협력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아간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정책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과 같은 사례를 양 정책이 연계·협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고 일반화하여 학교주변의 청소년시설이나 기관과 한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청소년정책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학교교육정책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불신을 받고 있는 현행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양 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공동으로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정책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은 청소년정책의 청소년봉사활동과 그 내용과 대상이 같다. 따라서 학교교육정책에서 관장하기 어려운 학생봉

사활동에 대한 인증 제도에 대한 도입을 청소년정책 내에서 수련활동인증제와 연계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봉사활동에서 구축한 봉사활동 정보들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덟째, 델파이를 통한 실증적 결과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양 정책 연계·협력의 전략적 실천대상으로 공략한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에 대해 2차 델파이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게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둘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 셋째,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넷째,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 다섯째,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활용이다.

여기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 질문에는 청소년활동 중 가장 연계·협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대상이 바로 청소년정책의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교육정책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청소년정책의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정책의 활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사실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이 연계·협력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연계 활용인데 이에 대한 연계·협력은 전략적으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홉째, 학교와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들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네트워크 협약을 맺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차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학교소재의 지역사회 내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등의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인력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인프라들이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연계·협력되어야 한다.

열째,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급단위의 청소년활동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볼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에는 청소년시설들의 수준이 미흡하거나, 프로그램의 빈곤, 청소년지도사들의 수준이 낮다는 것 등이 매번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은 많은 부분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활동들이 학교단위로나 학년단위의 대규모 인원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청소년활동은 대부분 학습의 연장선에서나,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소규모 학생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지도효과와 프로그램 이용효과, 시설이용 효과 등 전체적인 활동 만족도가 높을 수뿐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급단위 이상의 학생활동은 가급적 예외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청소년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열한째, 학교교육정책에서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승진가산점 제도는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울산 5개 교육청에서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보면 인사 상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²⁶⁾을 통해 많은 교사들의 지도아래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열두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동참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내용들에 관하여 우리 학부모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양 부처는 양 정책의 연계·협력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지, 교육개혁과는 어떠한 연관 관계에 놓여있는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열셋째, 다양한 청소년활동이나 학생들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화학교의 확대를 위

26) 관계법령인 「교육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1조4항(선택가산점) 9호에“청소년단체활동지도”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한다. 대학입학만이 유일한 진로의 길로 여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이제 한류(韓流)와 같은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게임, 음반, 영화 등 문화산업의 활성화로 청소년들의 진로는 다양화되었다. 실제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문화산업의 생산자로서 문화산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73.3%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문화산업 관련 학과 진학(46.5%)이나 진로결정(47.3%)은 반수 가깝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민희·이동연·김상우, 2001: 155-163)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특성화학교의 확대와 활성화는 매우 바람직한 연계·협력의 정책대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VI. 결 론 :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2. 정책제언

VI. 결 론 :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고 양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양 정책의 담당공무원들과 교사 및 청소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연계·협력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과 관련된 사례들을 연구하였고,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양 정책의 연계·협력 방안을 위해 1차, 2차 두 차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결과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역사를 고찰하면 양 정책은 그 동안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정책을 수행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었고, 찾아야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평행선에 가까운 정책 수행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의 결과는 국가예산의 중복투자와 함께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져 그 동안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찾아볼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우리 시대는 급변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은 혁신적으로 변화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정부 부처 간 정책의 연계·협력과 조정을 통해 중복된 투자를 막아 예산의 손실을 막고, 정

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가의 정부운영 방침에 부응하여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그 성과가 국가와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교육정책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생들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내용은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과 매우 관련이 깊고 청소년정책과 중복적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가능한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양 정책의 연계·협력이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현황에 대한 평가분석을 살펴보면 양 정책의 연계·협력 필요성이 더욱 잘 드러나 있다. 현행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간의 연계·협력 수준은 법적으로는 잘 구비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적 규정이 시행에 있어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부분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양 정책의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 간 상호 인적 교류 및 협력이 아주 미약하고, 청소년시설과 학교교육용 시설의 상호 공동 활용 및 운영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용 및 학생용 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예는 아주 적었다.

양 정책 간의 일부 연계·협력의 우수 사례들이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 관련 기관 혹은 단체들과 각 급 학교 간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맺어지는 연계·협력이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혹은 지방 정부 수준에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공식적인 연계·협력 활동은 거의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결국,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간의 연계·협력은 이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준비 상태를 잘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학교교육정책 추진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청소년 관련기관과

공무원에 협력하느냐에 연계·협력 체제 구축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실태조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16개 광역시·도별로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6명과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명, 청소년지도자 227명, 교사 519명으로 총 응답대상자는 953명 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청소년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 두 집단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과 적극적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물음에서는 주무부처간의 인식 및 노력부족이 56.0%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그 다음이 법·제도의 취약이 15.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행정체계가 42.6%로 가장 높았다. 양 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는 체험활동이 35.7%로 가장 높았다. 양 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교봉사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청소년활동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8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확대 적용시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으로는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이 27.3%와 방과 후 동아리자치활동(생활권)이 27.0%로 높게 나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해서는 반수가 모르고 있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에 대해 청소년관계자들은 협력체제 부재와 같은 법제도의 어려움을, 학교관계자들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적은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양 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교봉사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청소년활동들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집단이 더 많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이를 가장 먼저 적용하여야 할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과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은 방과 후 청소년단체활동(생활권)을, 교사와 청소년지도자는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생활권)을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으로 응답하였다.

위에서 설문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수행된 델파이 기법을 통한 20명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그 타당성을 물은 결과, 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현안 교육정책(90%)과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 중 학교교육에의 편중(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 정책이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물은 결과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95%),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95%),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90%),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90%)로 모든 청소년활동들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의 연계·협력이 실현될 가능성도 95%로 높게 나온 사실이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에 대해 그 중요도(85%)와 그의 실현 가능성(75%)에 대한 물음 결과 높은 응답률은 보인 내용은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양 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의 타당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물음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주었는데 그 중 타당하고 실현가능하다고 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양 정책부처의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것이었다.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찬성한 내용의 이유에 대한 물음에서는 다양한 교과 외 체험활동으로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함(85%), 활동이수기록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장려한 정책임(70%)의 순으로 나타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반응(80%)을 보였다. 학생 봉사활동제도와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들이 확대·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조금 더 우세(65%)하였다.

2. 정책제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총 정리한 결과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처음부터 양 정책의 연계·협력의 대상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너무 방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아 연구 범위를 연구목적에 맞게 축소하였다. 즉, 양 정책에 있어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에서의 학생활동들이 어떻게 연계·협력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현행 학교교육정책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의 시간이수제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다양한 청소년활동들도 기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정책을 통해 활동시설을 늘리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도 학생들이 입시준비를 위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소년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교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전인교육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비록 교육지책으로 타율적이기는 하지만 대학입학 시에 활동기록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었다. 하루 빨리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개선되어 이러한 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연구의 결과를 모아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언한다.

• 연계·협력을 위한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 •

-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양 정책 관계자들 간의 상호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설 실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무자들 간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먼저 중앙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과 같은 큰 틀을 마련하거나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천은 점진적으로 교육청이나 지방청소년행정체계에서 시행되도록 한다.
- 양 정책의 연계·협력에 있어서 상설 실무협의체의 구성 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양 부처 인력 간 상호교류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연계·협력을 위한 수평적 의사소통 •

-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관계자들은 연계·협력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수평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양 정책의 담당자들의 실무 협의에 있어서의 수평적 의사소통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정책 관계자들은 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학교교육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계·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시너지 효과 증진 •

-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양 정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정책을 보완하는 역할과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중복된 정책을 피하면서 연계·협력을 이루어 양 정책이 갈등 없이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같은 청소년정책의 성과가 학교교육정책의 제도에 들어가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과 전체 청소년들에게 효과를 주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

-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은 우선적으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교육정책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 시간인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청소년활동들도 양 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 델파이를 통한 실증적 결과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양 정책 연계·협력의 전략적 실천대상으로 공략한다.
-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급단위나 동아리 단위의 청소년활동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연계·협력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

- 최근 학교교육정책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정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협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이루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와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들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네트워크 협약을 맺는 등의 여건 마련을 통해 학교차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 연계·협력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

-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법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정책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학교교육정책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불신을 받고 있는 현행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양 정책의 연계·협력 차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학교교육정책에서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다양한 청소년활동이나 학생들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화학교의 확대를 위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한다.

● 연계·협력을 위한 예산 항목의 신설 ●

-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매년 예산편성 시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관계자들은 연계·협력 차원에서 공동기금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협의하여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연계·협력을 위한 예산이 매년 누락되지 않고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 학부모 대상 연계·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 ●

-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동참하도록 한다.
- 대부분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내용들에 관하여 우리 학부모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양 부처는 양 정책영역의 민간단체들과 함께 연계·협력이 자녀들의 성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지, 교육개혁과는 어떠한 연관 관계에 놓여있는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남청소년수련관 편(2005). 학교연계 프로그램. 서울: 강남청소년수련관
- 경기도·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2). 2002년도 청소년정책 토론회. 서울: 문영사.
- 경기도·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2). 2002년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담당공무원 연수회.
- 공은배·김이경·신상명(2002). 한국의 교육정책 평가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편(1999). 적성과 소질을 살려주는 교육, '99특기·적성교육활동 우수사례집.
- 교육부 편(2000). 한국 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 방향.
- 교육부(2001).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과정자료 29. 서울: 교육부
- 구학봉(1998).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과 후 교육활동. 21세기 청소년포럼.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편. 미래사회 청소년정책의 방향진단.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정책발전 세미나
- 김 민(2004).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틀거리 세우기. 도서출판 청협, 새 시대 청소년운동의 방향. pp. 76-83. 서울: 도서출판 청협
- 김수천(2001). 제7차 교육과정의 쟁점. 새교육.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 김신복(1996). 교육정책론. 서울: 하루기획출판.
-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1). 「주5일 근무(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정책 방향과 대책
- 문화관광부 편(2004). 주5일제 도입과 청소년 스포츠활동 증진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편(200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구축모형만들기본설계(안).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편(200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Manual.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부 편(1996).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종합결과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편(2005). 청소년학 전공자의 활동영역과 표준교과과정.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춘계학술대회
-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편(2005). 학교연계프로그램.
- 서정화(1986). 교육정책과정의 평가, 교육평가연구의 과제와 방향. 한국교육학회.
- 송병국(2004). 영국과 독일의 청소년 고용정책 성과. 진로교육연구 제17권. 서울: 한국진로교육학회.
- 윤정일 외(2002).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 윤철경(2003). 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청소년문화포럼 7호. 서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이광호(1999). 학교 특별활동과 지역사회 수련활동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광호(1999).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외(2005).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이동연·김상우(2001). 청소년의 문화산업 참여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외(1998).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김영한·서정아(1999). 청소년 정책·사업종합평가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영수(1991). 교육정책 평가의 논리와 실제적 방법론 탐색: 정책규범에 대한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순(2002). 한국과 영국의 청소년고용증진정책 비교연구: 직업훈련중심. 한국사회복지학 제49호. 서울: 한국사회복지학.
- 정일환(2000). 교육정책론: 이론과 적용. 서울: 원미사.
- 조영승(1998). 청소년육성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차경수(2000). 한국의 청소년정책. 서울: 양서원.
- 차정섭(2005).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pp. 35-7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편(2001).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2001년 9월 KEDI 교육정책포럼.
- 한국교육개발원(2002).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 방안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한국의 청소년정책 통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4). 문화시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3). 청소년정책의 국제적 동향 및 발전 방향.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인적자원정책 조정·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02). 새 시대의 청소년정책과제. 세미나자료.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1). 한국청소년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34호). 서울: 대산문화사.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0). 전국 청소년 수련활동 관계자 워크숍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9). 신지식청소년육성을 위한 수련활동 모형 및 프로그램 사례 자료집. pp. 140-143 참고, 세미나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5). 교육개혁과 청소년육성정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연구원 편(1991).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육성과 학교교육의 연계 방안. 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학연구, 제6권 제1호. 서울: 대산문화사.
-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학총론. 서울: 양서원.
- 한림과학원 편(1996). 교육정책논리와 최적의 선택. 서울: 소화도서출판사.
- 한상철(2002). 한국의 육성정책의 문제 진단과 분석. 오늘의 청소년 170 호.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선옥(2003).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육성과 보호를 위한 학교의 기능과 역할 - 서초구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 워크숍 자료집, pp.55~64,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승희·천정웅(1994). 주요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길동(2004). 청소년이 미래다.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재환·윤기석(2003). 주요국의 평가제도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차경수(1998). 새 학교문화 창조와 청소년정책의 과제. 21세기 청소년포럼.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천정웅·김정주(1999).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특성 비교연구: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학연구.
-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 편(2004). 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것인가.

- 청소년 선거권 토론회 자료집.
- 최충욱(1996). 학교교육과 청소년수련활동 연계방안. 청소년수련활동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UN정기총회 보고서 편(1995).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 계획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한 UN의 청소년정책 실행 지침.
- Becky, S. and Meyer, F. and Ragi, T.(2001). *Youth policy and youth services in France*. Ministe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Paris.
- Becky, S. and Perrett, J.(1999). *Youth policy and youth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National Youth Agency Leicester.
- Benson, P. L. and Pittman, K. J.(2001).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2001). *Tomorrow's future*. London: CYPU, March.
- Coleman, J. C. and Warren-Adamson, C.(1992)(eds.). *Youth policy in the 1990s*. London: Routledge.
- Delgado, M.(2002). *New frontiers for youth develop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unities(2002).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Helena, H. and John, B. (1997). *Youth and Life management Research Perspectives*. Helsinki: Iiopistopaino Helsinki University Press.
- Intituto de la juventud(1999). *Report on Youth Policies in Spain*. Madrid: A.G. Grupo, S.A.
- Kohler, M. C.(1982). *Developing responsible youth through youth participation. Youth Participation & Experiential Education*. New York: The Haworth Press.
- Lindley, R. M.(1996). *The school-to-work transition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996, Vol.135, no2. PP. 159~180
-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2003). *National report on youth policy in Norway*. Oslo: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 Morrissey K. M. and Werner-wilson, R. J.(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out-of-school activitie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Annual Meeting at 2003, Vancouver, Canada*
- Oloff, H.(2003). *Putting the youth in youth council: Leadership for Student Activities*

Monthly Magazine Feb. 2003

- Orr, M. T.(1998). *Integrating secondary school and community colleges through school-to-work transition and education reform* : Journal of Transition and Education Reform.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3, 1998
- Partee, G.(1995). *Youth Work, Youth Development and the Transtion from Schooling to Employment in England; Impressions from a study mission*. Washington D.C.: American Youth Policy Forum.
- National Youth Commission, Philippines.(2004). *Philippine medium-term youth department plan (1999-2004)*. Manila: National Youth Commission.
- Reno, J. and Richrd, W. R.(1998). *Safe and smart: making after-school hours work for kid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U.S. Department of Justice.
- Reno, J. and Riley, R. W.(2000). *Working for children and famili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U.S. Department.
- University of Wisconsin and Policy Studies Associates(2004). *Study of after-school activities. Elementary Student Survey Spring 2004*.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and Policy Studies Associates Inc.
- Werum, R.(2002). *Matching youth and jobs? Gender Dynamics in New Deal Job Training Programs: Social Forces*, Vol 81, Number 2, December 2002. the Univercity of North Carolaina Press.
- Winter, M. de(1997). *Chi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cliffee Medical Press.
- http://www.ayc.or.kr/special/special_main.html
- http://www.gangnamyc.or.kr/3_activity/activity61.php
- http://www.nanna.seoul.kr/school_con/school.asp

부 록

1.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을 위한 조사 설문지
2.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3.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4.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협력 관련 법률
5. Finland의 청소년활동 기록부 “Study Book” 기재 내용들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정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정책입안 관련 공무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청소년 건전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 7.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건물 내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15)

육성정책연구실

(☎ 02-2188-8859/8897)

※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은 양 정책이 중복되어 투자되는 것을 막고, 서로 비슷한 정책들을 연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정책 수행을 통해 청소년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 아래 내용은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대충 안다	잘 안다	아주 잘안다
1)	귀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학교교육정책」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청소년정책」의 법·제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학교교육정책」의 법·제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__ ② 필요하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필요하지 않다 _____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3. 귀하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의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__ ② 필요하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필요하지 않다 _____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4. 귀하는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_____ ② 잘 이루어지고 있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_____ 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귀하는 만약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_____ ① 법·제도의 취약
_____ ② 주무부처 간의 인식 및 노력 부족
_____ ③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및 노력 부족
_____ ④ 학교 의사결정자의 인식 및 노력 부족
_____ ⑤ 일선 현장 담당자의 인식 및 노력 부족

6. 귀하는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_____ ① 예산의 중복투자
_____ ② 해당 부처 간 협의체나 협력통로 부재
_____ ③ 시설 및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부재
_____ ④ 학교교사와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도자 간 소통 미흡
_____ ⑤ 청소년지도 경험 및 방법의 상호 교류 차단

7. 귀하는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_____ ① 법·제도 _____ ② 행정체계 _____ ③ 인적 자원
_____ ④ 시설 등 물적 자원 _____ ⑤ 프로그램

8. 귀하는 다음 활동분야 중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_____ ① 체험학습 _____ ② 재량활동 _____ ③ 특별활동
_____ ④ 가족단위 청소년활동 _____ ⑤ 수련활동

9. 귀하는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 방안으로서 '교원과 청소년지도자 간 인적자원의 상호교류 협력 활동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__ ② 필요하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필요하지 않다 _____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10. 귀하는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 방안으로서 '각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활용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__ ② 필요하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필요하지 않다 _____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11. 귀하는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 방안으로서 '교육시설과 청소년시설 간 시설의 상호 공동 활용체제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매우 필요하다 _____ ② 필요하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필요하지 않다 _____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 다음은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포괄적인 연계·협력 방안
 에 대한 귀하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12. 다음은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을 위한 행정체계의
 연계방안을 위한 관련 문항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필요 없음	매우 필요없음
1)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 방안으로서 ‘지역단위 각급 학교와 청소년기관·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행정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①	②	③	④	⑤
2)	교육정책 담당부처와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간의 의사소통 채널에 대한 필요성은?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차원의 연계·협력 체제 구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청소년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①	②	③	④	⑤
4)	지방차원의 연계·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의 청소년 관련 부서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간의 연계·협력회의 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구체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 「학교교육정책」 제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 중 ‘학생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일정 시간 수의 활동기록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수 시간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바람직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아래의 문항들에 V표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귀하는 위의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생봉사활동’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_____ ① 매우 잘 안다 _____ ② 잘 안다 _____ ③ 대충 안다
 _____ ④ 잘 모른다 _____ ⑤ 전혀 모른다
14. 귀하는 위의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아주 바람직한 제도이다
 _____ ② 필요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제도이다
 _____ ③ 없는 것 보다 나은 제도이다
 _____ ④ 문제가 많아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15. 귀하는 위의 「청소년정책」 과 「학교교육정책」 의 연계·협력 모범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외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청소년활동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찬성 한다(아래 15-1 문항으로)
 _____ ② 반대 한다

15-1. 만일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모범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외에 다른 청소년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 적용한다면 어떤 청소년활동이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가족단위 청소년활동
- _____ ② 방과 후 청소년단체 활동(생활권)
- _____ ③ 방과 후 청소년단체 활동(자연권)
- _____ ④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생활권)
- _____ ⑤ 방과 후 동아리 자치활동(자연권)
- _____ ⑥ 국제청소년교류활동
- _____ ⑦ 청소년 취업 및 진로활동

※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구체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청소년정책」제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운영을 명시하고 있어 양 정책의 연계·협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수련활동을 통해 지·덕·체가 조화된 청소년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수련프로그램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곧 시행될 이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의 문항들에 V표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귀하는 위의 「청소년정책」제도 중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_____ ① 매우 잘 안다 _____ ② 잘 안다 _____ ③ 대충 안다
- _____ ④ 잘 모른다 _____ ⑤ 전혀 모른다

17. 귀하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서 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외에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 적용할 때 위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절대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 _____ ② 조금 영향을 줄 것이다
- _____ ③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 _____ ④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_____ ⑤ 잘 모르겠다

18. 귀하는 위의 '수련활동' 개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_____ ① '수련활동'은 '문화활동' 등 모든 청소년활동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 _____ ② '수련활동'은 자연권에서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청소년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 _____ ③ '수련활동'은 학교의 '특별활동'과 같은 개념이다.
- _____ ④ '수련활동' 개념보다는 '활동'으로 명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_____ ⑤ 잘 모르겠다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19. 귀하의 성별은?

- _____ ① 남자
- _____ ② 여자

20. 귀하의 현재 근무지역은 어디입니까?

- ___ ① 서울시 ___ ② 부산시 ___ ③ 대구시 ___ ④ 인천시
___ ⑤ 광주시 ___ ⑥ 대전시 ___ ⑦ 울산시 ___ ⑧ 경기도
___ ⑨ 강원도 ___ ⑩ 충청북도 ___ ⑪ 충청남도 ___ ⑫ 전라북도
___ ⑬ 전라남도 ___ ⑭ 경상북도 ___ ⑮ 경상남도 ___ ⑯ 제주도

21. 귀하의 현 근무지 근무연한은?

- ___ ① 1년 미만 ___ ② 1-5년 ___ ③ 6-10년
___ ④ 11-20년 ___ ⑤ 21-30년 ___ ⑥ 30년 이상

22. 귀하의 현 직무의 종류는?

- ___ ①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___ ②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___ ③ 교사 ___ ④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 탐색을 위한 1차 델파이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델파이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심사숙고하셔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 9.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건물 내

한국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연구실

(☎ 02-2188-8803/8897)

E-mail : LMH1771@youthnet.re.kr

※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은 양 정책이 중복되어 투자되는 것을 막고, 서로 비슷한 정책들을 연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공동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국가정책 수행을 통해 청소년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정책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하는 학교교육정책은 결과적으로 같은 대상을 상대로 하며, 정책의 핵심 목적도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개발-결정-집행-평가-환류 등의 과정에서 두 정책이 상호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어있지 못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구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체제 구축은, 연계·협력해야할 내용 혹은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정책의 어떤 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어떤 정책이 상호 연계·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정책

학교교육정책

1)		과	
2)		과	
3)		과	
4)		과	
5)		과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체제 구축은 정책 개발과 결정단계에서부터 정책 집행 및 평가와 환류(feedback)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들 정책 과정 중 ①어느 단계에서의 연계·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②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어느 단계의 연계·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②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해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책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결정하며, 집행하기 위해서는 ①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고, ②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② 그 이유는?

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해 상호 인력을 교류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①어떤 인력이 ②어떤 방법으로 상호 교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어떤 인력이?

② 어떤 방법으로?

6.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양 정책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협의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①협의기구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고, ②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동 협의기구에서는 ③어떤 내용을 주로 협의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②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③ 무엇을 협의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7. 2004년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하고 있다. 만일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한다면 현재 연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학생봉사활동’ 이외의 ①어떤 활동들이 연계되어야 하고 ②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어떤 활동들이 연계되어야 합니까?

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현행 학교교육정책 중 ‘학생봉사활동’ 시간 이수제도는 위의 「청소년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내용을 잘 구현하고 있는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규정 시간 이수 시 대학 등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처음 시행 시에는 허위 이수 신고 등 부작용이 많았으나 이제 잘 정착되어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청소년 봉사활동 동아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건강 형성과 함께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청소년정책에서는 이러한 순 기능적인 ‘학생봉사활동’ 의 사례를 다른 다양한 청소년활동들도 확대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교류활동, 자연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청소년활동 이수 기록 등도 상급학교 진학 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지·덕·체가 조화된 글로벌리더십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에서의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기대를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러한 기대에 찬성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② 반대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③ 만일 찬성하신다면 어떠한 사항들을 유의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상호 공동 활용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청소년 시설의 상호 공동 활용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 탐색을 위한 2차 델파이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의 제1차 델파이조사에 응답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요약하고 구조화시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 타당도, 필요성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구조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존재할 경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의견] 부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본 질문지의 답변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5. 9.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건물 내

한국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연구실 이민희 박사

(☎ 02-2188-8803/8897)

E-mail : LMH1771@youthnet.re.kr

[1]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원인에 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로 원인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원인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아주 타당하다
◇	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현안 교육정책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대상은 같은 청소년인데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이 균형 없이 학교교육에 편중되어서다.	①	②	③	④	⑤
◇	담당 부처 간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서로가 상대 정책에 대하여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인적자원개발의 학교교육정책 목표와 건전청소년 육성의 청소년정책 목표가 달라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	양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파트너의식이 없어서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서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정책의 하위 또는 부속적 정책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학교 밖 청소년정책은 교육정책과는 관계없는 비교육적 영역이라는 배타적 사고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양 정책의 업무성격과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양 정책의 상설 실무협의체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대학과 사회가 서열화 된 학벌사회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2]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간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아주중요하다	낮다	←-----→			높다
◇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청소년정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방과 후 아카데미' 와 교육복지정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봉사활동과 학생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문화활동과 학교문화예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교류활동과 국제이해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인권·참여정책과 학생회 및 CA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수련활동인증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보호정책과 학생지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청소년지도사의 학교활동 및 생활지도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3]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아주중요하다	낮다	←-----→			높다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긴밀한 상설 TF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교육정책 관계자의 청소년정책 이해와 공동영역 찾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단기적으로 상설협의체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교육부로 통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연계·협력을 위한 독립적 제3기구의 설치와 관련 법제도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4]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연계·협력을 위하여 양 정책의 협의체 기구 설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타당성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관계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	타당성					실현가능성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아주 타당하다	낮다	←-----→			높다
◇	국무총리 산하에 고위 관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대통령 직속 통합기구로 설치하여 범 국민대표들이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교육인적자원부에 두고 청소년위원회,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양 정책부처의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중앙은 국무총리 산하, 지방은 시·도교육청에 설치하여 정책입안자, 청소년 현장전문가, 교사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협의체를 설치하고 양 정책실무자 국·과장, 사무관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국장급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양 부처가 격년제로 주관하며 양 정책관계자들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시·도교육청에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청소년NGO, 학부모단체, 교사참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5]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에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에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상호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아주중요하다	낮다	<----->			높다
◇	수련활동과 방과 후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경제활동 참여와 직업 탐색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봉사활동과 학교의 체험학습, 특별활동, 재량활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수련활동 최소 시간 이수제도 도입과 학생활동기록부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정치참여 활동과 민주시민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양 정책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상담활동과 학생상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 금주·금연 활동과 학생 지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6] 「청소년정책」의 청소년봉사활동과 「학교교육정책」의 학생봉사활동 이수제도는 하나의 좋은 연계·협력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타율적이지만 학생이 정해진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면 상급학교 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됨으로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학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65%이고 반대가 3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찬성한 분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찬성 이유의 항목별 타당성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찬성 의견에 따라 양 정책의 연계·협력 차원의 확대 시행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 시행되는 것에 찬성한 내용	타당성					확대시행 실현가능성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아주 타당하다	낮다	<----->			높다	
◇	활동이수기록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임	①	②	③	④	⑤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례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	학생봉사활동은 모범사례이므로 다른 활동으로 확대 적용 필요	①	②	③	④	⑤						
◇	다양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21세기 글로벌리더십 함양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다양한 교과 외 체험활동으로 입시위주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함	①	②	③	④	⑤						
◇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대안 마련하여 대책수립	①	②	③	④	⑤						
◇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때까지 한시적인 제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7] 이미 [6] 번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학생봉사활동 사례를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학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3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반대한 분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반대 이유의 항목별 타당성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한편, 북유럽 Finland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밖에서 행한 다양한 청소년활동들을 기록한 “study book”이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 활동의 권장으로 활동이 활성화되어 입시위주교육이 극복되고 보완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타당성					자율적 활동의 실현가능성				
		전혀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아주타당하다	낮다	←-----→			높다
◇	학생봉사활동은 입시점수를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그릇된 정책이므로 사례가 될 수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다양한 청소년활동기록의 진학 시 인센티브 부여는 활동의 도구화와 대학서열의 심화를 가져옴	①	②	③	④	⑤					
◇	허위 학생봉사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목적 성취 못할 것	①	②	③	④	⑤					
◇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활동의 확대시행 결과를 대학에서 경시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임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8] 2004년 새롭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질 높은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이를 이수한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관리하여 진학 및 취업 등 필요 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활동인증제도를 통해 기존의 학생봉사활동에서의 경우와 같이 허위로 기록되는 활동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정책에서는 이러한 안전한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이 학생봉사활동 기록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됨으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정책 연계 효과성과 도입을 통해 학생봉사활동제도와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들이 확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 활동의 학교교육정책 연계 효과성					학생봉사활동제도와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들이 확대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				
전혀 효과 없다	별로 효과 없다	보통 이다	조금 효과 있다	아주 효과 크다	낮다	<----->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관련 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제 7421호]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 ③ 협의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청소년위원회

제16조의6(공무원의 파견)

- 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④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8(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① 청소년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 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4.27 대통령령 1811호]

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3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제74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 ① 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 설치)

- ① 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이하 "활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수련활동에 관한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수련활동의 기록유지 및 확인서 발급 등의 관리
 5. 다양한 활동소재를 연계한 통합적 청소년활동운영체제의 개발 및 시행
 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실시
- ② 활동지원본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이하 "지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 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 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당해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 ④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 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

- 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연령·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 ①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이하 "수련활동인증제"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지원본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는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인증위원회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에 따라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수련활동의 결과통보)

-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법인·단체는 수련활동이 종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사항을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에서 기록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제3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 1. 수련거리 인증 후 1년 이내에 해당 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방문 확인결과 인증위원회의 보완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 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4.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련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 회원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 3.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 4.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사업
 -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시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4.27 대통령령 제1811호]

제1장 총 칙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 ①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인증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⑧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활동기록 유지·관리 등)

-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가는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Finland의 청소년활동 기록부 “Study Book” 기재 내용들 】

♣ 자주 이용한 여가활동 ♣	§	
· 여가활동을 했던 단체	§	· 얻은 성과와 적성
_____	§	_____
· 여가활동의 종류 서술	§	_____
_____	§	_____
_____	§	· 장소/날짜
· 청소년들의 자기 평가학습	§	_____
_____	§	· 여가활동 책임자의 서명
_____	§	_____
· 여가활동의 시간/날짜	§	·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입
__/__/__ - __/__/__	§	_____
· 평균횟수-한주/한 달에 몇 시간	§	· 서명한 사람의 지위
_____	§	_____
	§	· 기관도장을 찍으시오
	§	_____

♣ 신뢰와 책임감의 위치 ♣	§	
· 여가활동을 했던 기관	§	· 얻은 성과와 적성(능력)
_____	§	_____
· 기관의 위치	§	_____
_____	§	_____
· 여가활동의 종류 서술	§	· 장소/날짜
_____	§	_____
_____	§	· 활동책임자의 서명
· 청소년들의 자기 평가학습	§	_____
_____	§	·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입
_____	§	_____
· 여가활동의 시간/날짜	§	· 서명한 사람의 지위
__/__/__ - __/__/__	§	_____
· 평균횟수-한주/한 달에 몇 시간	§	· 기관도장을 찍으시오
_____	§	_____
	§	

♣ 훈련코스 ♣	§	· 장소/날짜
· 코스의 이름	§	_____
_____	§	· 코스 트레이너 사인
· 코스내용	§	_____
_____	§	·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입
· 기간-시간	§	_____
_____	§	
· 코스는 ~~에 의해 운영되었다	§	
_____	§	
_____	§	
· 완료된 코스	§	
_____	§	

♣ 국제활동 ♣	§	
· 활동내용 서술	§	
_____	§	
· 활동했던 기관	§	
_____	§	
· 활동국가	§	· 얻은 성과와 적성
_____	§	_____
· 참가자는 ~~나라에서 왔다	§	_____
_____	§	_____
· 청소년들의 자기 평가학습	§	· 장소/날짜
_____	§	_____
_____	§	· 여가활동 책임자의 서명
_____	§	_____
· 활동의 시간/날짜	§	·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입
__/__/__ - __/__/__	§	_____
· 사용된 언어	§	· 서명한 사람의 지위
_____	§	_____
	§	· 기관도장을 찍으시오
	§	_____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강석환 청소년위원회 · 서기관
권일남 명지대학교 · 교수
권혁미 서울시교육청 · 장학사
김 민 순천향대학교 · 교수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김성미 교육인적자원부 · 연구사
김영운 교육인적자원부 · 과장
김용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팀장
김정대 한국수련시설협회 · 회장
김정주 체험활동연구소
김학일 교육인적자원부 · 연구관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노진영 교육인적자원부 · 사무관
박은영 교육인적자원부 · 연구관
박진규 호서대학교 · 교수
손순희 참교육전국학부모회 · 실장
유영국 교육인적자원부 · 국장
이광호 청소년위원회 · 단장
이준순 서울시교육청 · 장학관
이철호 배문중학교 · 교사
임관식 청소년위원회 · 팀장
주동범 한국해양대학교 · 교수
천희완 구로고등학교 · 교사
최윤진 중앙대학교 · 교수
최은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팀장
최정분 경기도교육청 · 연구사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5-R0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김민 · 임경희
05-R02 청소년 매니아 문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 조혜영 · 김종길
05-R03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 길은배 · 이미리 · 문성호
05-R0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김경화 · 조용하
05-R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연구 / 이민희 · 임지연 · 김흥주 · 주동범
05-R06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 오해섭 · 김진화
05-R07 청소년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 최창욱 · 김정주 · 조영희
05-R08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경준 · 최인재 · 조흥식 · 이용교 · 정익중 · 이상균
05-R08-1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 김경준 · 최인재 · 김향초 · 주재현 · 윤혜순 · 김문섭
05-R09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 이해연 · 조아미 · 박현선
05-R10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 윤철경 · 박병식 · 김현주 · 이봉주 · 김성경
05-R10-1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 윤철경 · 장해영
05-R11 청소년보호시설 · 단체의 역할 정립방안 연구 / 이춘화 · 방은령 · 윤옥경
05-R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05-R12-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 이경상 · 유성렬 · 박창남
05-R12-2 청소년비행의 상습화현상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05-R12-3 초등학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이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백혜정 · 황혜정
05-R13 청소년개발지표 연구II: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 김현철 · 김신영 · 김진호 · 송병국 · 임성택 · 임영식
05-R14 청소년 정보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 이수진 · 이인호
05-R14-1 청소년 정보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권기창
05-R14-2 청소년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책 연구 / 박영균 · 성윤숙 · 이수진
05-R14-3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 박영균 · 성윤숙 · 이인호

■ 협동연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 · 행정 · 제도환경, 외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이명진 · 이승현 (자체번호 05-R1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2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대책 연구 / 유진이 · 김영인 · 류중석 · 신현숙 (자체번호 05-R1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3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 · 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 서정아 · 김영희 · 김서연 (자체번호 0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4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대책 연구 :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
 동의 보호요인 탐색과 처치방안 / 한상철·김남선·이수연·이미연·최성열 (자체번호 0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자체번호 05-R19)

■ 수시과제

05-R20 문화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의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서동훈·김효정
 05-R21 디지털시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 이각범·황상민·조은·김옥순·배영자·강원택·유성경
 05-R22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 연구 / 한정란·이성호·강승혜·김미옥·
 김은정·김혜수·박정화
 05-R23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용역과제

05-R30 제주도 청소년문화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진호·최창욱
 05-R31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실태 및 요구조사 / 김진호·최창욱
 05-R32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이민희·김진호·최창욱·강일규·강정석·김은경·김흥주·
 김현철·성운숙·최인재
 05-R3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연구 / 김영한·이춘화
 05-R34 농어촌 청소년복지정책 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김진모
 05-R35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 오해섭·윤철경
 05-R36 청소년위원회 BPR/ISP 구축 / 성운숙·백해정·김신영·윤경원·최봉학·박흥표·정병진
 05-R37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혜영·이경상·
 최원기·Nancy Abelman
 05-R38 오늘의 청소년 (Korean Youth of Today) / 박영균·김진호
 05-R39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맹영임·박옥식·전명기
 05-R40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
 05-R41 2005 청소년백서 / 박영균·김현철
 05-R42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 최인재·최창욱·반흥식·박수선
 05-R4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 분석 연구 / 김경화·권해수·김혜영·박정선·박철현·
 이지연·장승욱·정슬기·황규희
 05-R44 청소년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 / 맹영임·길은배·김정주·김홍원·전명기
 05-R4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 길은배·이미리·이용교·임영식
 05-R46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출제지침서 / 이춘화·김영한
 05-R47 2005년 특성화수련거리·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훈련 / 임지연·민성환·신명철

- 05-R48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윤철경 · 이혜연 · 서정아 · 윤경원 · 이봉주 · 양미진
- 05-R49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 김경화 · 김현철 · 이경상 · 조혜영 · 최인재
- 05-R5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평가 2 - 공모사업성과평가 / 김경화 · 조혜영 · 최인재
- 05-R51 2005 서울시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성운숙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5-S01 「새로운 통합 청소년 정책비전 및 정책과제 토론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16)
- 05-S02 「새로운 청소년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공청회」 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3. 30)
- 05-S03 「2006년도 고유연구사업과제 발굴 · 선정을 위한 워크숍」 (3. 22)
- 05-S04 「청소년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7. 14)
- 05-S05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9. 2)
- 05-S06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9. 23)
- 05-S06-1 「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9. 23)
- 05-S0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 협력 방안」 (10. 11)
- 05-S08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Building a Community-based Safety Net for Youths at Risk)」 청소년위원회 · OECD 공동주최 (10. 11)
- 05-S09 「갈등해결 관련 민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과제」 (10. 22)
- 05-S10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II」 (11. 4)
- 05-S11 「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11. 8)
- 05-S12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서울특별시 공동주최 (11. 11)
- 05-S13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11. 11)
- 05-S14 「청소년 갈등해결 리더십 캠프」 자료집 (7. 22-24)
- 05-S15 학술세미나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가치관과 행동양식」 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최 (11. 22)
- 05-S16 「청소년 정보화정책 비전과 추진과제」 (11. 23)
- 05-S17 「청소년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연구」 워크숍 (11. 25)
- 05-S18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College Dispositions : Chicagoland Korean America」 (6. 23)
- 05-S19 해외청소년기관 초청 정책 세미나 「중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7. 12)
- 05-S20 「청소년 보호정책의 대안 탐색 : 위기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대책」 (9. 15)
- 05-S21 국정과제 청소년분야 집중토론회 「향후 10년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0. 6)
- 05-S22 OECD 전문가회의 「Policies for Youth at Risk and Community-based Partnership in Korea」 (10. 10-11)
- 05-S23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 6)
- 05-S24 「한국청소년개발원 산 · 학 · 연 정책협의회」 (12. 15-17)
- 05-S25 전문가 포럼 「또띠와 함께하는 청소년교육과 문화」 경기도문화의전당 ·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공동주최 (12. 20)
- 05-S26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2. 23)

■ 연구수행 자료집

- 05-M00 2004 연구성과 모음집 / 연구기획팀
05-M01 2005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5-M02 2005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전6권) / 연구기획팀
05-M03 청소년육성기금사업 평가 「평가편람」 / 김경화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1호 (통권 제41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통권 제42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5 - R 05

청소년 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 · 협력방안

인 쇄 2005년 12월 03일

발 행 2005년 12월 0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2005. 12.

인쇄처 문영사 (☎ 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학술센터)

ISBN 89-7816-569-9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

-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이민희 (한국청소년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주동범 (한국해양대학교 · 교수)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임지연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혜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요약

이 연구보고서는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고 양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양 정책의 담당 공무원들과 교사 및 청소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연계·협력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과 관련된 사례들을 연구하였고,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양 정책의 연계·협력 방안을 위해 1차, 2차 두 차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이론적 고찰한 결과, 먼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역사의 고찰에서 보듯이 양 정책은 그 동안 같은 청소년들을 정책대상으로 서로 다른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이 둘은 거의 평행선에 가까운 정책 수행을 해서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져 그 동안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시대는 급변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은 혁신적으로 변화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정부 부처간 정책의 연계·협력과 조정을 통해 중복된 투자를 막아 예산의 손실을 막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은 시대적 요구와 국가의 정부운영 방침에 부응하여 양 정책의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교육정책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생들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의 내용은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화를 피하는 정책과 매우 관련이 깊고 청소년정책과 중복적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가능한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양 정책의 연계·협력이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연계·협력의 실천적 모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크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함께 연계되는 ‘family-school-community’ 모형과 지역사회에 속하는 청소년 관련 인적·물적·사회적 자원들이 직접 학교로 들어가는 ‘community-to-school’ 모형, 그리고 공간은 지역사회이지만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함께하는 ‘school and community’ 모형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현황에 대한 평가분석을 살펴보면 양 정책의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 간 상호 인적 교류 및 협력이 아주 미약하고, 청소년시설과 학교교육용 시설 및 프로그램의 상호 공동 활용 및 개발·운영도 아주 미약했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혹은 지방 정부 수준에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공식적인 연계·협력 활동은 거의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결국,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간의 연계·협력은 이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준비 상태를 잘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학교교육정책 추진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청소년 관련 기관과 공무원에 협력하느냐에 연계·협력 체제 구축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실태조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16개 광역시·도별로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126명과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 101명, 청소년지도자 227명, 교사 519명으로 총 응답대상자는 953명 이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물음에서는 주무부처간의 인식 및 노력부족이 56.0%로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그 다음이 법·제도의 취약이

15.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행정체계가 42.6%로 가장 높았고,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는 체험활동이 35.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양 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교봉사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청소년활동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8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확대 적용 시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으로는 방과 후 청소년 단체활동(생활권)이 27.3%와 방과 후 동아리자치활동(생활권)이 27.0%로 높게 나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해서는 반수가 모르고 있었다.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현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에 대해 청소년관계자들은 협력체계 부재와 같은 법제도의 어려움을, 학교관계자들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적은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양 정책의 연계·협력 사례인 ‘학교봉사활동’을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청소년활동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교육정책 관련 공무원과 교사집단이 더 많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수행한 관련 전문가 20명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그 타당성을 묻은 결과, 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현안 교육정책(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연계·협력해야 할 정책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묻은 결과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과 학교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95%)과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정책과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 정책(9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에 대해 그 중요도(85%)와 그의 실현 가능성(75%)에 대한 물음 결과 높은 응답률을 보인 내용은 해당 부처 간 MOU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에 대한 물음에서는 다수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양 정

책부처의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학계,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찬성한 내용의 이유에 대한 물음에서는 다양한 교과 외 체험활동으로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85%)한다는 답이 제일 높았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반응(80%)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제시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은 첫째, 연계·협력을 위한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 둘째, 연계·협력을 위한 수평적 의사소통, 셋째,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시너지 효과 증진, 넷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다섯째, 연계·협력의 실천을 위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성, 여섯째, 연계·협력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일곱째, 연계·협력을 위한 예산 항목의 신설, 여덟째, 학부모 대상 연계·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 등이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방법	7
II.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이론적 고찰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관계 고찰	11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시대적 의미	30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모형 고찰	44
III.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현황 및 실태 분석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현황 분석	57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실태 조사	82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현황 평가	109
IV. 국내외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사례	
1. 국내의 연계·협력 사례	121
2. 국외의 연계·협력 사례	140
3. 연계·협력 모범사례로서의 학생봉사활동 분석	154
V. 한국의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개선방안	
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토피카 조사	165
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방향과 과제	212
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의 실천전략	216
VI. 결론	
1. 연구결과	223
2. 정책제언	227
참고문헌	233
부록	239

표 목차

<표Ⅱ-1> 단계별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12
<표Ⅱ-2> 청소년정책기구 변천의 역사	27
<표Ⅱ-3>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 추이	30
<표Ⅱ-4> 연령별 사이버 범죄 현황	33
<표Ⅱ-5> 시기별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내용	35
<표Ⅱ-6> 제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재량활동 내용	41
<표Ⅱ-7>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학생 활동 비교	41
<표Ⅱ-8>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	49
<표Ⅲ-1> 학교정책실 관장 학교교육정책 및 업무	66
<표Ⅲ-2>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 과 관장사무	72
<표Ⅲ-3>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현황	74
<표Ⅲ-4> 시·도별 지역교육청수 및 소속기관수	76
<표Ⅲ-5> 조사 대상자의 표본 크기	83
<표Ⅲ-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84
<표Ⅲ-7> 직무종류별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관한 인지도 차이검증	86
<표Ⅲ-8>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91
<표Ⅲ-9>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분야	92
<표Ⅲ-1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	92
<표Ⅲ-11>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해 행정체계 연계방안	93
<표Ⅲ-1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사례인 '학교봉사활동'외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위해 다른 청소년활동들에도 확대 적용	94

<표Ⅲ-13>	청소년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	95
<표Ⅲ-14>	청소년정책 제도 중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	95
<표Ⅲ-1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96
<표Ⅲ-16>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	97
<표Ⅲ-1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분야	98
<표Ⅲ-18>	중앙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으로 교육인적 자원부와 청소년위원회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청소년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칭)' 구성운영	99
<표Ⅲ-19>	지방차원의 연계·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시 ·도의 청소년 관련부서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간의 연계·협력회의 기구설치	100
<표Ⅲ-2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사례인 '학생봉사활동' 외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 위하여 다른 청소년활동도 확대 적용하는 것	100
<표Ⅲ-21>	청소년활동을 학생봉사활동과 같은 제도로 확대적용 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청소년활동	101
<표Ⅲ-2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102
<표Ⅴ-1>	텔레파이 참여자	165
<표Ⅴ-2>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원인	175
<표Ⅴ-3>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간 상호 연계 ·협력해야 할 정책내용	180
<표Ⅴ-4>	정책 내용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184
<표Ⅴ-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조치 내용	188
<표 V-6>	조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190
<표 V-7>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상호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기구 설치 소재와 참여자 내용 ..	192
<표 V-8>	협의체 기구 설치 소재와 관계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194
<표 V-9>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할 내용	197
<표 V-10>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 중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 ..	200
<표 V-11>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 ..	203
<표 V-12>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될 가능성	205
<표 V-13>	학생봉사활동과 같이 다른 청소년활동도 학교에서 확대·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	206
<표 V-14>	자율적 활동의 권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208
<표 V-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학교교육 정책 연계 효과성 ..	208
<표 V-16>	학생봉사활동제도와 같이 다른 청소년 활동들이 확대·시행 될 수 있는 가능성 ..	209

그림 목차

[그림 II-1]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45
[그림 II-2] 지역사회 네트워크 'ComNet' 체계도	52
[그림 III-1]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도	65
[그림 III-2] 서울시 교육청의 조직도	71